

2008.2~2013.2
정책자료집

지식재산
강국의
주춧돌을
놓다

발간사

세계 경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디자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무형의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이룩한 성과를 지식기반 사회에서 더욱 승화·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5월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 28일 민관 합동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와 2개 특별전문위원회, 그리고 23개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지식재산에 관한 최초의 중장기 국가전략이자 지식기반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하였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대책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민간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의 제정,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옴으로써 시장의 환경변화, 쟁점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도적으로 조율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0여개 유관기관 및 산업별 단체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계와 소통의 장(場)인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를 구축하여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경계 없는 협력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초석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민들과 기업의 우수한 창의역량을 기반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깊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목 차

제1장	추진배경	제4장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추진
8	제1절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164	제1절 추진경과
11	제2절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동향	167	제2절 12대 법정부 중점추진과제
16	제3절 국내 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197	제3절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
33	제4절 법정부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200	제4절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제2장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구축	제5장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지원
36	제1절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208	제1절 지식재산 투자전략 수립·추진
55	제2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활동현황	219	제2절 쟁점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
61	제3절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가동	236	제3절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조정
70	제4절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	245	제4절 지식재산 국가전략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제3장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제6장	발전방안
82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경과	254	제1절 정책 추진 체계
84	제2절 정책비전 및 목표	258	제2절 핵심정책의 발전방안
91	제3절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60	제4절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제1장

추진배경

제1절 8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제2절 11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동향

제3절 16

국내 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제4절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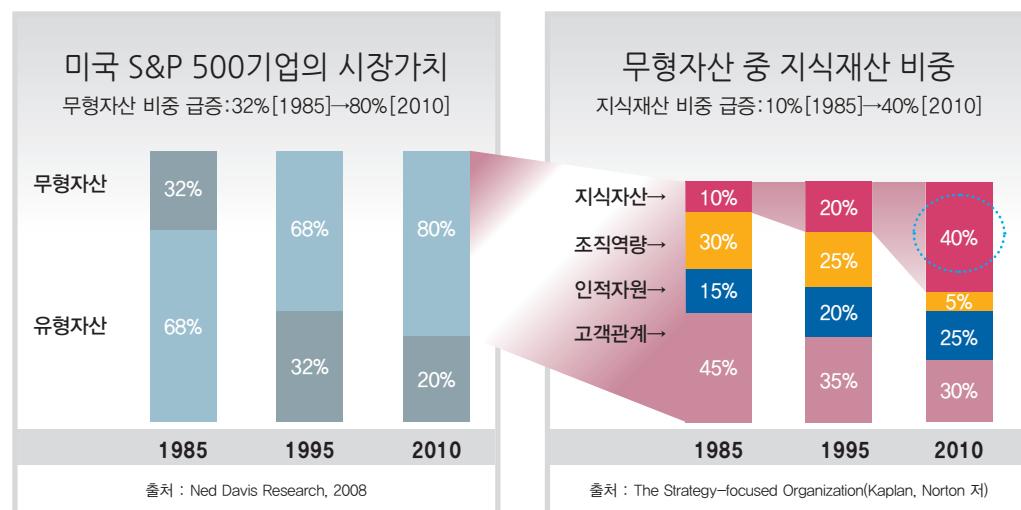
법정부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제1절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세계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활동이 아닌 창의성, 감성,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노동·자본 등 전통적인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IT기업들을 예로 들어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Apple의 무형자산 가치는 194조원으로 시가총액(215조원)의 90%를 차지하며, IBM의 순자산은 23조원인 반면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는 65조원(순자산의 2.8배)에 이른다.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지식기반 경제는 기술 간 융·복합을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창조경제’로 진화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파생시장(Purple Ocean)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 콘텐츠,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제조업과 접목되면서 단기간에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Apple, 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은 ‘콘텐츠–미디어–기기–서비스’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자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 간 지식재산을 둘러싼 ‘두뇌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등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 또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시장을 방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소송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특히 제품 생산 없이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활동도 거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지식재산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나,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특허·저작권 등 종래의 지식재산 외에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신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잠재적인 가치가 점증하고 있는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 표지,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역분쟁이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반을 둔 수출입·판매 금지 등 강력한 국경조치로 변화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미국의 경우 반덤핑을 통한 무역 제재는 1998년 이후 감소(연평균 △2%)하는 반면,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결정은 급격히 증가(연평균 15%)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식재산이 가장 주요한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절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동향

지식재산이란

■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은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 디자인 · 상표,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 저작물, 소프트웨어는 물론 식품품종유전자원 · 전통지식 · 빅데이터 등 모든 분야에서 창출된다. 특히, 경제 ·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이라고 한다.

■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세분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크게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고,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은 각 권리별로 그 보호대상이 다르며,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각의 권리가 규정된다.

종류	정의	권리존속기간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	출원일 후 20년까지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고안만이 보호대상)	출원일 후 10년까지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	설정등록일 후 15년
상표권	식별력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되는 권리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절차를 통해 10년씩 연장 가능)
저작권	인간의 지적능력을 통해 창작한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 및 소프트웨어 · 게임 등 콘텐츠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	창작자 사후 70년간

1. 미국

1980년대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일본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받게 되자 친(親)지식재산(PRO-IP) 정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1985년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새로운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무역정책과 연계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대내외적으로 불법복제 및 위조 등의 침해에 노출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책방향을 창출 및 활용 중심에서 보호 및 집행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8년 9월 26일 PRO-IP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PRO-IP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집행력의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 집행관련 부처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기관들 간의 연계·조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IPEAC :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와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PRO-IP법은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지식재산의 위조 및 침해 등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년 의회 의결을 거쳐 백악관 관리예산처(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장관급)이 신설되었다.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2010년 6월 22일 연방기관 및 관계부처들과의 협조하에 일반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수립하였다. 이는 다양한 정부 부처들의 공동 참여로 미국 내·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Industries in Focus’, 2012.4.11, U.S. Department of Commerce)’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제조업, 신문과 서적 발간, 제약 및 의료,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의료기구 등 미국 내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국내총생산의 34.8%(5조달러), 전체 고용의 27.7%(4,000만개)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창의성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신흥개도국의 급성장으로 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표방하고, 연구활동이나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총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3년부터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책을 꾸준하게 강화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콘텐츠·국제표준 획득 등 자국의 전략 분야를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따라 특허소송 관할의 집중을 위한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설치, 특허출원건수 증가, 특허심사 신속화, 모방품·해적판 단속 강화,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①국가의 명확한 개혁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②관할 기관의 대응이 분단적(分斷的)인 데서 오는 폐해 ③관계자 의견청취가 기득권층인 대기업이나 큰 단체 등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 ④중요성 있는 분야에 적절한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⑤해외 현지에 확고한 거점기관이 없기 때문에 정보수집이나 인재부족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전략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전(前) 총리 정권 출범 이후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전략 추구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새로운 ‘지식재산추진계획’ 책정을 향한 의견수렴은 그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기본 전략하에 지식재산의 부흥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중국은 선진국과 달리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체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5년 「국가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

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국가지식산권전략 강요'를 수립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국가의 지식재산 창조·운용·보호·관리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지재권 관리수준의 향상 및 보유량 증대, 지재권 분야 투자 확대, 지재권 보호 개선 및 지재권 존중의 문화 형성이라는 목표하에 '지재권 제도 정비, 창조와 이용 추진, 지재권 보호 강화, 지재권 남용 방지 및 문화·의식 배양'이라는 5대 중점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실시를 위하여 '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 업무부서 연석회의'를 설치하고 2009년부터 매년 '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백·천·만 지식산권(知識產權) 인재공정'(2007~2010) 등 인재육성 전략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개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의 일환으로서, 7대 전략 17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2011년 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7대 전략은 ① 지식산권 창출과 상용화 추진 ② 지식산권 보호 강화 ③ 지식산권 서비스 발전 ④ 지식산권 교육과 인력육성 강화 ⑤ 지식산권 홍보와 문화건설 추진 ⑥ 지식산권 교류 및 협력 확대 ⑦ 지식산권 실시의 조직적인 협력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4. EU

2008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의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A Strategy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유럽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발명가와 기업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의 집행과 불법복제 근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유럽집행위는 2011년 5월 24일 EU 내 단일 특허시스템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전략, 1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창의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단일시장전략(A Single Marke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ost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provide economic growth, high quality jobs and first class products and services in Europe)」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회원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특허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고비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단일 특허법원(중재센터) 및 특허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도출하고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며 중소기업의 지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공정가격 설정기구(valorization instrument)' 설립을 제안하였다.

한편,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EU 상표제도 마련을 위해 유럽공동체 상표규정 및 상표지침 개정을 주장하였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그 일환으로 작자 미상의 저작물(orphan works)을 일정한 허락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을 제기하였으며, 온라인 저작권의 복수영토 라이선싱 및 수익 분배의 간소화를 위한 틀을 제안하였다. 위조 및 해적행위 감시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확대된 임무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3절

국내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1. ‘창출’ 분야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은 2011년 말 등록 기준으로 총 335만1,175건이 창출되었다. 1948년 특허 등록을 시작한 이래 1998년 100만건, 2005년 200만건, 2010년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100만건¹⁾ 달성을 각각 50년, 7년, 5년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등록 산업재산권의 56%가 최근 10년간 창출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국내 특허등록은 2010년 12월 3일에 100만건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단기간 기록을 수립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 2011년 12월 등록 기준(1987년부터 통계 작성)으로 총 31만8,209건이 창출되었으며, 저작권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의 경우 2010년도 국내 시장규모는 288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그간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라 이처럼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2011년도 공공 및 민간부문 전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49조8,904억원으로 세계 6위(GDP 대비 비중 2위), 특허출원 4위(GDP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 1위, 2010년도 기준), 과학

기술 논문수 11위(2010년도 기준) 등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는 2000년도 25억3,000만달러에서 2010년도 58억2,000만달러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특허전쟁 시대에는 독보적이고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생존 가능하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 등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중견·중소기업은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가 미흡하다. 특허청의 2010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유기업은 27.4%, 전담조직 보유기업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정보·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은 가야 할 길이 면 상황이다.

또한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특허’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시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표준특허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보장하고, 특허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므로 표준특허의 확보 유무가 국가의 기술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확보 현황은 2010년 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 중 3.1% 수준이다. 질적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R&D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박사급 인력의 81.9%를 보유하고 국가 총 R&D 투자의 25.2%가 투입되고 있으나,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9.9%(2010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경우 2010년도 시장규모는 288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콘텐츠 창출을 위한 「기기-콘텐츠-서비스」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인력·시설 등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여 고품질 콘텐츠 창출이 저조한 실정이다. 콘텐츠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온라인게임과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 콘텐츠에 불과하고, 3D·CG 등 첨단영상제작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 시 3년 이상 격차가 있다. 따라서 창작소재, 시나리오 및 기획력 제고, 영상제작의 대형화·첨단화·글로벌화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투자 등이 필요하다.

1) 2010년 12월 3일 특허등록된 (주)다이아벨의 ‘힌지(Hinge)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 단말기’ 기술이 100만번째 특허로 등록됨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기업 등 사례: 「창출」 분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창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제고를 위해 원천·표준특허 확보 및 고품질·고부가가치 콘텐츠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의 주요 사례로는 국가 기술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특허 분야와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K-POP의 위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우선,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AP(Application Processor)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Snapdragon)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퀄컴사는 표준과 특허를 잘 조합한 스냅드래곤이라는 원칩(one chip) AP를 개발하여 LTE(Long Term Evolution)서비스가 나온 이후 스마트폰 AP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통신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기술분야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NPE 또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제기한 소송의 약 80% 이상이 IT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기술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G 이동통신 표준으로 사용되는 LTE 표준특허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24건(21.1%)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특허 확보가 일부 대기업·출연연구소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표준특허 창출·확보를 위해 국가 R&D 등을 통한 창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LTE 표준특허의 기업별 보유 현황〉

(단위 : 건, %)

순위	기업명	특허수	비율	순위	기업명	특허수	비율
1	InterDigital	780	14.7	11	Nokia	220	4.1
2	Samsung	679	12.8	12	Nokia-Siemens	123	2.3
3	Qualcomm	625	11.7	13	Panasonic	110	2.1
4	LG	385	7.2	14	Nortel	99	1.9
5	Ericsson	362	6.8	15	Sharp	75	1.4
6	ZTE	320	6.0	16	Alcatel-Lucent	72	1.3
7	Huawei	304	5.7	17	ETRI	60	1.1
8	Motorola	292	5.5	18	Innovative Sonic	47	0.9
9	NTT DoCoMo	281	5.3	19	Texas Instruments	43	0.8
10	CATT	279	5.2	20	HTC	26	0.5

문화콘텐츠분야에서는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산업적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K-POP'이 정식 단어로 등재되었으며, 더불어 미국의 권

위 있는 음악 차트 빌보드에 아시아 국가 음악으로는 두 번째로 K-POP 차트가 2011년 8월 신설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라마·K-POP 등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을 K-Culture로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4개 법령 시행령을 제·개정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요건 신설, 만화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콘텐츠 창출 기반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보호 분야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FTA, ACTA 등 국제조약에 적극 참여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보호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지재권 보호 순위는 세계 31위(2011년 IMD IP보호지수 : 위조상품·불법상품에 대한 집행력을 평가)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보호집행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근 지재권 무효율 증가와 함께 소송을 통한 지재권보호가 미흡하고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낮은 손해배상액 판결²⁾로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침해유인이 상존하여, 권리자의 실질적 손해권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재권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지재권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특허 관련 소송 관할권의 이원화에 따라 분쟁의 장기화, 판결의 비일관성 등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중재 제도의 활용은 부진하다는 지적 등도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디지털 저작물 유통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첨단의 저작권보호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디지털 저작권 보호·유통 기술은 미국 대비 83.4%로 3.8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2) 최근 2~3년간(2009~2011년) 판결된 손해배상액 중앙값(median)은 약 5,500만원으로, 미국의 250만달러의 2% 수준이다.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1,172억원(2010년)으로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해외(중국, 동남아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이며, 위조품 유통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 피해액은 약 17조원(2006년)으로 침해구제 지원 인프라가 열악하여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약 8배 증가하였고, 그 규모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핵심·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콘텐츠산업의 경우 협소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하에 기업의 영세성, 불법복제가 상존하는 등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고(매출 10억원 미만이 81% 차지, 2009년), 개도국에서의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권리자가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기업 등 사례: 「보호」 분야

1. 지식재산 보호 관련 시장 상황

■ 우리나라, 미 저재권 감시대상국 4년 연속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5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 4년 연속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USTR은 2012년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정책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2. 지식재산 보호 인식 강화

■ 한국과 미국에서의 삼성 VS 애플 소송결과 시사점

국내판결은 삼성이 청구한 표준특허 4건 중 유효한 2건을 애플이 침해했으며, 비표준 특허 1건은 애플이 미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애플이 청구한 UI특허 4건 중 유효한 1건만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로 확정되었다. 반면, 미국판결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 디자인 3건, 상표 2건 등 총 8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 10억달러의 배상평결을 내렸다. 즉, 삼성의 특허는 모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애플은 제품 디자인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 및 거액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애플의 완승이었다. 이후 12월 6일 '탭-투-줌' 특허 배상액 산정오류 인정 및 재차 합의요구가 이뤄지고 미국 이외 주요국에서는 애플이 패소하는 등 양사 간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계속되는 특허전의 결과는 향후 양사의 스마트폰 및 타 제품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8월 8일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자단 Copyright SN-Ser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단은 대학생 및 일반인 신청자 중 개인 블로그 방문자가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했으며, 저작권 기자단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류저작권, 공유와 나눔 등을 주제로 자체 저작물 제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수자에게는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한류탐방의 기회도 부여한다.

3.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 유통 방지

■ 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영상물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 저작권 클린포럼'을 6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 한 달'을 주제로 웹하드 등록제 현황과 향후 제언, 저작권계와 콘텐츠산업계 및 특수유형 OSP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등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학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콘텐츠기업, 클린사이트 지정 OSP 등 저작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발제에 앞서 클린사이트 지정 OSP 15개 업체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 정부 합동 '웹하드 등록제' 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점검반을 구성해 등록한 웹하드 및 P2P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웹하드 등록제는 불법 저작물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5월 공식 시행에 들어갔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약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가 등록을 마쳤다. 합동점검반은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기록에 대한 보관 여부 △모니터링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실태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하게 된다.

■ 저작권보호센터, ICOP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집중 실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하반기에 만화·출판물 등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만화물은 불법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고, 출판물의 경우 원본을 텍스트나 PDF 파일로 저작하는 침해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휴대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파일 변환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도록 파일 사이즈를 휴대기기용으로 축소해 유통하는 사례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만화·출판 분야 전담 재택모니터링 요원을 확대하고, 불법복제물 추적 관리시스템(ICOP)을 활용한 24시간 전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의 사각 시간 대를 없애기로 하였다.

4.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 한마당'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스마트 콘텐츠협회 등과 함께 2012년 6월 14~15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2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상생장터를 열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별 전시장 홍보부스를 통해 10~50% 할인된 가격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정책 오픈포럼',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설명회',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 등 관련 포럼을 함께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주요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업계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도 논의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2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말 문화부 훈령으로 지정한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감사원, 대통령실 등 전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 지정 △연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발견 시 조치 △연1회 이상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논란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훈령 격상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파악 및 조치들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6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장점으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 등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모

든 분야에서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라이선스와 소프트웨어 특허 등 저작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SFLC(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의 대표인 에빈 모글렌 교수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쟁점'에 대한 기조 강연을, 인도 SFLC 지부장과 삼성 SDS 정윤재 수석 등이 각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정책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5. 저작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특허청은 2010년 4월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켰으며, 3개의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2011년 12월에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장비를 갖춘 '온라인 수사반'을 출범시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였다. 상표특사경의 출범 이후로 2011년에는 위조상품사범 13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점을 압수하는 등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도입 이전에 비해 월평균 형사인원은 약 6배, 압수물품은 약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문화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하여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불법 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혜비업로더에 대한 추적 강화 등 저작재산 보호정책을 집행해 왔다.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지역 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왔으며, 그간의 지속적 단속 활동으로 최근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이 감소(2008년 22.3%→2010년 19.2%)하고 미국의 저작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 영업비밀 보호 기반 강화

영업비밀 보호는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금지시켜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가 미흡한 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였고, 영업비밀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인 전자문서의 타임스탬프³⁾를 국가 공인기관에 등록하여 영업비밀 정보의 외부유출 없이 영업비밀 침해 시 영업비밀의 원본존재 및 보유시점을 입증하여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해 수월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3) 전자문서가 어느 특정 시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확인된 시각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

7.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역량 제고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이 2009년 154건에서 2011년 278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의 분쟁대응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재권 분쟁 및 특허관리기업(NPEs)의 활동 동향을 수시 파악·정리하여 기업들이 분쟁대응에 활용 가능한 각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한편, 직접적으로 지재권 분쟁 발생 위험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권리침해 여부 확인 방법, 소송 대응 전략 등의 컨설팅 비용 일부와 막대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소송보험상품에 대한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8.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IP-DESK 운영 강화

IP-DESK는 현재 중국 등 3개국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침해방지를 위해 전문가 상담, 각종 등록비용의 지원,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침해조사지원을 통해 2011년에 21억원의 모조품을 몰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중국에서는 특유의 관시(관계) 중시 문화를 고려하여,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및 관계형성을 위해 각종 지재권 집행 행정기관(공상행정국, 세관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 '마닐라저작권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월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저작권센터' 개소식 및 '저작권 교류의 범'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남아 한류 열기와 저작권 보호의 시급성, 현지 문화산업 시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저작권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양국의 저작권 법제 정보교류,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현지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법률컨설팅, 저작권계약 지원 등 한류 저작물 보호와 진흥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북경저작권센터를 시작으로 2007년 태국저작권센터를 신설하였고, 2010년 상해문화원에 주재원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저작물의 건전한 해외 유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향후 남미 등 새로운 한류 확산 지역의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저작권센터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저작권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월 30일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중국지역 콘텐츠 분쟁예방 및 표준계약서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발간했으며, 해설서에는 중국의 저작권제도 소개,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콘텐츠(게임, 음원, 영상물 등)별 라이선스 표준계약 및 공동개발 표준계약 등 15편의 표준계약서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을 시작으로 향후 표준계약서 제작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지역 저작권 불법침해 민관 협력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3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진출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지원사업 설명 및 공동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중한국문화원, 중국판권보호중심, 현지진출 기업, 현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는, 현지 저작권 등록제도 설명과 콘텐츠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한 설명, 참석자 간 애로사항 공유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이 이어졌다.

■ 저작권위원회, 한국·태국 저작권 협력포럼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태 저작권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저작권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저작물의 해외시장 확대 및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으며, 포럼에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 경찰, 세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위원회 등과 한국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태국 진출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3. '활용' 분야

우리나라의 공공 연구기관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이 전 실적을 보유한 기관이 2007년 118개에서 2008년 137개, 2009년 149개, 2010년 15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권 활용률은 29.4%(2011년)에 불과하다. 또한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2010년)은 1억5,000만달러로 미국 대학·연구소의 기술료 수입(22억7,000만달러)의 6.6%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R&D 생산성(기술료수입/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1.48%(2010년)이나 미국은 4.32%이다. 이처럼 낮은 R&D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관리·활용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경우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의 수요가 증가(2007년 39.3% → 2010년 51.6%)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민간 재활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10조원 추산, 2006년) 저작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활용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지식재산 자체를 독립적인 수익창출 수단

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인터디지털(Inter Digital)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전문관리회사(NPE : Non Practicing Entity)들은 직접제조가 아닌 특허 라이선싱 또는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도 진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선진국에 비해 지식재산 거래시장,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추구 모험자본 금융시스템 등이 미발달한 상황이다. 향후 지식재산 거래·가치평가·금융시장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전략적 육성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활용이 다양화·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정보조사·분석, 평가, 교육, 번역 등과 같은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 경영 및 활용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창출·활용을 촉진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 그러나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체들은 영세한 규모와 경험 부족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관련 기업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 육성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활용의 주체가 되는 산업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 기술자료 요청 대상 중소업체의 22%가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2009년) 결과에서 보듯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신뢰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환경을 만들고,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이 시장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특허매복행위를 한다든지 특허권 만료 이후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의료제약·IT 등 지식재산권의 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공정질서를 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기업 등 사례: 「활용」 분야

대표적인 NPE 연구 사이트 ‘Patent Freedom’(2012년)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NPE로부터 제소당한 기업 수는 5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11년 들어서 4,500여 곳으로 9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NPE로부터 제소당한 3위, 9위 기업에 한국의 대기업이 랭크되어 있다고 한다. 즉, 지식재산 비즈니스 발달과 동시에 진행된 NPE 활동 증가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수법사례를 만들기 위해 2010년 7월 민관합동 지식재산 전문관리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를 설립하여 오는 2015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011년 10월부터 현재 까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차세대 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스마트TV, 롱텀에볼루션(LTE), 리튬 2차전지, 융합 바이오 등 28개 주요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IP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당한 국내기업 3곳의 분쟁 대응 특허를 발굴해 권리찾아준 바 있다. 나아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운영될 2차년도 사업에서 25개 IP포트폴리오를 추가 구축하고, 대형 IP 매입 및 중견·중소기업 풀 조성, IP 연구개발(R&D)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지식재산을 금융기법, 투자운용 시스템 등과 연계시켜 활용하기 위해 IP특화 전문자산운용사인 아이디어 브릿지(2011년 10월 설립, 3월 금융위 인가)에 100% 출자하고, 지난 6월 IP기반 기술기업에 전문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인 아이디어 브릿지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 밖에도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이 좋은 성과(72%(25명 중 18명)가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회사에 채용)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에 육성시책 수립 및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월 특허 라이선스 법위반 사례와 권장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였다.

4. '기반' 분야

우리나라는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의 세계적 선전, 'K-POP' 열풍 등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을 아우르는 지식재산의 주요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20세기 주요국의 '재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였다면 지식재산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지식의 '재산적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타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의식과 지재권 침해의 불법성 인식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발명가·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창출→보호→활용→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지식 집약적 고도기술 수요의 증가, 기술 간 용·복합 강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나, 공동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에 대한 인식 차와 갈등이 기술혁신 및 산·학 협력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공동연구 귀속의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지식재산의 질적·양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이 확산되고 있으나, 막상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계속되고 있다.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인이 부족하며, 창의적 발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하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 단계별로 세분화·전문화되는 시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등 개별 권리별로 담당 부처가 산업재산권(특허청), 저작권(문화부), 생물자원(교과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식약청)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이 곤란한 점이 문제점으로 적되어 왔다.

넷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인프라가 불충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가 저조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더불어 지식재산 정보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한 분류체계와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포괄적·종합적 정보제공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정보체계의 개선 및 체계적 연구기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기업 등 사례: 「기반」 분야

1. 직무발명 관련⁴⁾

'2011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탑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및 LED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0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내외에 총 1,400여 건의 특허출원과 25% 이상의 매출 증가 등의 큰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인스펙션(주)은 PDP 패널 전자 검사장비(AEI) 전문 벤처기업으로서 2006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이직률이 거의 없는 알짜기업으로 알려졌다.

직무발명 보상 확대로 특허출원이 급증한 사례를 보면,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을 통하여 특허출원이 4,0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2년 2월, 2011년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⁵⁾ 지난해(2011년) 출원된 국내 전체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나,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하였다. 특히 현대 중공업 전년대비 242%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세분화하고 보상금액을 높인 것이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2. 지역 중소기업 지원(해외브랜드 개발사업)⁶⁾

해외 맞춤형 브랜드 개발로 비영어권 국가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지어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 경우를 보면, (주)코스메타코리아(대표이사 조임래)는 2010년 충북지역 특허스타기업에 선정되어 2년 연속으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2010년 중동지역에 적합한 신규 브랜드 개발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30%(313억원→408억원) 증가하였고, 고용인원도 28%(125명→1603명) 상승된 성과를 이루었다.

4) 본문 P187 : 직무발명 보상 관련 5) 특허청, 2012년 2월 9일자 보도자료 6) 본문 P192 : 1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관련

3. 지식재산도시 관련⁷⁾

2011년 3월 안동시가 최우수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다. 안동시는 전통식품, 문화유산의 지재권 발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안동의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을 브랜드화하여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12개 문종의 휘장 전시회를 개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역 향토식품의 지식재산권화를 위해 '발효 산양삼차 및 이의 제조방법', '산양삼을 유하는 선식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조림닭의 제조방법', '기능성 인절미의 제조방법', '안동흑마를 이용한 고농축 및 고기능성 제품 제조방법' 등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을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12년 5월에는 광주 광산구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광산구는 그동안 주민·학생·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특허 권리화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창조·사회적 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와 광산우리밀·소셜커머스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해·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자원의 경우 자원주권 측면에서 국가의 필수자산일 뿐만 아니라 의료·에너지·환경·식량 등의 분야에서 그 활용가치와 중요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적 확보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그 활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국제논의를 통해 자원의 발굴, 이전, 활용 및 이익공유 등 전 분야에 대한 규범 제정이 추진 중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생물자원 보유 및 확보에 있어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생물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보하고 종합적 관리·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자원의 경우 전통식품, 전통의약, 전통예술 등이 가진 높은 잠재적 부가가치가 부각되고 문화다양성이 중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전통자원의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현황 파악 및 발굴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의 DB 구축 등 전통자원의 체계적 활용과 국제적 권리확보를 위한 기초여건이 부족한바, 관련 기반조성과 함께 국제적 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별표지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 신지식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제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지리적표시제도의 경우 서로 상충되는 국가별 이해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지리적표시 등록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환경변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방송 프로그램 포맷 등 다양한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호여부 검토 및 기타 다양한 유망 신지식재산의 발굴, 관련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 빅데이터, 의료정보, 퍼블리시티권, 트레이드 드레스, 프로그램 포맷, 금융상품 등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신지식재산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해당분야의 지식재산적 관점의 주요 이슈 및 주요 이해 관계자에 대해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신지식재산 발굴 및 분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신지식재산' 분야

'신지식재산'이란 과학기술·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향후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새로운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식량안보 및 세계 종자시장 성장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막대한 부가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생물자원을 비롯하여,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을 포함하는 전통자원, 기타 지리적표시와 같은 식별표지 등도 신지식재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 분야는 현재 그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확보·관리시스템 미흡으로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지식재산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식물 신품종의 경우 FTA 등에 따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품종보호,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국내 심사 및 침해분쟁 대응체계는 이에 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며 외국 식물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품종보호제도를 국

7) 본문 P191 : 1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관련

제4절

범정부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지식재산 정책 관련 시장·기업 등 사례: 「신지식재산」 분야

신지식재산 분야 또한 ‘지식재산’으로서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권리화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별도의 관련 법령·제도가 구축되어 있던 식물신品种의 경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되었다. 종자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종자 산업법」에서 「식물신品种 보호법」이 2012년 6월 분리·제정되어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이 구성되어 2012년 4월 발족함에 따라 미등록 종자업자의 생산·판매 및 수입 판매, 품질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 특산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이를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대표 특산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등을 통해 특산물 명칭의 권리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도 부산시의 ‘동래파전’, 울산의 ‘강동 돌미역’, ‘울주 미나리’, 인천의 ‘까나리 액젓’ 등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 중이다. 특히 특산물의 권리화에 이어 이를 중심으로 지역향토 및 농식품 산업 발전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신안 새우젓’의 경우 작년 어업회사법인 신안 새우젓(주)이 출범함에 이어 2012년 4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였으며, 젓갈 판매점 및 저온저장시설, 홍보전시실 등을 갖춘 젓갈타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역 특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이 보유한 고유자원,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브랜드의 활용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도 차원에서 2012년 ‘토종자원 보존·육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식량, 채소류, 축산, 약용작물, 수목, 해조류 등 분야별로 토종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하여 유전자원·신品种 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기능성 분석을 통해 이들 자원을 산업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브랜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은 지자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모를 통해 세계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5개 지자체의 유망 대표 브랜드가 선정되었다. 전주시의 전주한옥마을, 순천시의 순천생태습지 등 선정된 지방 브랜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세계화 성공모델로 육성할 예정이다.

세계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시대를 넘어 특히·저작권·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이미 진입하였다. 선진 기업들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개발·축적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체제에 대응하고 있고, 선진국들 또한 국가수반 소속으로 지식재산 전략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 간 특허소송이 급증하는 등 ‘지식재산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IT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특허소송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응전략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특허소송에 노출된 현실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여 국격(國格) 향상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발명자·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술 간 융합, 기술·감성·문화의 접목 현상은 우수 창의력과 보유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화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넘어,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정부 주도 발전전략 성과물의 재산적 가치를 시장에서 권리화·사업화하는 지식기반 시대의 국가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식재산 분야야말로 우수한 청년인력들에게 질 높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활짝 열린 기회의 창(窓)이기 때문이다.

제2장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제1절 36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제2절 5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활동현황

제3절 6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가동

제4절 70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에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안(2005년 11월), 이병석 의원안(2006년 7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안(2005년 11월) 등 3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0월 27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 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17개 지식재산 관련 부처⁸⁾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지식재산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0년 2월 16일에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기획단의 조직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산업정책관이 부단장 역할을 담당하며 실무조직으로 지식재산정책팀과 지식재산기반팀을 두었다. 또한 지식재산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분야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정책 협의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자문위원회 의장으로는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되었으며, 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15인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윤종용 자문위원회 의장은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된 후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 되었다.

2010년 3월 3일에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에서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회에서는 2010년도 이내에 정부입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 및 국내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정부입법(초)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 16일에 「지식재산 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간담회, 전문가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산업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법안의 명칭, 지

8)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복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국무총리실

식재산의 정의,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등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사항 등 주요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제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5월 12일에 개최하였으며, 곧이어 대국민 공청회를 6월 28일에 개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정무위에 총 4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된 정부안을 8월 4일에 제출하였다.

국회제출법(안)의 주요내용

- ①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제6조)토록 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신지식재산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예산투입 및 법령정비 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며, 유관부처 등도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제7조).
- ② 국가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제9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수행토록 하여 정책 추진력과 민간과의 의사소통이 조화되도록 하고,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제8조)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사전 검토(제13조) 등 위원회의 정책 관리권한을 실질화하였고, 기관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운영(제12조)으로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 일원화와 정책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③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에서 평가·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16조), 지식재산 창출자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책무를 정부에 부과하였다.
- ④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을 통해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토록 하고(제20조), 지식재산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제22조)하고, 외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제23조)하도록 하였다.
- ⑤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평가·거래, 정보 분석·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제25조), 산학 공동연구 성과의 소유권 배분 합리화, 지식재산 남용 방지, 중소기업 특허의 대기업 편취 방지 등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제27조)토록 하였다.

⑥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G20, 특허출원 4위)에 걸맞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형성을 위해 초중등·대학 및 평생교육 기관에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확대 설치(제32조)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제33조)과 전문 연구기관 육성(제34조) 등 사회적 기반을 구축토록 하였으며, 국제규범과 조화된 법제도 정비(제35조) 및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제36조)하도록 하였다.

⑦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지식재산」의 개념을 법률로써 정의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22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였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종혁 의원이 국회의원 102인을 대표하여 2009년 11월 4일에 입법안을 제출하였고, 김영선 의원 또한 국회의원 10인을 대표하여 2010년 9월 1일에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들 법안은 정부안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②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제294회 정기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010년 12월 6일에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12월 2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이때 실질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안건 상정만 이루어졌다. 정부안을 기본으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전체 37개 조문 중에 24개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쳤으나, 2011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추가적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2011년 3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3월 4일에 개최되었으나, 정무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 등으로 여·야 간 경색된 분위기하에서 법안심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법이므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따라,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나머지 13개 조문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되었다. 결국 「지식재산 기본법」은 4월 28일에 법사위 의결, 4월 29일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5월 19일 공포되었으며, 2개월 후인 7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한편,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이 중복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2011년 9월 28일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입법추진경과

-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안 3건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
 - * 발의의원 : 김영선 의원(2005년 11월), 이병석 의원(2006년 7월), 정성호 의원(2005년 11월)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결정(2009년 7월 29일,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를 구성하고(2009년 10월)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2010년 2월)
- 「지식재산 기본법」 의원입법안(이종혁 의원) 발의(2009년 11월 4일)
- 정부입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추진(2010년 3~9월)
 - 2010년 3월 3일 : 기본법 제정 기본 방향 논의(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 2010년 4월 16일 : 정부입법(초)안 마련 및 입법예고(2010년 4월 16일~5월 7일)
 - * 간담회 개최 : 산업계(4월 10일), 과학기술계(4월 28일) 및 문화예술계(5월 7일)
 - 2010년 5월 11일 : 전문가 공개 토론회 개최(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 참석 :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약 100여 명
 - 2010년 5월 12일 :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조정(제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 * 내용 : 법안의 명칭, 지식재산의 정의,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등
 - 2010년 6월 28일 : 대국민 공청회 개최(장소 : 사학연금회관)
 - * 허태열 정무위원장, 이종혁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2010년 7월 27일 : 국무회의(차관회의, 7월 22일)
 - 2010년 8월 4일 : 국회 제출(정무위 회부, 8월 5일) → 정무위 상정(9월 29일)
- 「지식재산 기본법」 의원입법안(김영선 의원) 발의(2010년 9월 1일)
- 상임위(정무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2010년 9월 29일)

- 법안소위 상정(2010년 12월 2일), 심사 진행(2010년 12월 6일, 2011년 3월 4일), 법안소위 의결(2011년 4월 18일)
- 법사위 상정 · 의결(2011년 4월 28일) → 본회의 상정 · 의결(2011년 4월 29일)
- 대통령 재가(2011년 5월 16일) → 공포(2011년 5월 19일) → 시행(2011년 7월 20일)

(2) 「지식재산 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의

「지식재산 기본법」은 헌법과 관련 개별법의 중간에 위치하여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헌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 조항, 제22조의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 보호 조항,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조항, 제119조 및 제127조의 경제 조항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 관계 법령은 헌법-「지식재산 기본법」 개별법-명령이라는 법체계를 갖게 되며, 「지식재산 기본법」은 다른 지식재산 관련 개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훈시규정, 프로그램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를 기속한다.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① 법안의 명칭

「지식재산 기본법」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안 마련 시부터 지적재산 기본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은 '지식재산'이 '지식(knowledge)'과 혼동될 수 있고, 창의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식(知識)'이라는 명사보다는 정부안 마련 시부터 '지적(知的)'이라는 관형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은 공직자윤리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최근에 제정·개정된 법률 등에서 ‘지식재산(知識財產)’이라는 용어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정신적 활동에 한정하여 강조하는 경우 상표, 도메인 이름 등 상대적으로 창작성이 약한 내용을 포괄하기 곤란하므로 ‘지식재산(知識財產)’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대립되었다. 이후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제1차 자문위원회 및 제2차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지식재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으로 법안명칭을 확정하였다.

② 주요 구성

「지식재산 기본법」은 총 5장 4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5장 보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5개의 조항이 있다.

제1조(목적)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고 제안되었으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로 수정되었다.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제1호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제2호에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활용의 촉진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제3호에서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산업 육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제4호에서 지식재산 규범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정의)에서는 제1호에서 ‘지식재산’의 개념을, 제2호에서 ‘신지식재산’을, 제3호에서 ‘지식재산권’을, 제4호에서 ‘공공연구기관’을, 제5호에서 ‘사업자등’에 대해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제1항에서 국가가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논의 결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제4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이 서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본법」이 지식재산 관련 다른 법률을 기속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④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는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연차보고서) 등 10개의 조항이 있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제1항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심의·조정 사항⁹⁾을 열거하고, 제3항에서는 심의·조정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심의·조정 사항은 제1호에서 기

9)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서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호 및 제5호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제1항에서 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도록 함으로써 내각의 통합 및 민간과의 의사소통을 동시에 가능토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항에서 공동위원장이 각각 위원회를 대표함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공동 위원장 각자가 모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논의에 따라 직무 수행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원칙적으로 회의 소집 및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민간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제6항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7항은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제1항에서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2항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자체 없이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주요시책 마련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예산 투입 계획 및 법령 정비 계획 등을 필수 사항으로 하여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제1항에서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

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의 경우에도 심의하여 확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서는 제1항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개선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정책 관리권한을 실질화하였다. 제4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에서는 제1항에서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 관련 정부기관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사무기구 지원을 파견받거나 또는 겸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 일원화, 기관별 정책의 효율적 집행 등을 도모하였다.

제13조(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에서는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기속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원회가 제1항에서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서는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연차보고서)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2항에서는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서는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2절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등 3개의 절이 있으며,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에서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까지 13개의 조항이 있다.

가. 제3장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3장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에는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등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D 기획단계에서 평가 ·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에서는 정부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1호의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 · 분석, 제2호의 미래 지식재산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 · 시장에 대한 전망, 제3호의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4호의 연구자 ·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제5호의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 제6호의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제7호의 기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2항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3항에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제2항에서 신지식재산 현황을 조사 · 분석하며, 제3항에서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제3장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제3장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에는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등 5개의 조항이 있으며, 지식재산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을 통해 관련 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기업에 맡겨졌던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촉진)에서는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 · 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1호의 지식재산의 심사 · 심판 · 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제2호의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 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제3호의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제4호의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관계 기관 · 단체와의 협력 방안, 제5호의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제6호의 기타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제2항에서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에서는 정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이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3개 항에 걸쳐 규정했으나, 관련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하여 한 개의 조문으로 수정하였다.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호의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제2호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제3호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제4호의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제공,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제3장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3장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는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등 4개의 조항이 있다.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호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제2호의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제3호의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제4호의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제5호의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풍자, 신탁, 보증, 보험 등 금융 활성화 방안, 제6호의 기타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거래 및 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및 자문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우수 지식재산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제4항에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과세, 세금감면 규정을 제2항에 두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개별 법률에 세제지원 근거를 두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국회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제3항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규정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없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영선 의원안의 제안이 반영되었다.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제2항에서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 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3항에서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제2항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3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는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 협력) 등 10개의 조항이 있다.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제2항에서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창출 ·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제2항에서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 · 분석 ·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등)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 ·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 분석 ·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 제2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 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의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제4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제5호의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 유통 전문 기관의 육성 방안, 제6호의 기타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책

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 · 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하고, 제3항에서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종혁 의원안의 제안이 반영되었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2항에서 초 · 중등 및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도 지식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제2항에서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고, 제4항에서 관련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회 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영선 의원안의 제안이 반영되었다.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제2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고, 제3항에서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제2항에서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 · 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 ·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이 없었으나 국내 지식재산제도가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논의에 따라 이종혁 의원안의 제안이 반영되었다.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서는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 ·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에서는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 · 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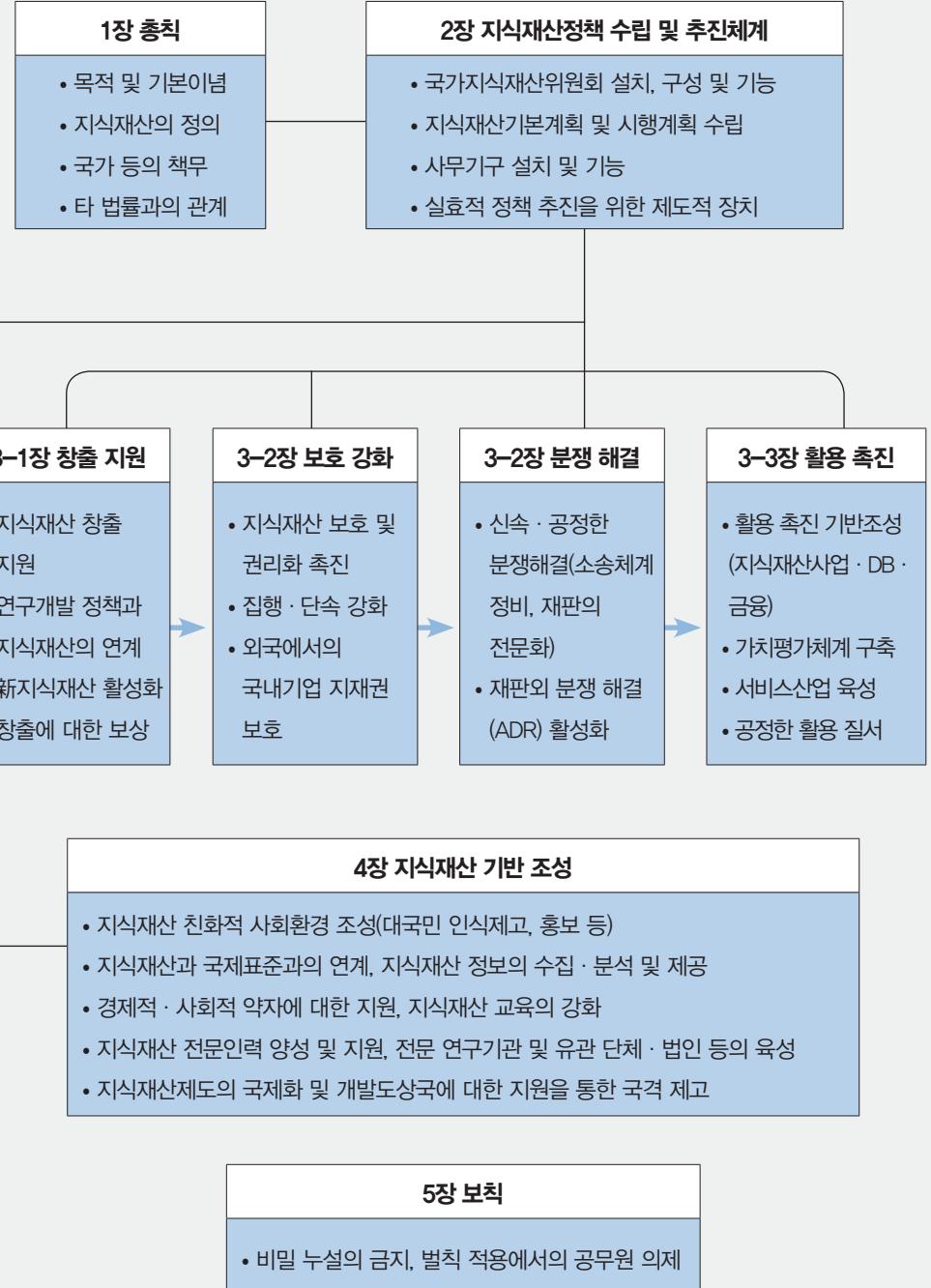
⑦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에서는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0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2개 조항이 있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서는 위원 및 사무기구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에의한 뇌물수수 및 공여 등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의 구성(총 5장 40개 조문)



제2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활동현황

2. 관련 법령정비

국가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으로부터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규범으로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하며 개별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시 부칙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여 우선 용어는 통일하였다. 하지만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들의 일괄된 법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 또한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이후 2002~2009년에 41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일관된 법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 바 있다.

1. 출범 의의

세계경제가 토지·노동·자본 등의 과거 유형자산 위주의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저작권·디자인 등의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하고, 특히 우리 경제도 1990년대 이후 노동과 자본 투입이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요소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표출함에 따라 창의성과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전(全)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지식 캐피탈(Capital)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요구되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신품종은 농수산식품부, 연구개발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지식재산 정책을 다수 부처에서 분산·추진함으로써,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이 2008년에 백악관에 지식재산정책조정관을 설치하고, 일본도 2002년에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등 이미 선진 각국은 10여 년 전부터 국가수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1년 5월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거, 2011년 7월 28일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김황식)와 민간전문가(윤종용)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PCIP :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가 출범하였다. 위원은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2명¹⁰⁾과 대통령이 각계 지도층 인사 중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미래 지식재산 분야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1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와 분야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민간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고기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첫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명확한 장기 비전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둘째, 민간 연계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식재산에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해 해결·제안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셋째, 주요 분야별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토록 운영하며, 넷째,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전략 추진 상황 및 산업·경제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되었다.

2. 활동 현황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이후 2011년 7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7회 개최하여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2011년 11월 22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최초의 국가전략이자 지식기반 시대에 대응한 21세기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의결하였다. 이 계획은 「

10) 정부위원 12명은 국무총리실장을 간사로 하여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전략을 보면, 1단계(2012~2014년)에서는 우선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고, 2단계(2015~2016년)에 이르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와 시장을 조성하여 지식재산을 통한 부와 고용의 창출 메커니즘을 구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2012년 1월 31일에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의결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민간위원, 청년리더, 지식재산책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표어로 하여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의 본격적 추진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이와 같이 중장기 국가전략 및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2012.1.31)〉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



대통령 말씀 및 토론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창출분과는 10회, 보호분과는 13회, 활용분과는 8회, 기반분과는 7회, 신지식분과는 10회로 총 48회 개최되었고,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와 지식재산 관련 각종 현안들을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 왔다. 그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구 분	안건번호	상정안건
제1차 (2011.7.28)	1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안)
	2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
	3호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제2차(2011.11.22)	4호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2012~2016)
제3차 (2012.1.31)	5호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6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7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8호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제4차 (2012.4.24)	9호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안)
	10호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향(안)
제5차(2012.7.27)	11호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안)
제6차(2012.11.2.)	12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연장 운영계획(안)
제7차 (2012.12.12)	13호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14호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3~2017)
	15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16호	2012년도 지재권 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보고)

3. 각종 홍보·강연 등 실적

각종 지식재산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기업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언론 인터뷰 등 각종 홍보 실적〉

구 분	실적
언론 인터뷰 · 기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SPC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캠페인 인터뷰 촬영(2011.10.26, 위원장) ■ 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인터뷰(2011.11.7, 단장) ■ 한국경제 인터뷰(2011.11.21, 위원장) ■ 서울경제 인터뷰(2011.11.30, 위원장) ■ 조선일보 기고(2011.12.17, 위원장) ■ KBS '호루라기' 인터뷰(2011.12.30, 단장) ■ 문화일보 기고(2012.2.1, 위원장) ■ 현대경영 인터뷰(2012.2.2, 위원장) ■ 매일경제 인터뷰(2012.2.4, 위원장) ■ 문화일보 인터뷰(2012.2.10, 위원장) ■ 계간 「지식재산정책(IP Policy)」 인터뷰(2012.3, 단장) ■ 한국경제 인터뷰(2012.5.7, 위원장) ■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2012.5.17, 위원장)
발표·강연 등 (토론회,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연(2011.9.15, 총괄정책과장) ■ 법원 지재권 연구회 발표(2011.10.6, 진흥관) ■ Smart Korea 2011 개회사(2011.10.12)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기조강연(2011.11.10, 단장) ■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특허경영포럼 강연(2011.11.23, 창출활용과장) ■ 전자부품연구원 특허 CEO 포럼 강연(2011.11.25) ■ 전자부품연구원 특허 CEO 포럼 발표(2011.11.25) ■ IP Global Leaders Forum(2011.11.27, 단장) ■ 한국지식재산 컨퍼런스 주제발표(2011.11.29) ■ FICPI 코리아 심포지움 축사(2011.12.1) ■ 충북대 쥬리스 포럼 발표(2011.12.2, 총괄정책과장)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대상 정책홍보(2012.1.11) ■ 한국공학한림원 CEO 포럼 기조발표(2012.1.30, 위원장) ■ 한국공학한림원 강연(2012.2.21, 단장) ■ 부산인재개발원 강연(2012.5.7, 총괄정책과장) ■ 강원IP전략포럼 강연(2012.8.29, 단장) ■ CR센터 전략기획 세미나 축사(2012.10.24, 단장) ■ 특허경영대상 기조 강연(2012.11.1, 단장)

제3절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가동

구 분	실적
발표 · 강연 등 (토론회,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MS 컨퍼런스 강연(2012.11.9, 단장) ■ 국제지식재산 정책 심포지움 (2012.11.27, 단장)
축사 · 개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위촉식(2011.9.28, 위원장) ■ Smart Korea(2011.10.12, 위원장) ■ 국회 지식재산토론회(2011.10.13, 위원장) ■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2011.10.17, 위원장) ■ 전자T 산업 CEO 포럼(2011.11.16, 위원장) ■ KINPA 컨퍼런스(2011.11.29, 위원장) ■ 시무식(2012.1.5, 위원장) ■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연구포럼(2012.7.17, 위원장) ■ 2012년 청소년 발명페스티벌(2012.7.24, 위원장) ■ 고려대학교 ICR센터세미나 축사(2012.10.24, 단장) ■ 2012년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2012.10.25, 위원장) ■ IT융합기술 표준경쟁력 강화 심포지움 축사(2012.11.1, 진흥관)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회의(2011.7.28) ■ 지식재산위원회 제2차 회의(2011.11.21) ■ 지식재산 원년 선포식(2012.1.31) ■ 특허소송 및 산 · 학 · 연 협력연구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2012.3.8) ■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 보도(KTV)(2012.3.19)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출범 (2012.4.5) ■ 내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확정 (2012.4.24) ■ “정부, 기술 콘텐츠 등 무형자산 가치평가 활성화 모색”(2012.5.9) ■ “정부, 국제 표준특허 확보노력에 박차”(2012.5.1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소송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2012.5.31) ■ “MP3 플레이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3조원 날려”(2012.7.18)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0대 핵심 지식재산사업 중점 지원키로(2012.7.2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 · 학 · 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2012.9.24) ■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추진(2012.9.28)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차 컨퍼런스 개최(2012.12.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차 회의, ‘특허소송 관할집중 방안’ 보고(2012.12.12)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구축

지식재산 정책의 현안에 대응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 ·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부처뿐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 산 · 학 · 연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와 협력을 구체화하고자 구성한 것이 바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이다. 즉 지식재산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부처와 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민간의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한 축을 형성하고, 현장의 정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제적 ·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 지식재산 관련단체 등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협력채널이자 정책 논의의 장(場)인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정책 전반에 걸친 현장집행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 · 교류 · 협력 및 영역 간 융 · 복합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 참여기관들 간 간담회, 포럼, 컨퍼런스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통해 관련 민간 기업, 연구자, 일반 국민 등 폭넓은 수요자가 지식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네트워크가 각 지역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진정한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2. 제1차 컨퍼런스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부처의 업무영역 경계를 넘어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먼저 2012년 4월 5일, ‘제1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수원 특허청장,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지경부·국과위 등 8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담당자와 170여 명의 유관기관장 및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주요 참여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구(舊) R&D특허센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기술보증기금,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70여 개의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산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IP-R&D분과’, ‘IP-보호분과’, ‘IP-금융분과’, ‘IP-인력·교육분과’, ‘IP-인식제고분과’ 등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유관기관 간 자유로운 주제 토론시간을 가졌고, IP-표준, IP-보호·금융, IP-인력·교육 등 3개 분야에서는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제1차 컨퍼런스(2012.4.5)〉



기조강연



분과별 주제 토의

(1) 5개 분과별 주제 토의

우선 ‘IP-R&D분과’에는 31개 유관기관 업무담당자가 참여하여 ‘표준특허 창출·확보 지원’과 ‘IP-R&D관리 효율화’를 논의하였다. 발제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구(舊) R&D특허센터)에서는 특허 출원의 질적 수준 개선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표준특허의 창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분과 참여기관들도 특허의 질적평가에 대한 분석방법 개선,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청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 R&D 예산과는 별도의 표준화 예산의 책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IP-보호분과’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각각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해외 분쟁 지원에 대해 분쟁 사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IP지원기관과 산업체 협회가 협력하여 분쟁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저작권과 산업체재산권의 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IP-금융분과’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금융·가치평가·창의자본’에 대해 발제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특허와 기술의 개념 및 접근법에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으며, 창의자본 활용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협회의 컨소시엄에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참여하거나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지식재산유동화 모델과 기술보증기금의 CDS(Credit Default Swap) 모델 활용 시 상호 협력하는 등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IP-인력·교육분과’의 주제는 ‘지식재산 교육·인력양성’이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제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내 지식재산 전담인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워크숍 개최 및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분과 참여기관들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체재산권과 저작권 교육의 연계, 산업체 특성화 교육과정의 마련, 지방교육의 확대 등 IP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IP-인식제고분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대국민 인식 및 접근성 제고’ 발제를 통해 저작권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재산권의 침해 관점에서 이용 관점으로 변경해야 하며,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여 저작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부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 발제를 통해 분과 협의체 구성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분과 토의에서 참여기관들은 기업 내 지재권 전담인력의 필요성과 직무발명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분과별 논의주제 및 발제기관〉

구 분	IP-R&D	IP-보호	IP-금융	IP-인력·교육	IP-인식제고
논의 주제	표준특허 창출 확보 지원, IP-R&D 관리 효율화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기술금융 가치평가 창의자본	지식재산 교육·인력양성	지식재산권 대국민 인식 및 접근성 제고
발제 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구 R&D특허센터)	전자정보통신 진흥회, 지식재산 보호협회, 저작권위원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2) 업무협력협정(MOU) 체결

이날 컨퍼런스 행사에서는 ①표준특허 창출·확보 분야 ②지식재산 보호·금융 분야 ③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력협정(MOU) 체결분야 및 기관〉

체결 분야	체결 기관
표준특허 창출·확보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식재산 보호·금융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벤처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표준특허 창출·확보 분야’에서의 MOU 체결 내용은 표준특허 분석을 통해 표준화 동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R&D 기관에 제공하는 특허-표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이었다. ‘지식재산 보호·금융 분야’에서의 MOU는 지식재산보호협회가 해외특허괴물 활동정보, 지식재산 해외 분쟁 정보를 산업별 협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특허 풀(pool)을 구축함에 있어 산업별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분야’는 발명진흥회 등 교육공급자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기업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수요자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제1차 컨퍼런스(2012.4.5.)〉



업무협력협정(MOU) 체결

(3) 업무협력협정(MOU) 체결의 후속조치

컨퍼런스 당일 체결된 업무협력협정(MOU) 중 ‘표준특허 창출·확보 분야’ 협정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5월 16일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으로 16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표준특허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표준특허 관련,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간에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표준특허 관련 정책 정보 및 표준특허 창출 성공전략 등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운영 계획’과 ‘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 현황·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이 안건으로 보고되었다. 안건 보고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부기관(7개)과 유관기관(9개)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모범 사례 공유 및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을 통한 역량 제고 등이 제시되었으며, 표준화 활동 예산 책정과 표준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식재산 보호·금융분야’ 업무협력협정(MOU)의 후속조치로서 협정 체결 기관 간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소유권 또는 라이선스를 받아서 활용하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지원 사업에 벤처기업협회 및 산업협회가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분야’ 업무협력협정(MOU)의 후속조치로서 2012년 4월 5일 제1차 컨퍼런스 IP-인력·교육 분과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및 담당자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현황 자료 검토 결과 IP-인력·교육 분과 내 24개 참여기관 중 12개 기관에서 11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가 심화교육 및 산업별 특화교육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유관기관 교류·협력 활성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기반 등 전반에 걸쳐 관련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접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논의주제를 제시하는 등의 구심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가지식재산 전략기획단 내에는 상시적인 소통채널로서 각 분과별 담당관을 지정하였다.

유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과별 간사기관을 선정하여 분과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사기관으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IP-R&D분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IP-보호분과),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P-금융분과), 한국발명진흥회(IP-인력·교육분과), 한국저작권위원회(IP-인식제고분과)가 선정되었으며, 분과별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동 추진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여기관 간의 협력심화 및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분과별 협의회 및 워크숍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분과별 논의주제 및 발제기관〉

분과	IP-R&D	IP-보호	IP-금융	IP-인력·교육	IP-인식제고
간사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구 R&D특허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분과협의	워크숍 1회 협의회 1회	협의회 2회	워크숍 2회 협의회 1회	협의회 1회	협의회 1회

네트워크 각 분과의 간사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5월 22일 제1차 간사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분과별 담당관과 간사기관 담당자가 분과별 워크숍 또는 협의회 등 자주 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참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사기관들은 각 기관의 컨퍼런스와 네트워크의 컨퍼런스 간 중복을 방지하고 차별화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IP-인력·교육 분과와 IP-인식제고 분과의 연계 협력 방안과 각 분과별 참여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간사기관 간담회는 네트워크와 분과의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상시 네트워킹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SNS 페이지를 개설(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IPnet> 트위터: http://twitter.com/KIP_net)하여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SNS페이지에 네트워크의 참여기관이 직접 관련정보와 기관소식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지식재산 관련 정보 및 주요 보도자료, 지식재산 관련분야 인재채용 정보의 게시를 통해 참여기관뿐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개인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두 차례 SNS 이벤트(지식재산 퀴즈 이벤트, 지식재산 포토콘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4. 제2차 컨퍼런스 개최

2012년 12월 3일에는 지난 1년간 국가지식재산 정책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5개 분과中最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3개 분야(R&D, 보호, 금융 분과)의 동향과 향후과제를 토

론하는 자리로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특허청 등 21개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50여 명의 유관기관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참여하여 당초 네트워크를 지역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실현하였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제2차 컨퍼런스(2012.12.3)〉



기조강연



패널토론

세션2에서 진행한 발표 및 토론의 주제는 ①가치있는 IP창출전략으로서의 IP-R&D 연계방안, 그 현황과 향후과제 ②중소·중견기업의 드러나지 않는 특허분쟁 현실과 향후과제 ③국내외 IP금융 정책·제도 동향과 향후과제 등이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가치있는 IP창출전략으로서의 IP-R&D 연계방안, 그 현황과 향후과제’ 주제발표에서는 R&D 전략이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보분석 활동 패러다임도 정보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보분석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고, 각 DB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전담인력 양성을 통해 전 주기적인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패널들은 이에 대해 R&D 지원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는 전문인력 및 연구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전 주기적 관점에서 정책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 주제인 ‘중소·중견기업의 드러나지 않는 특허분쟁 현실과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홍보 용도의 저품질 지재권을 창출하거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관리가 부실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며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에 해외기업 기술

의 국산화를 요구함으로써 분쟁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 존중과 특허보증 요구 등을 통해 IP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패널들은 좋은 아이디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부실권리와 높은 무효화율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심사체계의 개선과 함께 법원과 CEO의 지식재산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 번째 주제인 ‘국내외 IP금융 정책·제도 동향과 향후과제’ 발표는 현재 국내의 IP비즈니스 대부분이 창출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활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IP활용 비즈니스 부문의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IP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P와 금융분야 융합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창의자본 회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며 IP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침해 입증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금융·법률·기술 분야의 융합을 기반으로 IP금융 관련제도를 만들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분과에서는 향후 지식재산의 활용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부실권리와 높은 무효화율 문제의 개선방안과 IP권리 침해의 손해입증 방법 및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자 하며, 향후 지식재산 유관 네트워크(IPMS, KINPA 등)와의 컨퍼런스 공동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국제교류 · 협력체계 구축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교류 실적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경쟁 가속화로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공조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국제적 업무협력 및 지식재산 규범형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6조는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를 위해 국가 간 법 · 제도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지식재산제도의 선진화 ·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5회에 걸친 해외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제교류 · 협력관계를 구축 ·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교류 · 협력관계를 심화 · 확대하여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1)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① 유럽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

- 기간/장소 : 2011.12.14(수)~20(화) / 프랑스(파리), 벨기에(브뤼셀)
- 방문자 : 고기석 단장 외 2명
- 방문기관 : 특허청(INPI, 프랑스), 유럽위원회(EC, 벨기에) 등 7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위원회는 유럽 지식재산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체계 구축과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프랑스 특허청 등 7개 지식재산 유관기관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프랑스 특허청은 특허 · 상표 · 디자인권 등록, 기술혁신 지원 및 민간에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연수과정제공과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방문으로 양측은 지식재산권 정책의 운영상 공통 관심사항으로서 상호 간의 제도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 특허청은 위조활동 방지, 중소기업 지원, 대국민 인식제고, 특허관리 회사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한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통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EU는 지식재산을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인식하고 EU 지식재산권 단일시장 전략을 마련 중에 있었다. 특히 단일특허제도나 공동특허법원의 설립 및 저작권 제도 개선 등을 중요한 의제로 논의하고 있었으며, 특허 · 상표 · 권리적표시 · 지식재산권침해대책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FTA 체결 이후 EU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양자간 정책 대화 채널 확대가 필요하며, 새로운 지식재산 강국인 한국의 지식재산위원회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외에도 유럽 방문을 통해 위조품 방지 위원회(CNAC), 제조자연합회(UNIFAB), 프랑스특허회사(France Brevets), 프랑스 문화공보부, 인터넷 권리보호 기구(HADOPI) 등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교류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단일특허 및 공통특허법원 설립 등의 단일시장 전략추진에 따른 유럽 각국 특허청의 기능축소 또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한-EU FTA가 체결된 시점에서 향후 EC와의 직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럽 단일 특허시장에 관련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기관들은 지재권 강국인 한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였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정책 결정 · 조정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일본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

- 기간/장소 : 2012.4.8(일)~12(목) / 일본(도쿄, 교토)
- 방문자 : 이상진 정책관 외 2명
- 방문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추진본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등 8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위원회는 우리보다 앞서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한국의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지식재산 유관기관을 방문하였다. 특히 위원회의 주요현안인 특허소송 공동대리, 소프트웨어 특허보호, 산 · 학 · 연 협력연구 귀속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개선 사례와 효과를 직접 조사하고 일본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현황 및 주요정책과 평가체계, 지역 지식재산 역량제고 방안 등에 대한 선행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지적재산전략추진본부는 일본내각 소속으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여 전 부처 대신과 각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일본정부 전체의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작성 · 추진,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정책의 기획 · 추진 ·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전략 추진 이후 지식재산을 개별 · 분야별이 아닌 큰 틀로 연계하여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략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미흡으로 인해 지식재산을 글로벌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추진이 미비하였음을 자평하며, 앞으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한국과의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의견교환과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양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과제에 대한 발굴을 논의하였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의 특히 무효소송 및 침해소송의 2심 법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현안인 소송대리인 전문성 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2001년 6월)하여 일정절차를 거치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리권의 변화는 우수한 변리사의 소송참여를 통한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문부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문부성 산 · 학 연계지원과, 특허청, 문화청, 니시진오리 공업조합, 교토대학교 산관학 제휴본부 등을 방문하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0년에 걸친 일본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허소송 대리인 전문성 강화, 산 · 학 · 연 협력연구, 소프트웨어 특히 관련하여 일본의 선례를 잘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에 대한 공유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교류협력체계에 대한 구축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③ 중국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

- 기간/장소 : 2012.5.23(수)~28(월) / 중국(베이징, 상하이)
- 방문자 : 박성준 진흥관 외 2명
- 방문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등 7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한국의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 유관기관을 방문하였다. 특히 한-중 FTA의 주된 쟁점으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등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 및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의 국내지재권 보호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부 연석회의의 사무국으로서, 연석회의는 지식재산 관련 28개 부처의 부부장급¹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문제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주요 지식재산 정책으로는 백천만 지식재산권 인재사업 등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사업과 지재권 담보대출,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약 500여 명의 지식재산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관련기관에서 핵심인재로 활용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억위안의 대출금을 발생시키는 성과를 올린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기관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로 간의 지식재산정책과 추진전략상의 유사점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중국 인민대 지식재산대학원은 1986년 중국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중국 지식재산권법률제도와 관련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민대 측은 현행 중국의 지식재산법률은 빠른 발전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임을 밝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법률의 개정작업¹²⁾이 완료된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인민대는 3년 전부터 서울대 법대와 지재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고려대 법대와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는 등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었다. 지재권 법률제도 발전을 위해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고 각국 주요기관에 인력파견을 하는 등 국제 교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1)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

12) 현재 중국에서는 저작권법과 상표법 개정과정이 진행 중이며, 현재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의 최고 인민법원은 중국 내 지재권 재판에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2000년도 이후 지재권 전문 심판정의 설립과 더불어 판사 선발 시 기술적 배경을 가진 이공계 출신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이 낮고 손해배상액 추정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국가판권국, 란타이 로펌,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상하이시 공상행정국 등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파악하였고,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모습을 확인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제도와 한국과 유사함을 느끼고 양국 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④ 미국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

- 기간/장소 : 2012.12.13(목)~20(목) / 미국(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D.C.)
- 방문자 : 고기석 단장 외 1명
- 방문기관 : IPXI, CAFC 등 5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우리보다 앞서서 지재권 분쟁 해결제도와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금융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현황을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의 지식재산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지식재산 유관기관을 방문하였다.

McDermott Will & Emery는 시카고, 워싱턴, 보스턴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지재권 로펌 중의 하나로 한-미 FTA 체결 이후, 지재권 분쟁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로펌은 일반변호사와 특허변호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전문적인 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11월에 한국지사를 설립하는 등 한국 특허소송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로펌 관계자들은 일반변호사와 특허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인정함과 동시에 두 전문가들이 서로 대립이 아닌 상호 협업 등을 통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 중인 ‘변리사 공동대리’ 이슈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IPXI는 유닛라이선스 권리계약(Unit License RightTM Contract, ULR 계약)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2년 전부터 지식재산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는 지식재산 거래회사이다. 이 회사는 오션토모 등 민간 IP 금융회사, 대학, 기업 등이 재정을 공급하였으며, 특허권 거래 시 발생되는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고, 정부 부처에 의한 투자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IP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표준화된 계약서인 특허이용허가권에 대한 특허권 소유자와 공급자들의 동의 · 수용 등 성숙된 지식재산 거래문화와 민간시장 중심의 지식재산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뉴햄프셔 법과대학(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Formerly Franklin Pierce Law Center))은 2008년부터 프랭클린 피어스로 센터와 합병을 추진하여 2010년에 마무리하였다. 뉴햄프셔 법과대학은 지식재산권 분야로 특화되어 운영되던 프랭클린 피어스로 센터의 오랜 전통을 이어 받아오고 있으며, 미국 내 손꼽히는 지재권 특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은 JD와 MBA 통합과정, MIP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특허법, 상법, 디자인법 외에 방송 · 오락 · 미디어 · 콘텐츠 등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지재권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은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침해소송 ‘관찰집증’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의 지재권 분쟁소송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국특허청(USPTO)은 한국의 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조정 · 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점에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인 상호교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재미한인변호사협회(KAIPBA)의 김주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한국에서 추진 중인 ‘변리사 대리소송’, ‘특허변호사 도입’,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특허소송제도와 인력양성체계, 특허변호사 제도,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⑤ 영국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

- 기간/장소 : 2012.12.13(목)~19(수) / 영국(런던, 뉴포트 등)
- 방문자 : 이상진 정책관 외 2명
- 방문기관 : 영국 특허청, 영국 변리사협회 등 4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위원회는 산 · 학 공동연구에서의 합리적 성과배분 등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협약촉진 사례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정착 방안을 도출하고, 지식재산 분쟁해결 선진화를 위한 영국 사례 분석 및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영국 특허청 · 변리사협회 등을 방문하였다.

영국 특허청은 위원회가 만든 ‘산 · 학 · 연 협력연구 가이드라인’(2012년 12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 가이드 라인과 유사한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을 소개하였는데, 2008년 대학 · 산업체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4가지 모델이 개발되었다. 영국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램버트 툴킷’의 성과물에 대해서 브라질, 중국, 한국 등과 공유하고 산출물이 확산되기를 희망하였다. 영국 옥스퍼드 아이시스(Oxford Isis, 옥스퍼드 대학 부설 기술이전 전담회사) 방문 시 ‘램버트 툴킷’ 사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업 · 대학 간 협력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변리사협회(CIPA)는 영국은 특허소송 전담판사가 존재하여 특허소송의 전문성이 높고, 향후에도 소송의 전문성은 계속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문화와 역사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의 유사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양국이 모두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2) 해외 지식재산 유관 인사들의 위원회 방문

지식재산권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정부의 지식 재산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우리 위원회의 구성 · 역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각자 자신과 관계 있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추진, 특허권, 저작권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적인 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해외 인사들의 방문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반영하고 이의 중심에 서 있는 위원회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해외 지식재산 유관인사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해외 지식재산 유관 인사들의 위원회 방문〉

방문일자	방문자	직 책
2011.9.9(금)	Yves Lapierre	프랑스 특허청장
2011.11.30(수)	Ramanathan Ambi SUNDARAM	WIPO 사무차장보
2012.3.21(수)	Hirokazu NAKANO	지적재산추진전략본부 참사관 보좌
2012.4.30(월)	Thomas C. Rubin	MS 지식재산 전략 최고 고문
2012.5.2(수)	Johannes Christian Wighard	WIPO 사무차장
2012.8.27(월)	John Timothy Broderick, Jr	UNH School of Law 관계자
2012.10.22(월)	Wang Xiaohui	중국 전리복심 위원회 부주임
2013.1.16(수)	Jim Brookshir	미국 연방순회 변호사 협회 방문

2. 기타 지식재산 유관 부처의 교류 현황 (외교부, 문화부, 특허청 등)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에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를 위한 국가 간 법·제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효율화를 강조함에 따라 위원회뿐 아니라 외교부·문화부·특허청 등의 정부 각 부처에서도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힘쓰고 있다.

(1) 외교부

외교부는 지식재산 관련 통상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지재권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강화하고 통상이익을 제고하고 있다. TRIPs, FTA 등 다자 및 양자 규범 논의에서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지식재산 관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미 FTA, 한-EU FTA 등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FTA에서 특허·상표·집행 등을 포함한 효과적

인 지재권 제도 이행 및 설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 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2) 문화부

문화부에서는 글로벌 저작권 시스템 선도를 위해 저작권 보호 및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및 문화 분야 통상 협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국가의 민간단체 간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아시안 네트워크(DCAN : 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구축과 개도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우리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전파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정립을 선도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내의 '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3) 특허청

특허청에서는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를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WIPO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상표법상설위원회(SCT) 등의 회의에 참가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허청-OECD 간 특허통계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관련 공동연구 및 간행물 발간 등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협력협정(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특허정보를 통해 최빈·개도국 낙후지역의 상황 및 운영·관리 능력에 부합되는 적정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APEC과 공동으로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브랜드 미비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우수생산품의 브랜드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하여 몽골 및 아제르바이잔에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WIPO 등과 공동으로 개도국 공무원·학생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제3장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제1절 82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경과

제2절 84

정책비전 및 목표

제3절 91

전략목표 및 주요 과제

제4절 160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경과

1. 기본계획 성격·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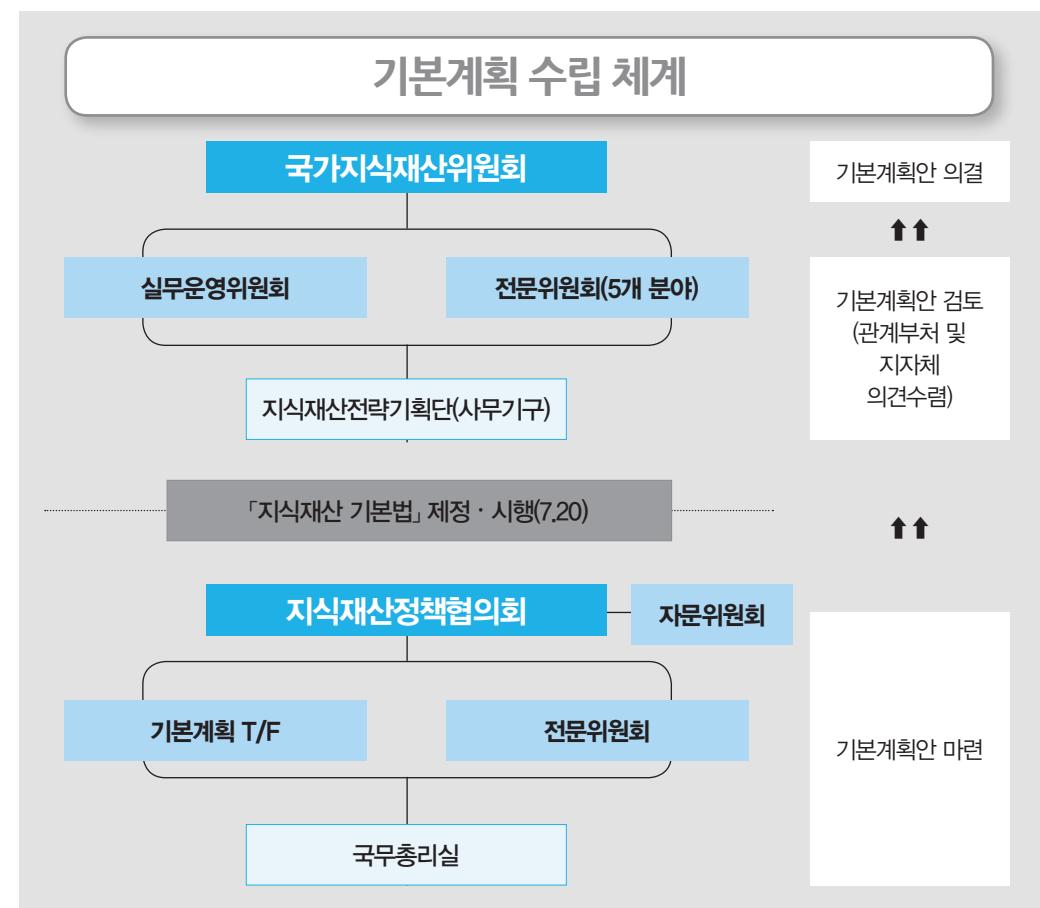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는 정부·민간 합동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전략으로서, 지난 2011년 11월에 수립된 제1차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기본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체계화하는 종합계획 이자 정부가 국민·기업·시장에게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 수립 경과

지난 2009년 7월 대통령 주재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에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등 주요 과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의장을 국무총리실장으

로 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그 이듬해인 2010년 3월에는 기본계획안 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합동으로 「기본계획 T/F」가 구성되었는데, 이 「기본계획 T/F」에는 총괄,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등 5개 작업반이 운영되어 기본계획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2011년 9월 28일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산·학·연·법의 대표 민간전문가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창출, 보호, 활용, 기반, 및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로 각 전문위원 1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계획안을 집중 검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제2절 정책비전 및 목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정책비전인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의 달성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정한 다음, 각 정책방향별로 모두 20대 전략목표 및 133개의 관리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1.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는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원천·표준특허, 차세대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 및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창출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획, 수행, 평가의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및 표준과 연계를 강화하고 「R&D-특허-표준」이 일관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서비스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표준특허 창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응용·개발 등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추진함과 아울러, 특허정보의 전략적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콘텐츠산업의 스마트화, 응·복합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기기-콘텐츠-서비스」가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드·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상표의 공정한 사용 촉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디자인 기업 육성과 전문인력의 고도화를 통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창의고급인재 양성 추진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이다.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의 개선 및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의성 높은 기초연구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내므로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콘텐츠 분야의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및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 인력의 유치를 통해 개방형(Open Innovation) 연구개발 환경의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이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지식재산 창출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높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관리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별·기술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로 IP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특허 등 지식재산 중심의 관리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강한 지재권을 소유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생명·나노·우주항공·환경에너지·문화기술 등 핵심기술 분야와 차세대 콘텐츠 분야의 지식기반형 중소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센터 활용 및 지재권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지재권 경영전략,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는 지역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획득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2.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발생 시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크게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의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이다.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최적화를 추진하고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심사처리 기간의 합리적 관리, 심사품질 관리체계의 고도화,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심사역량 강화 및 협력 방지를 통해 저작권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추진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권리 안정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이다. 온·오프라인상에서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문화를 조성 중이다. 아울러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기반도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셋째,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이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해외 지재권 보호기반을 조성하고 침해대응 현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간 국제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넷째,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이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관할집중 등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신속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심판의 신속성과 품질제고 및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

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제출, 손해 규모의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침해 재발 방지에 미흡한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다.

3.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지식재산 활용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기술의 이전·사업화·창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공공·공유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하며,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구현 및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술탈취·유용 예방 시스템 확립 및 지식재산권의 남용 방지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이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학산 전담기구(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선진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공공정보·공유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확대 등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둘째,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다.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육성하여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장, 투·융자 시스템을 비롯한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을 자산(asset)으로 적극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지식재산 활용 활동이 다변화·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증대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분야는 초기에 시장을 잘 형성하게 되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 컨설팅이나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다.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이 탈취·유용되지 않는 공정한 환경 구축과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식재산의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관계부처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력할 예정이다.

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양교육을 통한 범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찾아가는 교육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강화, 지식재산의 홍보전략 T/F구성을 통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시키며, 산·학 공동 연구 시 지식재산소유권에 대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의를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지원 및 경제적 약자의 출원비용, 변리서비스 등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인력양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체계화를 통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식재산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 초·중·고등 지식재산 교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대학교수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의 확대 등 전반적 지식재산 교육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창조적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고교의 발명교육 등 창의성 중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지원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지식재산 서비-

스의 전반적인 수준이 제고될 수 있는바, 법조인력(변리사 및 변호사), 저작권 신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 CIPO(지식재산 최고책임자)의 양성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후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동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식의 확산 및 정책결정 효율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연구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대학의 지식재산 연구기반, 공공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지식재산 법·제도의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국제협력 증진 및 대(對)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역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역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통한 법적·인적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한 지식재산의 경우, 남북한 지식재산제도 조화 및 보호를 위한 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며 남북한 지식재산제도의 단계적 접근방안(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5.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확립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그 청사진으로 하고 있는바, 앞에서와 같이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 각각의 분야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규정함과 동시에, 어느 하나로 포괄하기 어려운 신지식재산 분야의 경우 그 보호체계 및 보호수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체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즉 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의 달성을 위해 신지식재산 분야는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고, 분야별로 ‘신품종 지식

제3절 전략목표 및 주요 과제

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생물자원 보존 · 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이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상대적으로 권리화의 역사가 긴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달리,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 · 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우선은 그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신지식재산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분야들은 관련 법령 · 제도의 구축 여부 및 창출 · 보호 · 활용 체계의 구비 여부가 상이한 상태에 있는바, 그 분야의 성격 및 제도화 단계, 국제적 논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법 · 제도 ·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먼저 식물신品种이나 지리적표시의 경우 종래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제도이지만 권리로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분야의 경우 현존하는 제도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분쟁 · 침해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고부가 수익창출 지원 및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는 달리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과 같이 아직 국내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아 보호, 이익 공유 등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재산의 경우, 국내 권리화 ·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상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잠재적 가치가 큰 유망 신지식재산의 경우, 지속적인 발굴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법 ·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1. ‘창출’ 분야

(1)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국가 R&D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볼 때 R&D 성과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 우리나라 전체 SCI 논문 중 60% 이상이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우수특허 비율이 민간의 1/2, 외국인 특허의 1/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의 질(質)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주요 지식재산 현황(2010년)〉

구 분	우리나라 전체(a)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 b)	비중(b/a, %)
SCI논문개재(건)	39,843	23,916	60.0
특허출원(건)	131,805	17,969	13.6
특허등록(건)	51,404	4,641	9.0

※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특히 중에서도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표준특허, 핵심·원천특허의 확보 및 창출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 등 개별적인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전 세계 기준의 국제 표준특허 중 우리나라가 확보한 표준특허 비율은 3.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변기술에 의한 기술경쟁력 확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체계를 성과와 질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세계 표준특허 중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국제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0년도 3.1%에서 2016년도 5.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응용 및 개발연구단계 실시 대상과제 기준으로 특허동향조사·분석 실시 비율을 2010년 31.1%에서 2016년도 100%로 전면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미국 특허청 등록 특허의 상대적 피인용도 지수를 2009년 0.65에서 2016년도 0.80까지 제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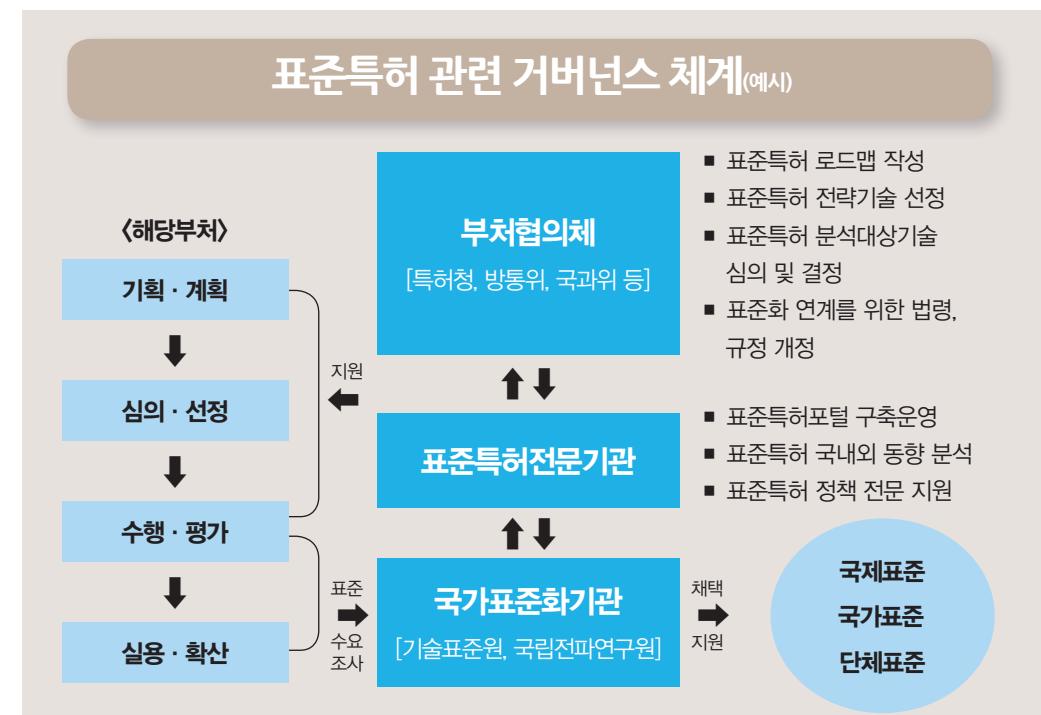
①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 단계에 걸쳐 R&D 전략, 특허전략, 표준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R&D 단계 과제는 IT 및 신성장분야 등 국제표준화 논의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전 과정(Plan-Do-See)에 걸쳐 표준특허에 대한 분석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제 표준안 개발 단계 과제는 표준안 개발과정에서 기술 중심의 표준내용을 특허 중심의 표준내용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 국제표준안의 내용에 국내특허기술 반영 등 특허전략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추진 및 확정 단계 과제는 표준화 추진 상황에 따라 표준관련 특허 내용의 보정 및 분할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특허 PM(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국제표준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특허 전문가가 R&D 기획·관리·평가 단계에 참여하여 전략적으로 표준특허를 창출·관리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가표준 검토, 국제표준 대응 등 국내외 표준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표준 전문위원회에 특허 전문가의 참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특허 창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라도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과제는 후속연구 및 표준화 과정을 지원하여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및 성과평가 시 표준특허 확보 과제에 대한 가점부여 등 부처별로 적절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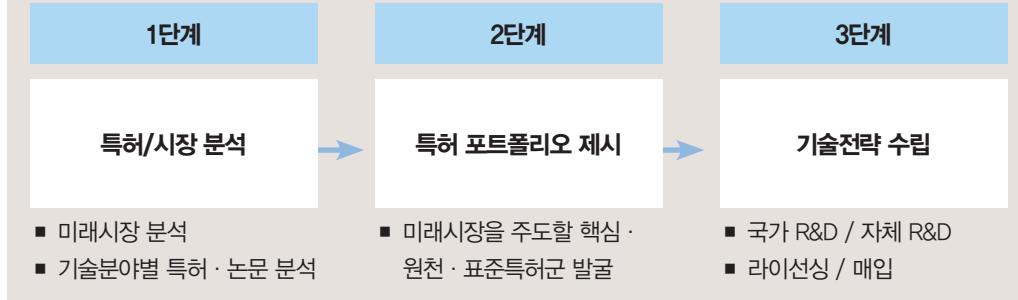
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특허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특허 로드맵 작성, 표준특허 전략기술 선정, 표준화 연계를 위한 법령·규정 개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 위원회를 중심으로 16개의 정부 및 관련기관이 2012년 5월 ‘제1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표준특허 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 표준특허 동향 분석, 부처별 지원사업 안내,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강화, 연구개발 수행 및 완료단계에서의 지식재산 획득·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응용·개발연구과제의 경우 2010년도 31% 수준인 특허동향 조사·분석을 2016년까지 100%로 전면실시하고,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따라 특허정보 활용 수준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미래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자재권 포트폴리오(핵심·원천특허군)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자재권 획득전략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지재권 획득전략’ 수립 절차



또한 지식재산권 선점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로드맵 구축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원천성, 시장성,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유망기술을 분석·유형화(원천특허, 길목특허, 개량특허 등)하고 관련 유망특허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산업별·기술별로 제공하여 우수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에 R&D 투자를 집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는 발명자 인터뷰제도 등 기술가치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구개발 단계 중 창출된 발명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여부 및 실용화·기술이전 가능성 검토 후 특허비용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것이다. 지식재산 관련 경비 확대 및 효율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사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편성하여 철저한 사전기획·관리를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전문가 풀(pool)을 확충하여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연구개발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 차별화

연구개발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우선 「새롭고 독창적 지식창출」을 통한 과학 기초(Science Base) 강화를 위해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논문 확보와 미래기술수요에 부응하여 추진할 것이다. 순수기초연구(science)는 연구자의 창의성 발현 극대화를 위해 Bottom-up형 기획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진도관리는 연차평가(1년 단위) 대신 간략한 모니터링·점검으로 평가를 간소화하고, 성실실패제도 적용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 유도를 추진하고자 한다. 목적기초연구(research)는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Bottom-up형과 Top-down형의 혼합형태인 Middle up-down형 기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응용 및 개발연구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기 국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R&D)는 Top-down형 기획, 3P(Paper, Patent, Product) 분석, 컨설팅 상시 지원, 특허의 질적 개발(피인용도, 특히 1건당 특허 수입료 등)을 적용한 질적평가를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단기적 국가전략 중심으로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개발연구(R&BD)는 단기 기술이전·사업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Top-down형 기획, 3P 분석, 동향지원, 사업화, 기술이전 등 경제적 성과를 반영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한다.

R&D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 체계

개발 · 응용연구	④ R&BD [개발연구]	③ R&D [응용연구]
	① Science [순수기초연구]	② Research [목적기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 분야, 단기성과 창출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원천 특허 확보, 기술이전 중심연구 - 사업화, 기술이전 등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아젠다 중심, 대형성과 창출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원천 특허 확보, 중심연구 - 철저한 사전기획, 특허의 질적평가 강화
	단기	장기

(2) 콘텐츠, 브랜드 ·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다음으로는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제시하기로 한다. 현재 콘텐츠 산업은 3D화, 스마트화, 융·복합화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선진국들은 콘텐츠·미디어 중심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TV, 모바일

폰 등 관련 기기 및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서비스 발전을 선도하는 고부가 가치 핵심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2008년)는 1조4,086억달러로 매우 크나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2%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별 콘텐츠 시장규모 비중 비교, PWC(2010)〉

순위	국가	시장규모(비중)	순위	국가	시장규모(비중)
1위	미국	4,281억달러(32.4%)	6위	프랑스	619억달러(4.7%)
2위	일본	1,643억달러(12.3%)	7위	이탈리아	419억달러(3.2%)
3위	독일	885억달러(6.7%)	8위	캐나다	323억달러(2.4%)
4위	중국	758억달러(5.7%)	9위	한국	288억달러(2.2%)
5위	영국	732억달러(5.5%)	10위	스페인	286억달러(2.2%)

한편, 소비자의 욕구가 고도화되면서 제품·서비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브랜드·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브랜드는 제품의 출처표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재산권으로서 기능하고, 디자인은 제품 구매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표·디자인 출원건수는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는 세계 수준과 격차가 존재한다. 글로벌 100대 기업 브랜드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17위, 현대자동차 61위로 단 2곳에 불과하다(인터브랜드, 2011년 기준).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이하 수준으로서 대기업 편중의 디자인 투자구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등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산업 발전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대기업 수는 1%에 불과하나 디자인 투자비중이 35%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수자는 99%이나 투자 비중은 65%이다.

소프트웨어 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1조달러 규모인 세계시장의 1.8% 수준인 20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특히 스마트폰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같이 하드웨어·인프라와 융합되는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MS, 오라클, SAP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의 64.4%(2009년)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IT서비스는 현지화 경향이 있어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이 81.4%로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은 저조하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국내 시장 규모가 78억9,000만달러로 세계시장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영세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대부분 외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국산화율은 휴대폰 15%, 자동차 5%, 로봇 5%인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며, 대·중소기업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발전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현황분석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디자인·소프트웨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성과목표를 제시한다. 우선 콘텐츠 수출액을 2010년도 30억달러에서 2016년도 75억달러로 확대하고, 디자인 국제경쟁력 순위는 2010년도 15위에서 2016년도 7위로 제고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2010년도 12억3,000만달러에서 2016년도 18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고품질 콘텐츠 기술 개발 및 신규 수요창출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3D 콘텐츠 및 CG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활성화 여건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IPTV, 디지털 케이블 TV 등 양방향성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방통융합형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산업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스마트폰 88.6%, 앱 290%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 콘텐츠의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테스트베드·기술·입주공간·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량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해당 지역 서버의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기-콘텐츠-플랫폼이 통합되는 콘텐츠산업의 新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3D, 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 융·복합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지원을 통해 지역의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연, 뮤지컬, 대중연예, 연극, 무용 등의 기획·제작과 실연을 위한 지능형 공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의 금융·투자활성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각 자조합 2,000억원, 방송콘텐츠 투자 펀드 500억원을 조성하여 제작 또는

창업초기단계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대규모 해외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2011~2012년에 2,000억 원을 조성하여 북미시장 등을 타깃으로 대형 민관·해외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2012~2015년에 총 1,000억원을 조성하여 1조9,021억원 규모로 보증·융자를 지원하는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영세콘텐츠 업계에 대한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②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상표의 공정한 사용 촉진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상표 등록·출원 시 상품당 기본 지정상품수를 초과하는 상표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를 도입하여, 상표 브로커의 상표선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사업자의 상표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의 등록주의 체계에 상표 등록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거나 사용 중 상표에 대해서만 침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주의 요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브랜드 컨설턴트가 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브랜드 경영관련 교육·상담,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출원비용지원 등 브랜드 관련 컨설팅에서 개발 및 권리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창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특허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브랜드 네이밍 또는 번역어·슬로건 개발 및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유관기관(예시: 대한상표협회 등) 활성화 등을 통해 상표보호 강화 및 브랜드 가치평가 이용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 창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이후 디자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기술 R&D와 융합함으로써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디자인센터 및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광주는 LED 조명·디자인, 대구는 전자정보산업·디자인 등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육성

한다. 디자인 기업 주도의 디자인 컨설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디자인 시장 규모가 2006년 6조8,000억원에서 2010년 6조9,000억원(1%)으로 정체된 내수시장을 고려하여 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공학, 경영학, 인문학 등을 접목하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과 최우수 인재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 디자인에 한정된 기존 공공디자인 사업을 디자인을 통한 에너지, 의료, 친환경 분야 등 사회문제해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색채, 디자인 신소재 개발, 마감, UI(User Interface), 그린디자인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중소기업·공공기관·대학에 중견 정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역사, 문화 등에서 우리 고유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활용하는 한국 디자인 DN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창의적 미디어 및 콘텐츠와 결합한 디자인 개발·확산을 통해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에 기반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③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고급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소프트웨어 신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개발 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예시: 휴대폰, 자동차, 조선, 로봇 등),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예시: 교통서비스, 콘텐츠 등)와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수의 연구주체가 참여한 후 최우수팀에 R&D 과제비를 지급하는 「후불형 서바이벌 R&D」를 도입하고, 「소액 도전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생 등에 R&D 기회를 부여하여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R&D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급속한 글로벌 IT산업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포럼 결성 및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오픈소스(open sourc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개별 소프트웨어 IP, 소스코드, 모듈, 개발 노하우, 아이디어 등 기술자산 정보 DB 구축,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풀(pool) 구축 및 기술 보강, 검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뱅크」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뱅크는 확보된 정보 DB 및 자산 풀(pool)을 활용하여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제공, 필요 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범부처 소프트웨어 수출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한 전략시장을 선정하고 미국, 일본 등 대규모(세계의 61%) 시장 분석과 기술교류를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우위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브랜드, 해외거점 등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을 해외경험이 많은 대기업이 종합상사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고급·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론)과 기업(실무)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성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계약형 소프트웨어 학사·석사과정,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소프트웨어 융합 채용연수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고급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 배양 중심의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및 산업체 수요지향적 대학 소프트웨어 교과과정도 추진되고 있다. 우수인재 지원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해외유학 지원, 장학금 지급 등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 경진대회 개최 등 소프트웨어 영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3)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창조력 높은 기초연구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높은 연구성과는 미흡하다. 국가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투자 비중은 29.2%(2조9,563 억원, 2010년)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8% 증가하여 양적 성과로 SCI 논문 게재 수 세계 11위, SCI논문 세계 점유율은 10년간 약 2배(1999년 1.3% → 2009년 2.5%) 성장하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논문 한 편당 피인용 횟수가 3.5회 수준으로 세계 30위에 불과하다.

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균원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의인재 부족 및 창작환경이 취약하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공급인력은 2018년까지 매년 4만~5만명으로 공급 과잉이 전망될 정도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률은 20% 일 정도로 고급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저조하다. 국가 R&D 예산 중 국제공동연구 관련 예산 비중(6.7%, 2010년)이 낮은 수준이며, 국제협력 수준도 OECD 최하위 수준(22위, 2009년)으로 평가된다. 국제공동연구 지식재산권의 소유, 관리,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부재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실태를 고려하여 창의력 증진을 위한 제도·여건의 개선 및 외부 지식재산 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3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창의인재 양성 수(문화부·지경부의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의인재양성사업 기준)를 2010년도 180명에서 2016년도 7,050명으로 확대하고, 둘째,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산·학·연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수를 1위국 대비 2010년도 0.51에서 2016년도 0.70로 제고하며, 셋째, 국제공동연구 비 비중을 2010년도 6.7%에서 2016년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①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기술혁신의 토대가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실현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개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결과가 많이 창출되는 20~30대의 젊은 신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및 연구기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창의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고수익형(High Risk-High Return) 연구확대 및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력 중심의 기초연구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계획서 중심에서 연구성과, 평판 등 역량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계획서 작성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시 논문의 피인용도, 제재 저널의 영향력 지수, 기술이전 실적, 기술료 수입 등의 지표로 질적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지재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 참여자에 대해 부처별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의무 교육대상 기준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콘텐츠 창조분야의 전문가(멘토)와 창의인재(멘티) 간 도제식 숙련과정을 지원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 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국내·외 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예비 방송인력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드라마프로듀서 스쿨」 및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등 콘텐츠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게임·영상 등 콘텐츠 관련 국내대학 계약학과 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분야 '1인 창조 기업'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등 창작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저변확대 및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하여 아시아 스토리텔링 관련 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스토리 공모·개발 및 스토리텔러 간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대학 창작학과 등 어문계열 학과의 스토리텔링 전문학과 커리큘럼 개발 및 인증, 멘토, 창작활동 등으로 개편 지원하는 등 대학 내 스토리텔링 전문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방송콘텐츠 제작자 및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② 개방형 연구개발 및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 촉진

개방형 연구개발 등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2월 수립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지속적인 보완·발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미래기술을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해결책(아이디어)을 제시하는 Idea Contest를 통한 공모형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천기술 분야,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공동 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국제협력연구 지식재산권의 공개와 귀속 및 활용, 기술료 징수, 사업비 정산 등 범부처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운영규정 제정 추진과 아울러 지식재산권 관리자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지식재산권 소유문제, 기술료 납부, 표준계약서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 인력의 전략적 유치·활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 분야 또는 취약분야의 해외 석좌급 및 신진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다원적 해외 고급두뇌 활용 촉진을 위해 신진과학

자, 친한(親韓) 외국인 등을 포함한 해외의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 재외동포 및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활용,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화 인력 교류·활용 지원 및 국제적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연구자 간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등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은 높은 지식재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관리 역량이 미흡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연구자는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지식재산 전략·자본·인력이 부족하여 대기업과의 지식재산 격차가 심화되는 실정이며, 특히 출원 상위 50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평균 특허 출원건수(2005년)는 대기업이 93.8건으로 중소기업(2.24건)의 42배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고도화를 위해 2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확산 전담인력 중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 평가사 등 전문가 확보율을 17%(2010년)→30%(2016년)로 제고하고, 둘째, 특히, 실용신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전담인력 보유 기업 비율도 27.4%(2010년)→40%(2016년)로 제고하고자 한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의 관련 규정은 60%, 특허분석 및 평가 관련 규정은 26.7%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공연구기관 내 「IP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IP자산 평가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 중심으로 관리하고 IP유지·관리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또한 기관별로 특히 심의(출원·포기판단), 특히 분석평가 등 특허의 질적 관리를 위해 규정을 새로 마련하거나 기준 규정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재산 부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D 기획, 관리,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IP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TLO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별, 업무별(변리사, 기술거래사, 가치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민간기업 출신의 지재권 전문가, 표준 전문가의 적극적 영입을 유도하고, TLO 등 관리자를 위한 사업별·기술분야별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부서 간 협력 촉진을 위해 산·학·연 지식재산 관련 조직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기술이전 노하우, 성공사례 공유, 보유 기술 간 교류·융합을 확대할 것이다.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개선을 위해서 연구자 개인평가에 있어 기관의 특허역량과 연계된 전략적 업적평가 모델을 도입하여 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보유역량을 진단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업적평가에 특허·기술이전 비중을 탄력 적용하는 평가모델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기관평가는 획일적·양적 산출지표(output)에서 기관의 역량 고려, 질적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경영 수준과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후 기관평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기관장의 지식재산경영 의지·노력에 관한 사항을 기관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의 핵심·원천특허 창출 역량 강화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한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 지원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활용 및 지재권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지재권 경영전략, 분쟁 대응 지원 등 애로사항의 현장 해결 및 전략 수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비용, 관리단계에서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및 맞춤형 지재권 관리자(PM) 지원, 사업화단계에서 시작품·시뮬레이션 제작 비용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생명공학·나노·우주항공·환경에너지·문화 기술분야와 차세대 콘텐츠분야 등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품·소재 핵심원천특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R&D현장에 지재권 전문가를 파견,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획득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지재권 창출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보호’ 분야

(1)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최근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 조사 의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735건에서 2010년 1만3,877건으로 4년 사이에 19배나 증가(특허청 통계)하였다. 1인당 평균 심사처리건수(2010년)는 우리나라 232건, 미국 76건, EPO 46건(특허청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사인력 부족으로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심사품질제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재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선진 각국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도 심사환경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심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권리의 조기 활용을 위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한편, 저작권 등록의 경우 형식심사 원칙으로 인한 제3자의 저작권 허위등록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저작권의 중복 등록 및 유사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신속한 저작물 허위등록 판별이 곤란하고 전문심사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중복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중복보호에 따라 권리 간 충돌 가능성 등의 혼란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디자인과 타인의 디자인을 이용하는 저작물을 혼란 없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고품질 심사·등록서비스 제공, 저작권 허위 등록 방지 및 저작권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저작권 등록제도의 안정성 제고 등 2가지 성과목표와 6가지 관리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지식재산 양적 성장 및 고품질 특허 심사 요구로 심사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 권리화 절차가 필요한 지식재산의 경우 권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고품질 심사 및 적정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하여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와 한정된 심사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심사에 활용하는 열린심사제도(CPR : Community Patent Review) 도입,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심사환경 구축, 지능형 선행기술 검색 등 편의기능 지원으로 심사 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심사환경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에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맞춤형 3-Tracks 심사서비스 내실화,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상표 · 디자인의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운영개선 등 고객 맞춤형 심사처리제도 지속 개발 및 내실화 추진, 명세서 품질 제고, 디자인 등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서류제출의 형식적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품질 관리 및 심사처리 기간의 선진화를 위해서 특히의 경우 관점별 심사평가방식 등 다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심사품질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심사품질 고도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상표 ·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자가 품질진단 · 책임제를 통한 심사품질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분야 맞춤형 ·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협의심사제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심사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출원인의 안정적인 권리확보 지원을 위해 진보성 등 주요 심사기준을 적절히 설정하고, 심사-심판에서의 판단기준도 균형을 꾀하고 있다.

IP5 등 국제특허 심사협력 확대, 양자 · 다자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확대, 상표 · 디자인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PLT 등 국제법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 개선 등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응한 국제적인 심사협력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② 저작권 등록 안정성 제고

저작권의 고의적인 허위등록 사례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적 절차 및 등록시스템 보완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저작권 등록 안정성 제고’를 주요 관리과제로 선정하였다.

저작권 허위등록 방지를 위해 명백한 저작권 허위 등록 시 행정청에 의해 직권발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저작권 등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등록전문관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저작권 등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등록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등록 저작물의 안정적 보관 및 등록 저작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된 저작물의 DB 및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저작물 비교 ·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작물의 중복 등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이중보호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응용미술저작물 등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의해 중복으로 보호받는 방식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 분석 및 제도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이중보호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며, 중복보호가 불필요한 사례를 정리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선행 저작물을 모방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강화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등록 저작물의 DB · 아카이빙 추진 계획〉

연도	2008~2010	2011	2012	2013	2014
저작물	프로그램 (11만8,000여 건)	미술 · 사진 (3만6,000건)	음악 · 어문 (3만6,000건)	영상 · 어문 (3만6,000건)	기타 (1만5,000건)

(2) 지식재산 보호수준의 선진화

지식재산의 불법유통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지식재산 침해의 심각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향후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 · 기기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법복제 등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 유통환경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홈 환경으로 확대되고 있어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저작권 침해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라이선스 위반 침해도 증가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산업이 글로벌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기술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지식재산 수사 전문인력의 질적 · 양적 확충이 시급

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 유통방지 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문화 조성’,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산업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기반 공고화’의 4가지 성과목표와 9가지 관리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유통 방지체계구축

온라인 불법 유통방지를 위해 불법 저작물 유통 시 처벌 강화,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 책임 범위 명확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2012년 5월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불법 유통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신 저작물 등의 불법유통을 즉각 발견,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저작권 상시 보호 체계를 확대·운영하는 한편, 불법 저작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 : Illegal Copyright Obstruction Program)의 운영 및 모바일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24시간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시스템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기, n-스크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보호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 및 특징점 DB 추출 공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의 기술적 조치도 지원이 필요하다.

②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문화 조성

2010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로 세계 평균(42%) 이하로 낮아졌으나, OECD 평균(36%)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컨설팅 수행을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유도로 저작권 침해국가에서 보호국가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ZERO를 목표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마련 등 공공부분 소프트웨어 관리능력 향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전국 지자체 산하 IT, CT 관련 지역 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공공 기관 등에 대해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제공, 권역별 소프트웨어 컨설팅 순회 설명

회 개최,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제공용 어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통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컨설팅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창작자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정보를 예치해두는 제도인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활성화하며, 소프트웨어 임치서비스 사용편의를 위해 온라인 소프트웨어 임치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임치서비스를 저작권등록, 분쟁조정, 알선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전반적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업 관리자 등 관련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 주요 일간지,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문화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아울러 최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해외동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시스템(OLIS : Open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www.olis.or.kr) 기능을 고도화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라이선스 관련 정보 등 유형별 DB¹³⁾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2010년 12월 기준 1,130만건 구축) 한글화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침해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¹⁴⁾(OSS CodeEye)의 기능 개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③ 지식재산 보호집행력 강화

향후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저작권의 경우 현재 5대 광역권 기준으로 설치·운영 중인 저작권 경찰에 대한 인력 증원 및 거점지역

1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및 개발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개요, 버전, 라이선스 유형, 개발 언어, 개발 및 실행환경, 제공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구축한다.

14)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 구축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유형별 DB와 비교·검사하여 라이선스 침해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을 확대할 예정이며, 상표권의 경우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체계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해 위조상품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별도의 수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서울, 부산 등 단속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습·고질적인 침해행위 및 빈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사범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기획수사, 계절별 유행상품에 대한 테마단속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유관부처 정보공유, 중점 단속대상 결정, 단속계획 수립 등 수사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집행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대검찰청 주관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특별집중단속 실시 등에 대하여 협의하며, 특사경 운영부처에서는 지재권 단속 강화를 위한 별도의 분야별 집중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위한 수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사경 및 단속인력의 수사·지재권 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재권 분야별 전문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첨단화된 지식재산침해에 대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¹⁵⁾ 능력을 강화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최첨단 기술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범죄 수사기법 연구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침해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수사 시스템을 확대 운영·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저작권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표준화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감정의 객관적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도구를 개발하는 등 저작권 감정능력을 확대 배양하고, 분야별 저작물 감정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를 위해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상표권, 저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IPIM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를 개선

15)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된 디지털 침해증거를 조사 및 분석한다.

하여 침해물품의 적발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침해가 빈번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식재산침해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신고업무와 침해단속 업무보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침해단속 보조업무(혐의 물품 분류, 감정보조 등)의 민간위탁으로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④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기반의 공고화

산업기술 등 보안 역량을 확보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 관리방안, 영업비밀 유출대응에 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별·지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실시, 관련 워크숍 등 특강추진 및 지재권·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의 보호 교육에 특화된 '산업보안 특성화 대학' 육성 및 산업보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보안 전문인력양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활동으로 대국민 의식 확산을 위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업, 대학, 일반인 등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보안 컨퍼런스 개최, 산업보안 논문공모전 개최 및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안 분야 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한 Job Fair 및 On-line Job Center를 운영하고자 한다.

사전 보호를 위한 제조·금융 등 기업의 유형이나 니즈에 맞춘 찾아가는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컨설팅을 수행하고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유출에 따른 대응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국가적 중대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처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수사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기술 유출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영업비밀에 대한 실제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영업비밀 생성(존재) 시점 및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시스템(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부·공공기관 계약 및 재판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3)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우리 지식재산의 경쟁력 상승 및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재권 보호의식 낮은 개도국에서의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지역 분포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72.5%로 가장 높고 동남아(12.5%), 북미(12.5%)순이며(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산업재산권 침해의 지역별 분포는 중국(58.3%), 대만(5.6%), 미국(5.6%)으로 조사(특허청, 2010년)된 바 있다. 또한 저작물 시장 침해율 감소(2010년 19.2%로 전년 대비 2.4% 감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침해는 확대(83%) 추세이며 음악(51%), 영화(29%) 등 주요 분야 합법시장 침해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현지 정보부족 등으로 침해예방 활동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재권 집행의 속지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세계 각국의 지재권 보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의 2가지 성과목표와 5가지 관리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해외 지재권 침해 실태 조사 및 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해외 지재권 분쟁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별·산업별로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수요를 파악하고, 수출 시 특허분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재권의 세계 동향, NPEs 활동 동향, 주요 분쟁 및 이슈, 각국의 보호제도 및 대리인 정보, 침해실태 현황 등 관련 최신정보를 관련 지재재산 관련 유관기관 웹사이트에 제공·공유하는 한편, 해외 각국의 지재권 법제·정책 및 분쟁대응 전략 등을 수록한 지재권 영역별(저작권, 산재권)·국가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IP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FTA 체결에 따른 국제

지재권 분쟁 피해^[16]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17]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상대로 현지 법률·제도 소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현지 저작권보호 및 집행 기관과의 네트워크(세미나, 포럼 등)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 저작권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며, 국내 지식재산보호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를 통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상담 및 컨설팅 강화,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 우리 저작물의 해외진출 현황, 불법유통 현황조사 및 관련 동향 정보제공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물의 합법적 해외 유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저작물 해외 수출 업계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계약 체결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합법적인 해외 유통 기반 조성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해외 저작권 보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의 사전 예방 및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 인증을 통해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콘텐츠 해외진출 기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물 정품 확인 및 침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CODA(–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는 CJ(Content Japan) 마크도입 및 주요국 상표등록을 통해 불법 복제품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저작물 정품 확인 및 침해활동 대응을 위해 콘텐츠 통합 마크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권리자 단체, 해외진출 콘텐츠 업계 등 민간 중심의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 구성·설립^[18] 지원을 통해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능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구축된 네트워크에 업계 및 저작권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침해 발생 시 공동대응 가능한 민간과 정부간 긴밀히 협력하는 공식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해외

16) 한-EU FTA로 국경조치 대상에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이 포함되었고, 한-미 FTA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의약품 허가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 기재부, 관세청(국경조치) 및 복지부, 식약청(허가·특허 연계)과 함께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8)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 해외 산업재산 보호 협의체 등 정부와 민간의 공식 협력채널 구축 및 지재권 침해 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협회·학회와 민간보호협의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실시간 지역별 지식재산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침해 국가별 관련 분쟁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해외지식 재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나가는 한편, 산업별·제품별 해외 지재권 분쟁 및 기업의 대응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성공·실패의 원인을 추출·전파하여 기업의 분쟁 대응역량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을 위한 특허관리전담조직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지식재산경영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특허관리전담조직의 분쟁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컨설팅)를 통하여 IP 교육·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다.

②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재외공관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2011년 기준 중국 5개소, 베트남 1개소를 운영 중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IP-DESK)를 2012년 미국에 1개소 추가 설치하여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밀착형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IP-DESK 설치 전단계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거나 지재권 분쟁이 많은 국가에 상담 중심 HELP-DESK의 임시 설치를 추진하고 피침해 빈발 특정 업종·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중국 등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피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지원을 위한 '기획침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에 점진적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 추진하고 외교관 신분인 특허관 파견 전까지 사전단계로 신흥시장 등에 '지재권 전문가' 추가 파견, 지재권 수요가 많은 독일(2010년 8대 교역상대국) 및 신흥시장인 브라질(2009년, 경제규모 8위)·인도(2009년, 경제규모 11위) 등에 특허관 추가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까지 진출하고 있는 한류 관련 저작물 보호를 위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저작권센터를 확충하는 등 해외 거점 확보 및 기능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 저작물의 현지 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저작물 유통 금지 및 침해 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재권 소송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 운용사 확대를 통한 보험료 인하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동아시아 국가 간 저작권 보호 및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저작권 대체적 분쟁해결(ADR) 협의체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민간단체 간 저작권 공동협력체계로서, 민간 중심의 디지털 저작권 아시안 네트워크(DCAN : 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국가 간 협력강화, 해외 공동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외 국가의 지재권 담당공무원 초청 등을 통해 실무 수준의 지재권 보호협력을 강화하고 인터폴·WIPO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우리의 지재권 보호강화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지재권 침해사건에서 권리자에 대한 낮은 배상액 판결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소송제기와 소송지연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위해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는 언론이나 국회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침해소송은 증가와 동시에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법연감(2010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2007년 101건, 2008년 110건, 2010년 25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킴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대법원), 폼팩터vs파이컴(대법원)의 특허 침해소송은 각각 11년 8개월, 5년이 소요되는 등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소송을 통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 및 관할 복잡성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지재권 소송의 신속성 및 전문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정비를 통한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재

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산업재산권 심판의 신속성 및 품질 고도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의 3가지 성과목표와 6가지 관리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지재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소송제도 개선을 통한 지재권 소송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손해 전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제출, 손해 규모의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침해 재발 방지에 미흡한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실손실 등 지재권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검토, 소송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증거조사 제도의 개선,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실시료 통계기준 작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작권 침해 권리구제를 형사 중심에서 민사 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소송당사자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승소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허위소송(Sham Litigation) 등의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제기 및 소송지연으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송법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특허소송 관할집중 등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신속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은 동일 특허권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전문성이 미흡하므로 신속·전문화된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관할집중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각종 사례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연구결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의 필요성 및 효과, 소송 사법체계와의 일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 명확화 방안 검토를 위해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대리인 책임 명확화 방안 및 대리인 과실책임에 대한 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허성 판단기준 조화 논의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특허청) 특허 무효율 등의 통계자료를 심사·심판·재판 주체들 간에 공유

하고 특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특허청과 사법부, 전문가 간 특허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의견교환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② 산업재산 심판의 신속성 제고 및 품질 고도화

세계 수준의 심판처리기간 달성을 위해 장·단기 심판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고객맞춤형 심판처리제도의 신속 심판(4개월)·우선심판(6개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판청구 증가에 대응하여 심판관을 증원(5년간 40명)하여 심판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간 심판사건에서 구술 심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구술심리 모니터링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법원이 심결취소한 사건의 심판품질위원회가 분석·평가함으로써 심판관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교육을 강화하고, 심판 경력, 성과 등에 따라 심판관 등급을 일반·선임·수석으로 구분, 능력제에 따라 목표치 및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는 심판관 등급제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③ 재판 외 분쟁해결 활성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재권 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술별·전문분야별 조정위원 및 연구, 분석, 조정지원 등을 전담하는 인력 확보를 추진하며, 특허상담센터 수행사업(산재권 상담, 지방순회 상담, 소송비용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분쟁조정수요 발굴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수행사업(심판·소송 대리 지원)과 연계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지원 시 조정이 적합한 사건은 심판·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권고하여 조정신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쟁 당사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방 순회조정부’의 확대 운영, 거점지역 조정 지부 설립 및 ‘온라인 분쟁 조정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별 분쟁의 사실관계 및 해당 콘텐츠 산업계 특성 등을 고려한 분야별 전담 연구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지방 저작권 상담과 연계 및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재권 분쟁의 소송비용 절감 및 관계 당사자 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저작권·산재권별 기관 중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며 중재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기존 중재기관과의 연계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3. '활용' 분야

(1)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R&D 투자규모, 특허건수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성과의 이전·사업화 역량과 활용성과가 낮아서 R&D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미국은 4.32%(2010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 1.48%(2010년)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역량과 이에 대한 지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위해 정부가 구축한 온라인 거래시스템·DB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21.3%(2010년)라는 특허청의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2010년) 결과에서 보듯, 지식재산 유통 정보 시스템 간 연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활용이 저조하고, 민간의 상업화 수요에 의해 국유특허 및 공유저작물 활성화 여건이 미성숙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수익창출체계 고도화를 위해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 개인·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등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상업적 이용 확대'의 3가지 성과목표와 6가지 관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2010년도 1.48%에서 2016년도 3.4%까지 높이고자 한다. 둘째, 기업의 온라인 거래시스템·DB 활용률을 2010년 21.3%에서 2016년도 35%로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저작권 정보관리 규모를 2010년 182만건에서 2016

년도 800만건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넷째,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수를 2010년 108개 기업에서 2016년도 800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① 연구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지식재산을 이전하거나 성과 확산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성과확산 전담기구(TLO)의 사업화 역량강화'와 '지식재산 유통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선도 TLO와 취약 TLO 간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선도 TLO의 경우 TLO가 주도하는 R&BD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취약 TLO의 경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기술료 배분 정착 등 우수인력 유치 촉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지식재산 이전·거래 이후에도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현황·기술료 징수과정의 애로요인 파악 등 사후 점검시스템을 강화하고 추가 기술개발 지원과 같은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식재산의 거래와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부, 지경부, 특허청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유통망을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각 정보 유통채널 상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다양한 시장주체들이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의 경우 체계적인 저작권 정보제공을 통해 저작권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를 확대발전시켜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②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지식재산에 기반한 신기술 창업 및 지식재산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과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지원체계 확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 관리과제로 선정하였다.

먼저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술사업화 기업설립을 확대하고, 체계적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정책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선도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발굴하고,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처 간 협의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교수 및 연구원의 경우 추가 기술개발 지원이나 겸직·휴직 대상 확대 등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창업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화,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시작품 제작이나 제품 홍보지원 등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확대와 함께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창업 및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권 권리취득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등 해외 권리확보를 통한 수출기반 구축을 유도하고, 특허청의 글로벌 특허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유망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수출 마케팅 지원도 추진한다.

③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상업적 이용 확대

공공·공유 지식재산에 대한 민간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통해 관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 및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기관 저작물을 개방하고,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보유 공공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요자—공급자 간 공공정보 증개를 위한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민간개방 대상 공공 저작물 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종합적인 관리 및 원스톱 이용을 위한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저작권 나눔 활성화를 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의 명칭은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며, 마크의 유형에 따라 일정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공공누리 표시 도안 및 유형〉



(2)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식재산 전문관리회사(NPE, 속칭 특허괴물) 등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제는 우리도 이를 활용하여 특허소송, 라이선싱, 지식재산 유동화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진화시키는 전략적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진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창의자본, 지식재산 신탁 등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인프라로 작동하는 '가치평가 시장의 다변화 유도', 특허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의 3가지 성과목표와 9가지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창의자본을 2010년도 300억원에서 2016년도 5,000억원까지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신탁 이전건수를 2010년 11건에서 2016년도 150건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가치평가 시장 규모를 2010년 380억원에서 2016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①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적 구현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진화를 견인할 것이다.

우선 2010년 조성된 민관 합동 창의자본(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 이하 ID))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것이다. 방어형, 소송대행형, 전략 컨설팅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민간 주도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2011년 말에 확보한 500억원의 자본금(정부재원 333억원, 자체재원 167억원)을 기반으로 2012년 상반기 현

재 700여 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매입한 특허를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의 선진화를 이끄는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K-POP, 한류열풍 등 온라인 음악·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해 주고 그 사용료를 수령하여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단체는 다수 저작자의 다양한 저작물을 집중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최근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 신뢰도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그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리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선택범위 선택제를 제도화하는 등의 운영개선을 통한 집중관리 효과 제고가 필요하다.

반면,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축적된 미활용특허의 집중관리를 위해 2008년에 도입된 기술신탁 관리제도는 저작권 분야와 달리 그 활용이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기술신탁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침해소송의 제기·방어를 대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신탁자산 기반으로 보강된 포트폴리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개발하는 등 신탁관리업 수탁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기관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 확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시장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성과물의 이전·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 지식재산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수출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정과 수출 제한에 따른 합리적 보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2012년 상반기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 및 수익 모델별 성공 사례를 분석·적용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가치평가 시장의 다변화 유도

IP·기술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거래·금융·소송·감정 등에 활용되는 기초 인프라로 지식재산의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와 같다. 그러나 공공·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동 시장이 형성되었고, 기술 가치평가 결과나 평가기관·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해 대외적인 신뢰가 축적되지 못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가치평가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평가시스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민간 주도형 가치평가시장 활성화',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특허청과 협동으로 「IP·기술 가치평가 현황과 이슈」포럼을 개최하여 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장을 마련하였다. 동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해 오던 전문가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동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IP·기술 가치평가 현황과 이슈 포럼(2012.5.3)〉



지식재산 진흥관 격려사



패널 토론

또한 금융기관, 지식재산 이전·거래 기업, 특허전문관리회사 등 수요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 가치평가 니즈를 파악한 후 수요에 기반한 분야별·목적별 가치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의 경우 문화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수요가 대부분 완성 저작물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이 목적이라고 볼 때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인프라, 콘텐츠 경쟁력, 콘텐츠 성공 가능성 기반의 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고, 방송·영화·게임 등 콘텐츠 장르별로 특화된 평가모델이 투자·융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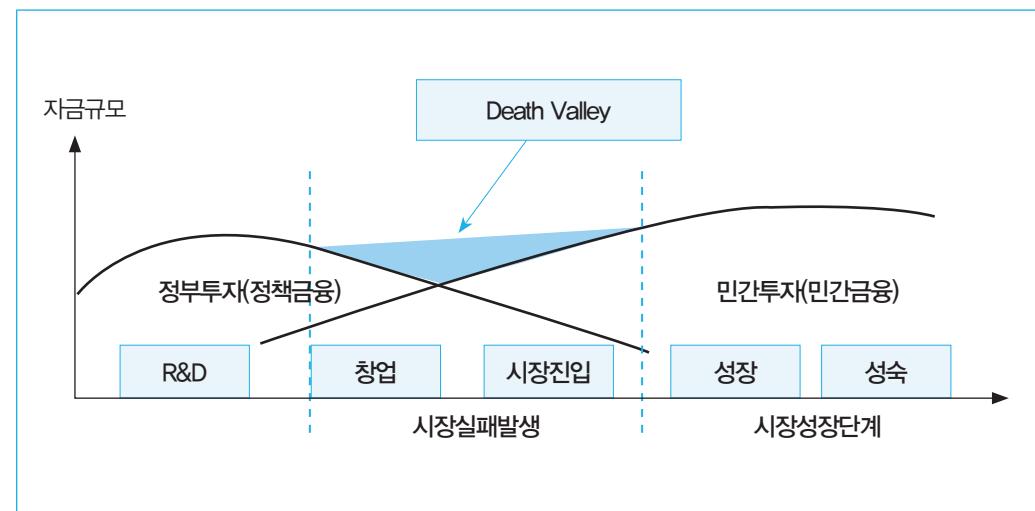
정부 주도로 가치평가시장이 형성·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여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인력의 역량 강화, 민간 평가기관 지정 확대, 민간평가기관의 시장점유율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 지정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 도입된 IFRS(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 국제회계기준)는 기업 보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결과가 축적되어야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수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평가시장의 주요 인프라로서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이 있다. 이는 국내 등록특허를 기술성·권리성·시장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신속하게 평가(9등급)하는 특허자동평가 시스템(<http://smart/kipa.org>)이다. 동 인프라는 평가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분석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 특허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연계하는 등 성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켜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③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중기청, 2005년), 기술금융 활성화 실행 계획(지경부, 2008년), 녹색투자촉진 자금유입 원활화(녹색위, 2009년 7월), 신성장동력 금융강화(기재부, 2011년 4월) 등 벤처·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사업화를 위한 금융제도 환경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즉, 기술창업·초기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금 수급의 갭(Death Valley)’을 메우기에는 민간의 금융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융자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기술발전 단계별 지원자금 규모와 Death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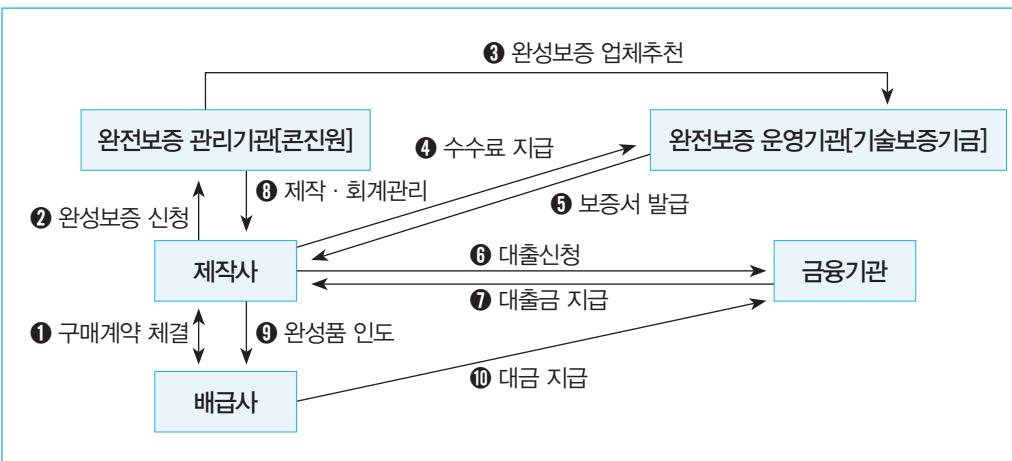


우리나라 기술금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평가보증제도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고액 보증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창업 및 초기 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은 확대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기술평가기관의 기술력 등급 평가 결과를 투자·용자 상품에 접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평가 결과와 연계된 금융상품의 운용 실적 정보를 축적·공개하여 기술평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펀드 투자규모를 집중 확대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공급자와 정부는 대출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이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사업화자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특허거래시장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정보 이용 확대를 통해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민간자금의 자생적 유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 및 이행을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제도인 완성보증제도는 지원받는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사에 인도하는 것을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면 금융기관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제도다. 2009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었으며, 2010년도 말에는 2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168억원의 완성보증을 확정하였다.

〈완성보증제도 개념도〉



이러한 완성보증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완성보증관리기관(콘텐츠진흥원)과 운영기관(기술보증기금)이 제작과정에서 자금 및 공정의 관리 · 감독 역할 강화로 제작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제도를 활성화시켜 콘텐츠산업의 투 · 융자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 및 제작관리의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 SPC란 명목회사로서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프로젝트가 완성 · 종료되면 함께 해체되는 회사를 말한다.

(3)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을 활용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조사 · 분석, 평가, 교육, 번역, 거래, 컨설팅,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 즉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3,377억원으로 일본의 1/4로 영세한 편이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역량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서비스 고품질화 기반조성, 경영 · 사업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활성화’, 시험인증을 비롯한 ‘사업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3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7개의 관리과제를 선정 ·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 규모를 2010년도 3,400억원에서 2016년도 5,000억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지식재산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여야 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종합적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정책수립 근거가 부족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독자적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백서 발간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및 육성방안 수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기본법」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문인력,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일본은 현재 지식재산 관리(1~3급), 지식재산번역(1~3급) 등에서 검정제도를 도입 · 운영 중이다. 우리도 이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서비스 능력시험제도 및 지식재산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지식재산서비스 대가의 적정화를 유도하여 지식재산서비스의 고품질화 기반구축을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②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활성화

다양한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활용전략의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국내의 경우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및 시장 자체가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초기에는 정책적으로 관련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국가 R&D 특허기술 동향 조사 실시 과제 확대, 산 · 학 · 연 맞춤형 IP-R&D 연계전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특허정보조사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사업 확대, 기술거래를 위한 온라인 마켓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창출과 투자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지식재산 가공데이터 보급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서비스 필요 기

업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할 수 있는 DB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수요-공급 간 연계를 강화하여 민간이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를 지식재산 활용전략에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사업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뿐 아니라 금융, 시험인증, 생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향후 블루오션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사업화 전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 시험인증기관의 단계적 영리법인화 추진을 검토하고, 인증기관의 해외시험 분소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인증에 활용되는 민간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 또는 증명표장과 같은 지식재산권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수 분야 전문 연구대행 조직(CRO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및 필요한 시제품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전문 생산대행조직(CMO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을 육성·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임상 CRO 육성 및 관련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화의 전(全) 단계를 헤쳐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현재는 기술기획부터 금융까지 사업화 단계별로 기술거래기관, 벤처캐피탈, 컨설팅회사 등이 각각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업무역량을 확보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신뢰 기반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소

기업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대기업에 탈취·유용되지 않고, 자율적 동반성장이 가능한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시장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질서를 저해하거나 후속혁신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확립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건전한 지식재산 활용확대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 강화’의 2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아래 4가지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임차건수를 2010년도 453건에서 2016년도 1만건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수를 2010년 165개에서 2016년도 200개로 높이고자 한다.

①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탈취·유용방지 및 자율적 동반성장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은 민간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촉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다. 지식재산 탈취·유용의 경우 주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요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탈취·유용행위 예방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정기적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로 다스림으로써 지식재산 공정거래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지식재산 탈취·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는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 후 분쟁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기업의 도산·폐업 시 협력기업의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는 지식재산의 활용에 있어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협력이 서로에게 원-원(win-win)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때 효과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상호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약제도이다. 2007년에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말 체결기업이 100개사를 넘어서며 동반성장문화가 점차적으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의 신제품개발·공동연구개발·특허기술이전 등 기술지원과 기술자료임차·공동특허권 취득 등 기술보호에 대한 성과홍보와 이행평가를 통해 기술협력의 성실이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 강화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시정경험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규율강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으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이나 창작활동 자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기반을 조성하며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료제약 및 IT 산업 분야 등 지재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수립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경쟁당국분과회의(WIPO : Roundtable on IP and Competition Policy)와 같은 경쟁당국 간 국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남용행위가 예측되는 특정 분야의 경우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품 분야의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예방 및 피소대응을 위해 관련 국내외 분쟁소송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재권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남용행위 예방과 자율시정을 촉진한다. 또한 저작권상생협의체 등과 같이 권리자 단체,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 '기반' 분야

(1)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① 추진배경 및 현황·문제점

지식재산의 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및 친(親)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비율을 46.4%(2010년)에서 65%(2016년)로 높이며,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및 디자인 등)의 연간 전체 출원건수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출원건수 비율을 상승시켜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창출비율을 18.7%(2010년)에서 21.8%(2016년)로 상승시켜 지식재산 존중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보호·존중의 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중국은 짹퉁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단속을 추진할 것을 발표(2010년 10월)하였으며, 일본은 무료 자료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유통시킨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2010년 10월)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낮아 불법복제 등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타인의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 문화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2010년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의 경우 2조원을 넘어섰고,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5조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민 인식 수준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추진 중이나, 체계성 부족으로 대국민 파급력을 갖기에는 여전히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산·학 공동연구 시 협약체결 관행 등 지식재산 창출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하여 창의력 발현 유인이 적고,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인 지식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보상을 규정하고 직무발명 보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 및 보상은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하여 발명자·창작자의 지식재산 활동을 장려하고, 특히 및 저작물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정착됨으로써 지식재산사회 기반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조성,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② 세부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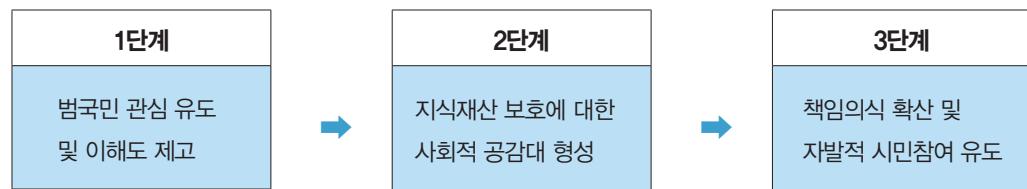
가.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첫째,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교육 및 친(親) 지식재산 환경조성을 통한 대국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 소양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불법 복제물·위조 상품 구매 방지 등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생활 밀착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침해방지 이외에 발명·창작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발명·창작자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물리적 접근도 중요한바, 교육시설 및 체험공간의 확충·개선, 원격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이 지식재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친(親) 지식재산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강좌', '저작권 문화학교', '찾아가는 교육' 등 집합 교육 개설 및 무료 컨설팅 실시 등을 발전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지식재산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국제지식연수원의 e-러닝 교육, 시·도 교육청의 발명교실, 지식재산센터 등의 운영으로 교육 접근성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지식재산 홍보전략 T/F를 구성하여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 추진 중인 홍보사업들을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보유 매체를 통합 활용하여 OSMU(One Source Multi Use) 홍보·주요언

론 광고·기고·기획시리즈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기업·언론 등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를 통하여 체감도·공감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단계별 지식재산 홍보 계획〉



셋째, 지식재산인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인에 대한 높아진 대우는 곧 다음 세대가 지식재산 인재가 되길 바라는 선순환적 피드백을 낳는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대학원생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비 장학금(fellowship) 제도를 도입·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활동성과를 내는 '최고지식재산인' 및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비·창작비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식재산인의 정책 참여 및 사회적 기여 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대상 강연, 간담회, 지식재산 관련 정책 결정 시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인의 사회적 기여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나.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발명자·창작자에 대한 정당 보상 및 공동연구 관련 협약체결 관행을 개선토록 할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식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제도 편람, 판례 배포 및 우수운영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또한 기업특성과 교육대상자에 맞는 직무발명제도의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며,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운영사례 조사·분석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확인서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정부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둘째, 정당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저작권 이용 시 정당한 지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특히 당해 법령과 관련, 현행법상 해당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용 음반·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가능(『저작권법』 제29조)한 공연료 지불 범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토록 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비영리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규정하여 저작물 공정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 분야의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경쟁 및 지재권 분쟁, 기술 융·복합 추세 확산 등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가 절실하나,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지식재산 소유권 및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등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로 그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합리적인 공동연구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실시에 따른 정당한 수익배분 등을 위해 산업체, 학계, 연구계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청회 등 광범위한 산·학·연 의견 수렴 및 조정으로 2012년 12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공정한 산·학·연 협력연구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의 보급 및 확산 노력과 아울러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학·연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통해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연구 협약주체 보호 및 지원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양극화(IP Divide)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평한 지식재산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첫째, 접근성의 확대는 곧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취약지역·계층

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지역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지식재산 상담·교육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자원의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 지식재산권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농업분야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원비용, 변리서비스 등 지식재산 창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경제적 약자가 우수한 기술을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며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 자문·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장애인·학생·노인·소기업 등은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록, 배타적발행권 등록 시 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경제적 약자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판·소송, 상담 등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여 공익변리사가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심판·소송 직접 대리, 비용 지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제작, 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며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시작품 제작비용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2)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① 추진배경 및 현황·문제점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 강화는 지식재산 활동의 고도화·효율화로 직결된다. 지식재산 인력은 창출인력(발명자, 창작자, 저작자 등), 법조인력(변호사, 변리사 등), 서비스인력(정보 분석·번역, 거래·컨설팅 등), 교육인력(발명교사, 저작권 강사, 지식재산권 교수 등), 실무인력(기업 전담부서, 산학협력단 등), 저작권 전문인력(현장전문인력)이 포함되는 광대한 범위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세계

는 현재 지식재산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예로 중국은 지식재산 전문가·학자·관료의 확보를 위한 ‘百·千·萬 지식재산 인재공정’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한 바 있으며, 일본 역시 지난 2006년 1월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식재산 인력양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관리회사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제기한 특허 소송에 있어 삼성전자가 51건으로 7위, LG전자가 46건으로 9위라는 통계처럼 최근 해외 기업의 특허공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수지식재산을 창출·경영하고 지식재산 분쟁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구글, MS, GE 등 세계 주요 기업은 우수 기술 발명의 원천인 지식재산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에 발명 등 지식재산 교육(전 주기적) 강화, 국제 특허분쟁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동력인 지식재산인력에 대한 수급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인력 육성·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이 부재하다. 따라서 수급조사에 따른 현황파악, 미래예측, 문제점 분석 등을 기반으로 인력 양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② 세부 추진계획

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강화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수급현황 및 전망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 인력 수급의 대상별·기간별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인력양성 방향 설정이 필요한바, 지식재산인력 양성책, 인프라 확충 등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기본계획에 도입 가능한 요소를 파악하고 인력 양성·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간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방향인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2012년 12월 수립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교육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교원의 인력양성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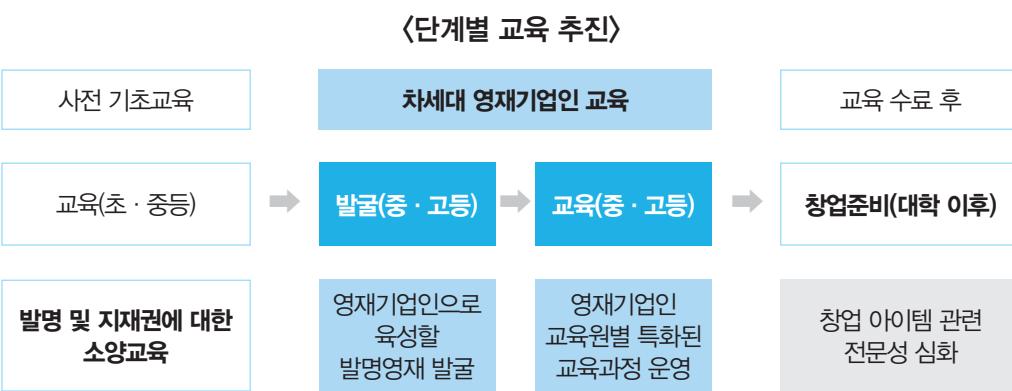
지식재산에까지 도달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는바, 초·중·고등 지식재산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초·중·고 교원 육성을 위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창의발명’ 및 ‘저작권 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사 직무연수 확대 및 저작권 강사 양성 및 발명교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반교사와 차별화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발명대회 수상 등의 성과를 승진·보상체계에 연계·강화하여 발명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수양성 및 충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교수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 및 지식재산권 강좌 개설을 위해 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교육인원을 259명(2010년)→300명(2011년)→500명(2015년)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더불어 현장의 경험과 학계 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현장의 지식을 대학 지식재산 교육에 접목하기 위하여 변리사·변호사 및 산업체 등 외부 지식재산 전문가의 활용을 확대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이공계 교수 임용 시 기업 등의 지식재산 관련 경력 우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지식재산 전문교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강사·전문가 풀을 구성하며, 아울러 지식재산 관련 교수·학습법 및 교수자료를 개발·공급하여 나갈 것이다.

나. 창조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지식재산 창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명·창작인재 양성 및 연구 인력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창의적 발명·창작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중·고교의 발명교육 등 창의성 중심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 교과에 발명 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며 중학교의 경우 기술·가정 교과를 통한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공학 기술 교과를 통한 발명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명교실 및 저작권 체험 교실 운영을 지원하며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교재, 동영상 콘텐츠 등) 제작·보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저작권 교육의 경우 초·중·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과목 중심으로 창작 활동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올바른 저작권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내용 반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마인드 소양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공학계열뿐 아니라 의약·바이오·디자인·경영·문화예술·인문계열 등 관련 대학(원)에 지식재산권 강좌 개설을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에 ‘특허에 강한 실무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산·학 간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R&D 선도 가능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또는 부전공과정 등 교육 과정 설치·확대를 유도해 나가며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육성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2012년 3개 → 2015년 18개). 더불어 교원업적 평가를 통한 객관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문·특허 수 이외에 특허청구항, 기술이전 로열티 등 기관평가 및 교원업적 평가에 지식재산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지식재산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지원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에 법조인력(변리사 및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변리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경력 변리사의 지속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 및 재교육 방안을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 분석·거래·컨설팅·번역 등 서비스 관련 단기교육과정 및 대학 강좌 개설을 지원하며, 인력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 분야 역시 특성화된 전문 인력이 중요한바, 문화·콘텐츠 산업분야별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지식재산 경영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경영층(CEO)의 지식재산경영 인식을 제고하여, 지식재산 관련 CEO 대상 포럼 및 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전반으로 CIPO(지식재산 최고책임자) 도입을 유도하며, 지식재산 정보조사·권리화·분쟁대응·전략수립 등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식재산만의 특화된 전문인력이 중요한바,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단계·수준별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지식재산 법적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쟁대응,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아웃소싱 등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 역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장기 근속한 퇴직인력을 파견하여 지식재산 창출·관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 대학–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식재산 관리의 노하우 공유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지식재산 인력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직제 개선 및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① 추진배경 및 현황·문제점

세계적 추세에 더불어 우리나라 역시 국가·산업계의 지식재산 협안대응과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해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우수한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바, 이를 위해 행정·법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 생산,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포털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실제 추진하는 중앙부처 및 관련 위원회·지자체 등과의 협력 강화로 적극적인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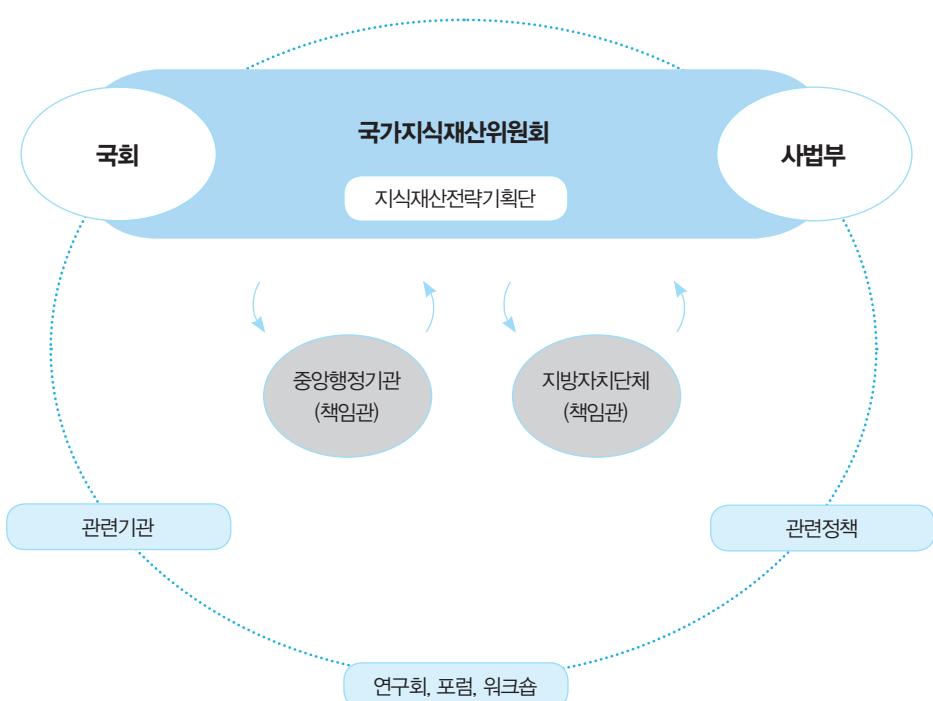
② 세부 추진계획

가.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시행

첫째,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동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가 협조하여 정비 법령을 발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간담회·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대학·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동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공·민간, 산·학·연 등을 포괄하는 유기적 정책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중앙부처·지자체 등 정부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 중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개념도〉



나.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지식 확산 및 정책 결정 효율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식재산 연구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대학·연구기관·산업계·직능단체 등의 연구 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세미나 및 포럼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며, 민간학회·세미나 등 지식재산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관련 이슈의 지속적 전파 및 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및 국내 기관 간 지식재산 공동연구의 활성화 역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연구자-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연구자-지식재산 수요기업 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공공지식재산 정보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다양한 종류의 고급정보로 가공하여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민간 지식재산정보 서비스업체를 육성하여 자금력이 약한 정보서비스 업체가 자체 DB 구축 없이도 지식정보 콘텐츠를 개발·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지식재산 정보를 민간(기업·대학·개인 등)에 유통·확산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Raw Data) 제공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국가안보,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공공 지식재산정보 DB를 공개하고자 하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DB를 추가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4)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① 추진배경 및 현황·문제점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공조의 필요성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가로 인한 특허확보 경쟁 및 기업 지식재산 활동의 전 세계적 확대에 따라 국제적 지식재산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시스템의 세계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적 조화·확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세계화·지역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매우 취

약한 실정이다.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12곳, 서울·경기를 제외한 등록 변리사 수는 전국 15.7%에 불과(2011년 8월)하다는 통계 역시 이러한 실정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 역시 주요 도시에 지재권 전담조직을 두고, 지역별 지식재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 역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실제 양자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은 정체 상태이다. 상호 출원 불인정으로 특허·상표 출원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북 저작권 중개도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내 우리 상표의 도용·유통 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남북통일 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 협력사업과 같이 지식재산 교류·협력도 양자 간 관계변화에 따라 그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여건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남북한 긴장관계→긴장완화단계→통일단계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방안 등 남북한 관계 회복 혹은 통일을 고려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안이 부재한바,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국가 간 업무협력 및 지식재산 규범형성의 요청이 증대되고 있다. 유전자원·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지구온난화에 따른 녹색기술의 개발 및 개도국 기술이전 등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국제규범 논의 및 협상에 있어 우리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 간의 일관되고 적시 대응을 위한 체계적·주도적 추진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② 세부 추진계획

가.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선진화 및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지식재산 분야의 전방위적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지식재산분야 국제규범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PCT(특허협력조약) 개혁, 특허법 국제적 조화, 마드리드 제도(국제상표제도) 개선 및 WIPO SCCR(저작권 및 인접권 상설위원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ACTA(「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CDB(「생물다양성협약」), 공중보건과 의약품 특허,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규범의 국제화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WIPO를 통해 캄보디아 저작권법 제정을 지원(2007년)한 경험이 있으며 이처럼 문화콘텐츠 다(多)진출 국가와 저작권 법·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저작권 제도·규범의 확산 및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SEAN 국가 및 중동 국가와 지식재산권 교육 및 정보화 협력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여 대(對)개도국 특허정보화 및 심사서비스 협력 확대로 우호적 대외관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WIPO,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식재산 협력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지식재산분야 국제통상협상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국제통상협상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대(對)개도국 지식재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공적 개발원사업(IP-ODA)의 확대 및 체계화를 추진하고, 최빈·개도국에 적정기술 보급 및 우수상품의 브랜드 획득 지원 확대를 위한 국내외적 업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P-ODA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연계(ODA 목록에 추가)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로 연계될 수 있는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WIPO 적정기술 경진대회, APEC 1촌(村) 1브랜드 사업 추진 등 대(對)개도국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국제기구 차원으로 확대하고, 구체적 추진 방법론을 개발·전파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 정부·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및 위탁교육 지원 등 개도국 지식재산권 인력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도국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나.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체계적인 지역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통한 법적·인적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역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을 지원하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지방으로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시책을 포함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에 지자체의 지식재산 관련 추진실적을 지자체 평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며, 인천시·원주시 등 2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2011년 8월)한바, 지역의 지식재산 법 기반 및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역 지식재산진흥조례 제정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지역 지식재산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의 단계적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식재산 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조례 제정 등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자발적·종합적 지식재산정책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도시 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경우,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강화 등 기업지원 역량제고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IP 창출·보호·활용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능 및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잠재력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IP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유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 가능성 검토, 선행기술 조사, 해외수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상담 등 현장밀착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전통산업 및 특산 품의 비중이 늘고 있으므로 전통산업(특산품)의 브랜드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특산품 및 향토자원 중 우수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획득 및 경영 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외 분쟁대응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전통식품 브랜드의 해외상표등록·침해조사·분쟁대응 협상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 지식재산제도 조화 및 보호를 위한 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여 나갈 것이다. 첫째,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연구 및 교류현황을 파악하여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류·통합과정 및 방안, 중국·대만, 중국·홍콩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법 근거 및 교류현황 분석 등 우리와 유사한 외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통합 및 협력 사례 조사를 통해 남북한 지식재산 제도의 단계적 접근방안(로드맵)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관 협의체인 「지식재산 남북협력추진협의

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민간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교류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지식재산 관련 부처 간 대북 정보 공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둘째,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협의체를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이에 남북 간 지식재산분야 의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여건 조성 시 '실용적 대북정책의 아젠다'로 지식재산 분야를 의제로 상정을 추진해 나가며, 세부합의서 채택 및 남북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간 분위기 성숙 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상호출원 인정 및 등록 보장)·협력을 구체화한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가칭)」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북 지식재산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교류·협력사업 및 상호 관심사항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5. '신지식재산' 분야

(1)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① 추진배경 및 개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지식재산권 제도로 관련 종자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WTO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채택하여 신품종 육성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품종보호를 의무화한 이후, 각국은 품종보호를 담당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등 국제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회원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도 가입하여 품종보호권 설정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각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그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의 수입대체 및 수출 확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외 경쟁력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또 품종보호제도 확대에 따라 관련 분쟁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종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을 미래 생명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육성하는 것과 함께 국내 품종보호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신품종 개발에는 장기간 투자가 소요되므로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 강화 및 실효성 증대’, ‘품종보호 체계정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의 3가지 성과목표와 10가지 관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세부 추진과제

첫째, 신품종 육종 기반을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육종 역량 강화,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육종 저변확대 및 활성화 지원, 품종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 품종 출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대외 경쟁력 있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의 육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국내 육종가·육종기업의 육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투자가 요구되는바,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 육종역량 강화를 위해 육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육종에 비하여 다양한 변이개체 선발과 세대단축이 용이한 ‘방사선육종센터’를 설립하여 민간 중소규모 종자업체의 육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복합연구센터(ARC :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석·박사인턴제 등을 통해 육종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육종기술지원센터’를 통해 DNA 마커 개발 및 분석, 병해충 검정 및 교육지원, 기술·경영 컨설팅, 신규 육종가 양성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육종 기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부터 10년간 종자수출 등 전략품종 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프로젝트인 ‘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하여 분야별 전략 품종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육종 저변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육종가 지원센터’를 통한 신품종 개발등록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교수 등 직무육성자에 대한 보상제도 현실화로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 품종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가

정보 조사·공유,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민간 자율협력기구인 ‘종자수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에이전트를 육성하며, 국제표준화에 맞춘 국내 출원 양식 개선과 함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출원절차 및 제도 안내 등을 통해 해외 출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및 조사 강화, 품종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경조치 강화, 품종판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품종보호제도의 국제적 도입 확대로 침해 분쟁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침해분쟁 대응 체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침해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조사 강화가 필요한바, 종자위원회에 직권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정제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발생 시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상담, 품종의 유사성 검정, 유전자 분석 등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가 간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종보호 침해농산물에 대해서는 통관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세관 실무자에게 필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여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 4월 발족함에 따라 미등록 종자업자의 생산·판매 및 수입 판매, 품질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품종보호 침해 대응을 위해서는 품종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바, 보호품종에 대한 표준화된 DNA DB 구축 등 유전자 분석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품종검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품종판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행정체계 정비, 품종보호 관리를 위한 품질인증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품종보호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품

종보호권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종자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品种 보호법」이 2012년 6월 분리·제정되어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품종보호제도 실시기관 간(농작물-산림-수산)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방안을 모색하고 품종보호대상 확대(2012년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른 심사 인프라 확충을 도모한다.

또 품종보호제도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ISO 인증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품종보호출원 심사·민원업무의 실시간 처리 관련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식물 신品种 분야에서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품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운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① 추진배경 및 개요

생물자원은 의료, 에너지, 환경, 식량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생물자원의 다양성 보존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토착식물 '스타아나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의 사례에서 보듯이 생물자원의 막대한 산업적 부가 가치 창출 가능성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의 체계적 발굴·확보가 미흡하여 보유 생물자원의 다양성 및 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보존·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그 활용도도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2010년 채택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고유 생물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생물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자원의 체계적 발굴·확보와 활용기반 구축, 관련 국제 논의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대응 강화'의 3가지 성과목표와 8가지 관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세부 추진과제

첫째,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을 전략적으로 발굴·확보하고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물자원의 발굴·확보 체계 강화,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및 관련 국제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유 생물자원의 조기 확보 및 그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존·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한반도 내 생물자원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국가 생물자원 실태를 조사하고, 미기록 및 신종 후보 생물자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발굴·목록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생물자원 발굴·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예정인바,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유용 생물자원 개발 및 연구성과물 기탁 활성화, 기반기술 개발을 통한 특수환경 서식 자원 발굴·확보, 생명윤리에 기반한 인체자원의 전략적 확보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굴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즉 보존 및 관리의 표준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한반도 서식 생물종에 대한 분류체계 및 정확한 생물 동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또 생물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자산으로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자원의 유출입 종합관리를 가능케 할 '국가생물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체자원의 경우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익명화 등 생명윤리에 입각한 인체자원의 표준적·체계적 분류와 분양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생물자원의 안정적 유지·보존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부처별 소관 생물자원에 대한 백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생물·동·식물 등 자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존·안전관리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자원·생물다양성 변화 예측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 확충 및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확보-관리-활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생물자원 관련 대학-연구기관-기업 간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력 교류 확대, 생물정보학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 등 생물자원 전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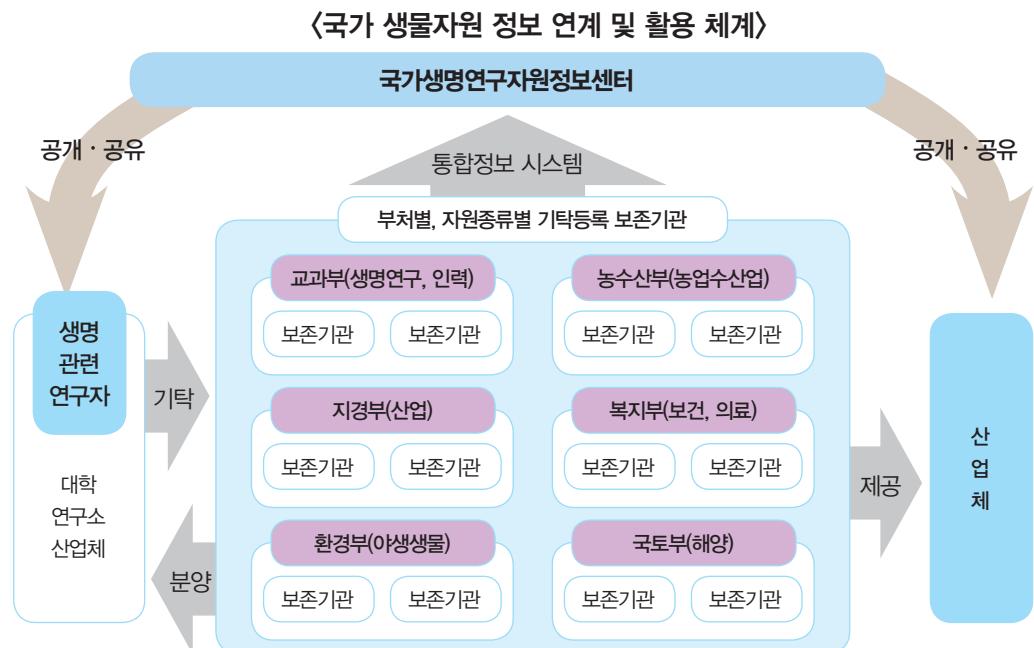
둘째, 생물자원의 활용 촉진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및 정보 분석 시스템 강화,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 이해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생물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그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생물자원이 가진 가치를 발굴·제고하기 위해서 생물자원의 국제 공인 획득, 고부가 가치 품종개발, DNA 마커분석 등을 통한 자원의 가치 재창출 등을 지원하고 특히 고부가 가치 기능성, 의약용 소재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생물자원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산·학·연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생물자원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생물자원 정보 연계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생물자원의 직접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생물자원 거점 내에 대학·기업의 연구자(팀)가 일정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Open Lab을 설치하고 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자원보존관리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동향, 기술현황 및 기술수요 예측 정보 등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특허생물자원 통합 백업 시설 구축 및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을 통해 특허출원된 생물자원의 활용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체자원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생명윤리적 측면의 고려를 위한 각종 절

차가 의무화되어 있는바, 인체자원 활용 시 동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있는 기능 및 절차의 통합을 추진하고, 그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관내부윤리위원회(IRB)의 자체 운영이 비효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공용 IRB 구축을 통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ABS 의정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연구자 교육 및 해외 제도 안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생물자원 활용 제고를 위해서 관련 제도 개선 및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활동 또한 추진한다. ABS 등 국제 논의와 발맞추어 국내 생물자원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선진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시 상대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권 전략 및 지식재산권과 국내법에 근거한 물질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생물자원에 대한 대국민 이해 확대를 위해 생물자원포털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인체자원의 경우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각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단체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인체자원 관련 의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생물자원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협력 및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생물자원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가 핵심 자산으로 등장하고 ABS 등 국제 논의에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그간 분야별로 발굴·관리 및 활용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던 생물자원의 각 영역을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부처 간 연계·협력, 책임기관 협의회 운영 등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동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가 전체 관점의 생물자원 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부처 역할에 맞는 육성정책,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조정으로 부처 간 차별화 및 전문화 강화 또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내 보유 생물자원의 다양성 및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구축한 해외거점(해외생물소재거점, 남극기지, 한·남태평양 연구센터 등)의 범부처적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생물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거점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생물자원의 전략적 자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도국에 대한 현지 생물자원 관리 보존 시설 구축 및 인력 양성 지원, 기술교류, 노하우 이전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자원 공동 발굴 및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①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국내외적으로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이 갖는 막대한 부가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전통자원의 발굴과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로 최근 한식 세계화, 의료계에서의 대체의학 확산 추세 등으로 전통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리랑 무형문화재

지정 사례처럼 국가 간 전통자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통자원 관련 국가적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의 정의 및 예시〉

구분	내용	
전통 지식	정의	토착민 또는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생성된 전통기술이나 창조물에 내재하는 지식체계(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예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승되어 온 지식
전통 문화 표현물	정의	전통문화표현물은 전통문화와 지식이 표현되고 대대로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표현물을 총칭하는 것(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예시	이야기·시 등의 음성적·언어적 표현물, 노래·리듬 등의 음악적·음성적 표현물, 춤·인형극 등의 행위 표현물, 예술의 물적 표현물, 수공예품 등의 유형적 표현물 등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자원의 발굴 및 전승현황 파악은 미흡하며 관련 DB 구축 수준 또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본적 측면과 더불어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을 활용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이익배분 왜곡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용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여부 및 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전통자원 활용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이 갖는 특수성, 즉 전통자원은 특허권의 기본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산자 규명 및 보호기간 설정 등이 곤란하며 「저작권법」상으로도 공유영역에 속하므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인정에 한계가 있는 등 현행 저작권 적용에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통자원이 갖는 잠재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전통자원의 활용을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현재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통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 틀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의 3가지 성과목표와 6가지 관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세부 추진과제

첫째, 전통자원을 발굴하고 그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자원의 발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전통자원을 문화적 측면에서 보호하고 산업화에 연계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져 왔으나, 지식재산 관점에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이에 전통자원의 보호 및 활용의 기초로서 전통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록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서, 구전의 전통지식, 전통생태자원(마을숲, 생울타리, 돌담 등) 및 전통향토음식(종가음식 등) 등을 발굴·복원하고 기록화하며 전통자원의 보고인 무형문화유산 전수 조사 및 국가목록 작성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발굴된 전통자원이 축적되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입체적이고 표준화된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의 수집 및 수집된 자원에 대한 DB 구축과 정보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구축된 전통자원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고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보다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치 있는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정보체계 구축 및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한국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한 분야별 전통지식 표준화를 추진하여 통합적인 DB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국내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통식품, 자생식물, 무형문화재 등의 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DB의 구축 수준을 높여 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국제 특허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문헌) 지정을 추진하여 개인에게 잘못된 독점권 부여를 방지하는 등 방어적 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통자원을 이용한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 그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를 위해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전통자원 기반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최근 전통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드라마·영화 등의 성공과 한식 세계화 추진 등은 전통자원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산업화·활용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통자원의 현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전통지식을 복원·재생하고 그 과학성을 검증하며, 복원·확인된 전통기술의 보존·계승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양, 음악, 춤 등을 사진, 음반, 영상에 담는 식의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지재권화 및 그의 2차적 지재권화와 함께 전통예술 브랜드화(상표 등)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무형문화유산 중 공예기술 등을 활용한 2차 신기술 및 문화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자원에 직접 기반한 산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전통지식의 활용방법별 분류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전통지식의 패키지화 및 관광 테마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통지식자원 가치평가 및 산업화 종합기술을 개발하고 전통기술 활용 소득화 사업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통지식 기술의 과학성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벤처육성 지원 등 사회적 기초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전통자원에 기반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제 수준의 공연·전시·축제 등의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보급,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한다.

셋째, 전통자원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따른 국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전통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통일된 국가 간 법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은 이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는 각국이 자신이 보유한 자원의 수준 및 국내 법·제도 현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에 보다 부합하는 국제기준 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WIPO의 국제기준 마련에 대한 국가별 입장〉

구분	기본 입장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의 설립과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강제 요건화를 강력하게 주장(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지적 (보호되어야 할 전통지식의 정의 및 권리자 등) ■ 유연성 있는 국제적 보호방안 제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반대(미국, 일본 등) ■ EU는 형식적 유전자원 출처공개(선진국과 개도국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찬성 ※ EU 입장은 지리적표시제가 유전자원 권리보호와 연계되어 있음을 반영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전통지식, 유전자원 보호방안의 출현이 기존 지재권 제도와의 충돌 및 많은 법적 분쟁 야기를 우려 ■ 기존 지재권 제도에 적합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과 기존 지재권 제도 안에서 전통지식, 유전자원, 전통문화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사항을 발굴할 것을 제안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자원 목록 추출, 계승 및 오용 현황 파악, 외국의 제도 및 국제 논의 동향 등에 대한 연구 및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주도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국제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전통자원 분야 경쟁력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 입장 정립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간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했던바, 이러한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전통자원 지재권 보호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련 현장 사례, 제도 및 법규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유사 제도의 통합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전통자원 관련 지재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및 지재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통자원 활용과 관련된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전통문화 산업의 개념·범위 설정 연구, 기초통계 및 실태조사 연구 등을 통해 전통문화 산업 육성 진흥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①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리적표시(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는 농수산물의 품질·명성을 권리로서 보호하고 지역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전략 산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국과의 FTA에서 지리적표시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지리적표시 제도의 정비 및 보호강화 추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품의 증가 등 양적 측면의 활성화의 더불어 품질관리 등 질적 측면의 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각국과의 FTA와 관련한 지리적표시 보호 내용〉

구분	내용
한·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PS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를 자국법에 따라 보호 ※ 한국 : 인삼, 김치, 보성녹차 칠레 : 피스코(포도주·증류주), 파하레테(포도주·증류주), 비노아솔(포도주)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규정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으로부터 보호 ※ 한국 : 64개 품목, EU : 162개 품목(주류 제외 시 60개 품목) 상호교환

한편, 페블리시티권(초상·성명 등 그 사람의 동일성을 표현한 일체의 표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타인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TV 포맷(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는 일정한 구성이나 틀) 등과 같이 통상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물이 아님에도 특정인 혹은 특정 회사와의 연상 작용을 매개로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이익 조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 신지식재산의 발굴 촉진 및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식별표지의 창출·활용 강화 및 보호제도 개선’, ‘유망 신지식재산 발

굴·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의 2가지 성과목표와 5가지 관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세부 추진계획

첫째, 지리적표시와 같은 식별표지의 창출·활용을 강화하고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리적표시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지원,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식별표지 보호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지역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이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질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 등에 있어 지리적 특성과 품질과의 인과관계 심의 등을 강화하고, 등록단체에 의한 자체 품질관리 및 정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리적표시품 중심의 농식품 브랜드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을 운용하고 다양한 홍보 실시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품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도모한다.

이러한 우수 지역특산품의 지리적표시 권리획득·활용 지원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맞춤식 전문 컨설팅 지원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지역특산품이 해외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전통산업 등에 대한 DB를 외국 상표청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동 명칭의 상표등록 출원 시 등록 거절을 유도하는 등 해외 상표등록·분쟁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리적 침해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사후 권리구제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 농무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해외 오·남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해외에서 침해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 간 협의 채널 개설 등 국가 간 쌍무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활용·분쟁 사례 수집·분석 및 법적 보호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새로운 산업 창출 및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는 유망 신지식재산(emerging IP)에 대한 지속적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퍼블리시티권·포맷 등의 활용·보호제도 구축,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의 발굴 및 정책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새롭게 등장하여 권리화가 논의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및 TV 포맷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법적 보호 필요성, 보호 범위 등에 대한 연구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TV 포맷의 경우 관련 일반인·전문가 인식 제고,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화 지원 및 창작 TV 포맷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창출·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편, 신지식재산 분야는 정의 자체가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크고 유망한 신지식재산이 잠재가치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 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제 논의 동향 및 융·복합 영역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권리화 가능성 및 그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한다.

제4절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2012~2016년 기간 동안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조1,533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연평균 약 2조307억원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창출분야가 7조5,631억원(74.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활용 9,631억원(9.5%), 신지식재산 8,986억원(8.9%), 보호 4,145억원(4.1%), 기반 3,140억원(3.1%)순이다. 예산규모가 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창출분야에 집중 포함되어 창출분야의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전략목표별 재정투자계획을 연도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창출	13,217	14,621	15,666	15,971	16,156	75,631
보호	731	808	836	868	902	4,145
활용	1,494	1,883	2,069	2,193	1,991	9,631
기반	591	609	627	646	666	3,140
신지식재산	1,464	1,964	1,841	1,828	1,888	8,986
합계	17,497	19,885	21,039	21,506	21,603	101,533

〈전략목표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전략 목표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합 계	17,497	19,885	21,039	21,506	21,603	101,533
①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75	194	198	201	204	972
②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3,543	4,096	4,404	4,611	4,698	21,352
③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9,243	10,013	10,727	10,797	10,887	51,666
④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265	318	338	362	368	1,642
⑤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422	468	476	487	499	2,350
⑥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211	239	255	273	291	1,269
⑦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보호 강화	91	94	97	100	103	484
⑧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8	8	8	9	9	42
⑨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538	579	605	668	732	3,122
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413	414	431	410	109	1,777
⑪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505	786	913	984	1,014	4,201
⑫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38	105	120	131	136	531
⑬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77	182	188	193	199	939
⑭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46	149	153	156	160	765
⑮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63	170	177	185	193	887
⑯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05	107	110	112	115	549
⑰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68	186	113	61	43	471
⑱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354	1,699	1,648	1,685	1,762	8,150
⑲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38	76	77	79	80	352
⑳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3	3	3	3	3	15

※ 연도별 재정투자액은 추정치로서 향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제4장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추진

제1절 164
추진경과

제2절 167
12대 법정부 중점추진과제

제3절 197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

제4절 200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제1절

추진경과

각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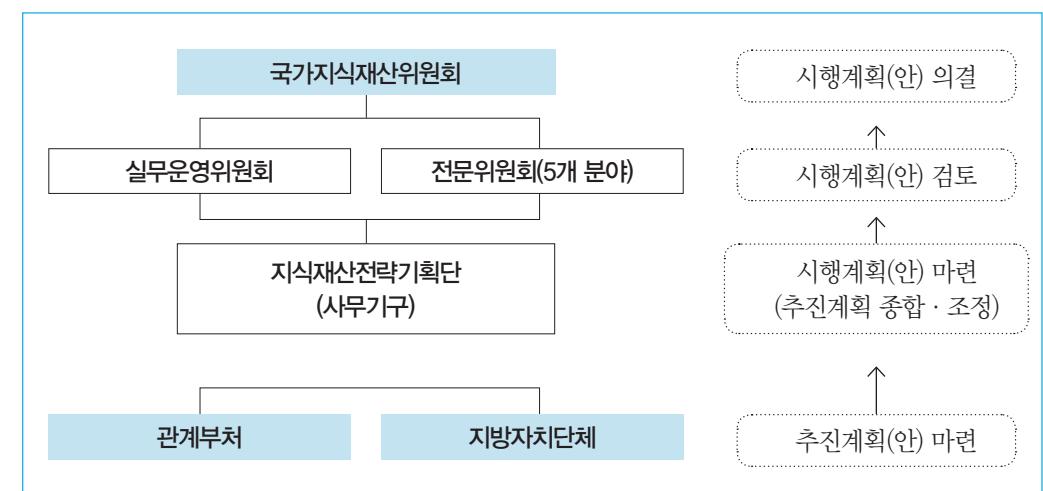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등을 통해 이미 2011년 '무역 1조달러' 규모의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높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의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저조하고, 발명자·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여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다. 최근 세계시장을 판류하고 있는 기술 간 융합, 기술·감성·문화의 접목 현상은 우수한 창의역량을 보유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창의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21세기형 지식기반 시대의 미래국가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수립근거 및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전략인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제8조)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제9조)한다.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은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기본계획 아래,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는데, 2012년도 시행계획의 경우,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마련되었다. 시행계획의 수립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시행계획의 수립체계〉



제2절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3. 추진경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2011년 10월)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이 작성한 추진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안)을 마련(2012년 1월)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시행계획 수립경과〉

추진 내용	추진 기관	일정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11년 10월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안) 수립·제출	관계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2011년 10~12월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안)을 종합·조정, 시행계획(안) 마련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11년 12월~ 2012년 1월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12년 1월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심의·확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년 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대학·출연연 등 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 시장 및 정책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결상태인 과제, 초기에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국가 R&D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수준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국가 R&D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확대를 위해 특허동향조사·분석을 확대하고, 강한 지재권 획득전략을 추진하여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추진하였다.

표준특허 확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 등 개별 역량은 우수하나, 이러한 역량이 연계되어야 가능한 표준·원천 특허 창출역량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순위는 7위,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표준특허 확보순위

는 ISO 9위, IEC 10위, ITU-T 7위 수준(2011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장 선도적인 특허 확보를 위해 「국가R&D-특허-표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원천 특허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주요 추진계획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R&D 관리 강화를 위해 특허청과 지경부, 교과부 등 15개 R&D수행부처에서는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을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6억원 증액한 172억 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 R&D 과제를 선정·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바이오·이동통신·로봇 산업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수행단계에서는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해 대학·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및 연구자 대상 설명회·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재권전문가—발명자 인터뷰 제도 등 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출연(연)에 적용하던 IP자산을 활용,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진단모델인 「IP경영 진단모델」을 기초·응용·개발연구 등 연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활용역량진단 모형으로 개선하여 대학 등에 보급·확산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평가단계에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업유형·규모 등 특성을 고려한 질적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질적 평가지표는 특허의 기술적 가치, 신시장 창출 기여도, 고용유발 효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연구성과의 궁극적 경제 파급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추적평가 추진체계 및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성과 기술성을 가진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는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국제표준 획득을 목표로 「R&D 표준특허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경부, 방통위 등의 14개 R&D과제를 수행하였고 2012년에는 국토부, 문화부 R&D과제를 추가하여 18개로 확대하고, 100개 과제에 대해 산·학·연 보유특허의 표준특허 채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표준특허 기반조성을 위해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특허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정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기관 협의체로 「표준특허 전략협의회」¹⁹⁾를 구성하여 제1차 전략협의회를 개최(2012년 5월 16일)하였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부처 간 역할 설정, 정보 공유,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유관부처·기관은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관련 기술표준 동향을 미리 분석·예측하고 특허확보 및 국제표준 채택 등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략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지정하였으며, 국내 표준특허의 창출기반 확대 지원방안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전략협의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12년 4월 5일 개최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제1차 컨퍼런스」에서는 특허 정보진흥센터와 정보통신기술협회 간 표준특허 분야 업무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특허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동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R&D 기관에 제공하고 확보된 특허를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특허-표준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통해 표준특허 관련 정책·정보 교류, 표준특허 창출 성공전략 공유 등 유관부처·기관 간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특허 로드맵 작성, 표준특허 전략기술 선정, 표준화 연계를 위한 법령·규정 개정 등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특허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해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추가로 3~4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확보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1) 추진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38%(2010년)로 9위에서 10여 년간 정체하고 있으나, 최근 뉴미디어, 3D·가상현실 융합 등 차세대 콘텐츠시장이 형성 중에 있

19) 정부(6) : 지경부, 특허청, 기술표준원, 방통위, 국과위, 국립전파연구원

유관기관(9) : 특허정보진흥센터, 정보통신기술협회,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다. 따라서 차세대 콘텐츠 발굴·육성 및 핵심기술개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창의적 고급 인적자원 부족, 낮은 기술경쟁력 등으로 글로벌 외국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R&D 투자 확대 및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2012년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계획

먼저 문화관광부에서는 3D·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MC(Digital Media City)내 3D영상제작센터 지원사업, 3D중계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예산으로 3D 콘텐츠에 150억원, 스마트 콘텐츠에 110억원, 융·복합 콘텐츠에 75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3D, 실감, 가상·증강현실 등 콘텐츠에 사용되는 기술개발 및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문화기술 연구센터에 806억원을 지원한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콘텐츠(1,000억원),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600억원), 한국영화 다양성(100억원)에 각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양방향·융합형 방송콘텐츠 발굴을 위해 IPTV·스마트TV·디지털케이블 등 뉴미디어에 구현 가능한 양방향·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다.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복수의 연구주체가 참여한 후 최우수 연구자에 R&D 과제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형 서바이벌 R&D', '소액 도전형 R&D' 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창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수요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및 기술자산 거래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뱅크 설립에 130억원의 지원 투자를 추진 중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스터플랜(3건) 및 사전 타당성조사(16건), IT 국제조달시장 진입 촉진,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멘토링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리더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과정 및 고용계약형 소프트웨어석사과정 등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에 170억원을 투자하여 75명의 마에스트로과정 인증자 및 소프트웨어석사과정 교육생 등 고급 창의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Big-Data 분석·처리 등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92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을 위해 OSS(Open Source Software) 활용 시 발생되는 지재권 문제 해결 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Open Sourc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조성 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1) 추진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조1,172억원(2010년)이며, 위조상품 피해액도 1조4,028억원(2010년)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합법저작물 침해비율이 32.5%,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구매율이 30.4%에 달하는 등 온라인상 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 침해는 지능화·고도화·온밀화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단속인력 역량이나 수사기법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기술적 대응체계의 확충이 시급하고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현황을 보면 2005년 29건, 2007년 32건, 2011년 46건 등 첨단산업기술 유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건수는 2006년 54건, 2007년 96건, 2010년 114건 등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관련 분쟁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기반이 약화되고 국부유출 등 국가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관제시스템 확대 등 보호 인프라 구축,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해외에서의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계획

첫째,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에 노력하였다. 불법저작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P2P 등록제도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등록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2012년 5월부터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통위, 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등록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추진하였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ICOP)를 확대하여 콘텐츠산업 분야별 불법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시험 운영을 실시하며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장애인 요원을 채용(100명)하여 재택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저작물 유통방지에 노력하였다. 위조상품 자동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검색대상을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외에도 구글을 추가하는 한편, 위조상품 자동 검색 기능도 강화하였다.

특별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분야별 사법단속과 별도로 대검찰청 주관으로 문화부·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특별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며, 저작권, 상표 등 분야별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집중합동단속’ 외에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지재권 전담 검사실과 분야별 특사경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둘째,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대검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을 제고하였다.

특사경 거점 및 인원을 확대하고 법무연수원, 경찰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등과 상호교육 실시 및 단속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단속인력의 수사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교육과정 개발과 전문교육을 통한 단속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셋째,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였다. 산업기술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신규조항 신설을 통해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 내 산업보안학과의 개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안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며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을 2011년 250개 기업에서 2012년 600개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우선 현지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외국 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재외공관의 지원 활성화와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보호거점과 관련해서는 2011년 기준 Copyright Center는 중국 1개소, 태국 1개소이나 2012년 필리핀 1개소(마닐라 저작권센터)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IP-DESK의 경우도 2011년 중국 5개소, 태국 1개소, 베트남 1개소 운영을 통하여 21억원 모조품을 몰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12년 미국 1개소를 추가하여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1) 추진배경 및 목적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순위는 59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26%²⁰⁾에 불과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 203건의 최종 인용된 금액은 209억원으로, 청구금액인 2,447억원의 10% 미만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2~3년간 판결된 손해배상액 중앙값(median)은 약 5,500만원으로 미국의 250만달러의 2%²¹⁾ 수준이며, 이 금액은 소송 시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다 침해하는 편이 이익인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여 ‘특허무용론’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재권 가치인식 및 창

20) 주요 선진국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특허권자 승소율은 미국이 59%, 프랑스는 55% 등으로 나타났다.

21) 2009~2011년 중앙값 기준

출의욕 저하, 투자 및 거래 감소 등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도록 한다. 지재권의 정당한 보호 없이는 지식재산의 왕성한 창출과 창의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축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송 시 국내 현실에 알맞은 적정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시스템 강구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는 정책적 보루(Bottom Line)의 구축이 절실하다.

(2) 주요 검토 내용(안)

① 일실이익²²⁾ 인정 범위 확대 등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양도수량에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생산한 물건은 특허권자가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 현재 생산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일실이익의 인정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증거조사 제도 개선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추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하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법률상의 사실 추정규정으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비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침해자의 비용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허법」 제132조에 서류제출명령이 명시되어 있으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증거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증거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③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 마련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은 통상 실시료를 통해 손해액을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자

22)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권리자의 이익액

가 현실로 받은 손해인 일실이익과는 관계없이 침해에 대한 최저의 배상액을 법정한 것이다.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은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로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대한 산정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④ 증액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침해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모두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만큼의 보상이 쉽지 않고 특허권의 특성상 침해방지효과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써 얻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고의적·악의적 침해에 대해 계산된 손해액을 증액하는 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²³⁾

⑤ 대리인 비용 보전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약 7,800만원에 불과한 우리의 실정상 손해배상액만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소송 대리인 비용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합리적인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소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추진계획

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위와 같은 목적과 주된 검토내용을 가지고 2012년 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대안들은 법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방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거조사절차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후속과제로서 위원회에서는 지재권 소송에서의 증거절차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3)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계약관계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해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1) 추진배경 및 목표

① 추진배경

최근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 간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내외 법적 분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허분쟁은 정보기술(IT), 스마트, 융·복합 등 혁신이 빠른 新산업 분야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애플-삼성 간 소송,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허분쟁은 소송비용 및 분쟁장기화로 인해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경영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특허분쟁 제도의 비효율성, 특허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분쟁 대응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세계 최초 원천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특허분쟁을 거치면서 시장선점에 실패한 MP3플레이어²⁴⁾, 중국 저가 모조품 유통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20억원을 허비하고 매출액 감소를 야기한 S-보드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렇듯 효과적인 특허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소송 등 제도를 정비하여 자국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역시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궁극적 보루인 특허소송의 선진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지식재산 기본법」에도 정부 차원에서 지식관련 소송체계를 정비할 의무 등을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특허보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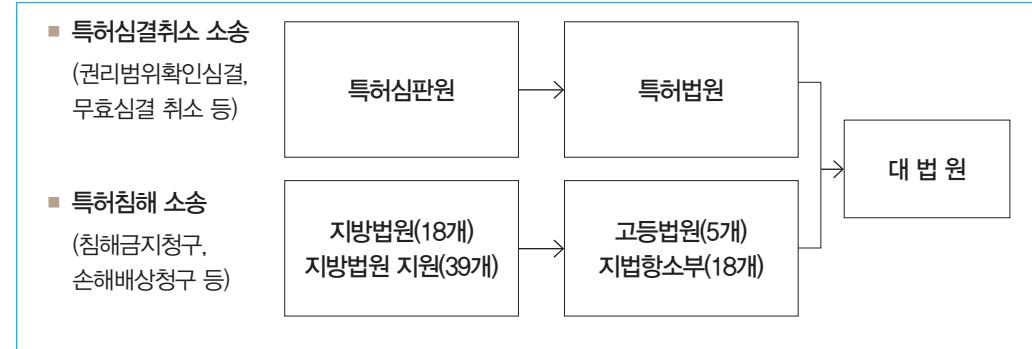
②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은 크게 특허 등의 무효여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소하는 ‘특허심결취소 소송(무효심결취소,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등)’

24) MP3플레이어는 1997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사업화 과정에서 국내특하는 우리 기업 간 분쟁으로 소멸되었고, 미국, 유럽, 중국 등에 등록된 해외특허는 미국 특허고시(NPEs)에 인수되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라이선스로를 지불하고 있다.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GMID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MP3 기술 적용기기(MP3 Player, PMP, 스마트폰)의 세계 주요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판매량이 최소 13억대 이상이었으며, 해당 기술료를 2달러로 계산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약 27억달러(한화 약 3조1,500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 특허 등의 침해여부 등을 다루는 ‘특허침해 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간주하여 일반 민사지방법원(1심 : 18개 지방법원, 2심 : 5개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특허심결취소 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취급하여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²⁵⁾

〈지식재산권 소송의 이원화〉



이러한 ‘특허심결취소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 이원화는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기업, 발명가 등 수요자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특허침해 소송’ 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김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 소송이 11년 8개월 소요되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충될 우려가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침해소송에서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²⁶⁾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 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 및 효율

25) 1998년 3월 1일 이전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체재산권의 심사·심판 불복소송은 특허청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대법원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항고심판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특허심판제도는 법원에서 사실심을 다루지 않아 재송절차로서 부적절하고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1995.9.28. 92헌가 11, 93헌가 8·9·10(병합))을 하였다. 그 결과 1998년 3월 1일 특허청의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6) “...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2012년 1월 대법원)

성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재권 분쟁의 우선적 현안인 특허소송 관할제도의 재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하여 특허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에 이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치하였고, 일본은 2002년에 도쿄와 오사카의 지방법원을 1심, 지식재산고등재판소를 2심으로 하는 특허분쟁 전담법원 체계를 갖추었다. 유럽은 2012년 6월에 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앞으로 특허 무효사건과 침해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특허분쟁의 증가에 따라 쟁점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기술전문가의 소송참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특허침해 소송은 심결취소 소송과 달리 민사소송 사건으로 판단의 대상이 기술적 문제일 뿐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며, 이러한 주장은 각계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고 기술전문가 참여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주요 추진계획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지만, 세부 개선안에 대한 상호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feasible) 개선방안을 연구·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전문위원회는 특허소송 관련 주요 부처·기관 및 이해관계자 단체 등 10명으로 2012년 3월에 구성되어 산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해외 관련제도의 도입배경·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특허소송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요구사항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 중에 있어 심도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1) 추진배경 및 목적

세계 500대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이 지난 1985년에는 32%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S&P(Standard & Poor's, 신용평가기관)의 발표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지식재산이 기업가치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지식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 환경이 기업의 활동 및 국가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인텔렉추얼 벤처스, 인터디지털 등 NPE 활동의 증가는 국내 기업에 특허분쟁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기대응 및 국가적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2011년 말 민관합동 창의자본을 조성한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구현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불확실성·정보의 비대칭성·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에 민간의 자생적인 금융공급이 미흡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융자 시스템을 확충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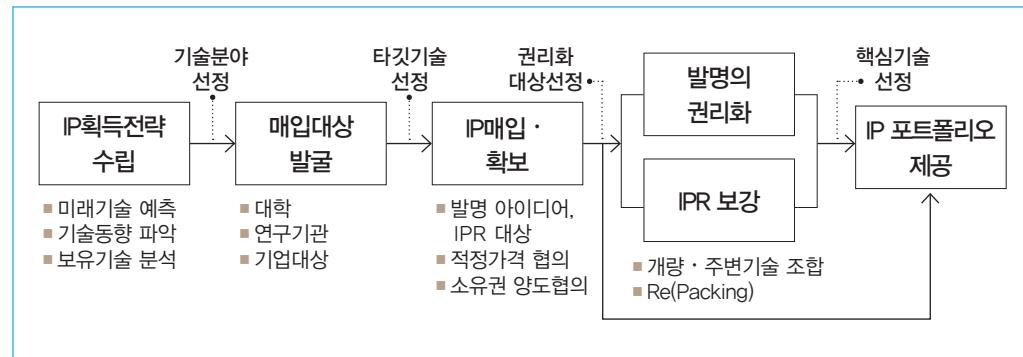
(2) 주요 추진계획

첫째, 기술평가인증 및 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기술금융에서 기술보증제도가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지식재산 사업화·창업 과정에서의 민간의 투자·융자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정책방향 설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대출 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2년도 말까지 동제도를 활용하는 기존의 금융기관을 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6개 기관에서 전(全)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기술평가보증 50% 이상을 창업 및 초기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하도록 금융공급시스템을 개선코자 노력하였다.

둘째, 창의자본 조성 및 이에 대한 활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인텔렉추얼 디

스커버리는 2011년에 기 조성된 500억원의 창의자본으로 2012년 상반기 현재 웹, 동영상 코덱, LTE, 차세대 근거리통신, 모바일서비스 등의 전략과제에서 700여 건의 우수특허를 매입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과 IP 인큐베이션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2015년까지 5,000억원의 창의자본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모델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인큐베이션 개념도〉



셋째,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 시스템 확충을 추진하였다. 2012년 중 적극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전문펀드 출시였다. 2012년 3월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권 전문 자산운용사인 아이디어 브릿지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인가되어 민간 금융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펀드의 운용구조는 A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일정 금액을 주고 펀드가 매입한 후 이를 활용해 다른 기업들에 실시권(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거나 아니면 그간 로열티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를 찾아내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아이디어 브릿지는 2012년 중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특허매입 및 투자를 모집하였다. 이런 지식재산권 전문펀드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특허를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신기술 개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의 투·융자 원활화를 위해 ‘콘텐츠 완성보증제도’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2009년에 도입한 완성보증제도는 1,900억원까지 보증 가능하나, 제도 실시 3년 차에 406억원을 보증하여 실적이 저조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절차(콘텐츠진흥원 심의→기보/은행 심사) 및 대상기업요건(선 판매계약 체결), 기관별 신청 필요서류 복잡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청서류 통합·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며 2012년 보증지원 목표액을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350억원으로 잡고 보증누계액을 700억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화·드라마 등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산업 전문회사로의 등록 의무화, 운영매뉴얼 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화산업 전문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추진배경 및 목적

하도급 거래에서 드러나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유용사례, 대기업이 중소납품업체에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특허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한 계약 형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개인과의 계약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산업계 갈등·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관행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2) 주요 추진계획

첫째, 지식재산 탈취·유용행위 감시 및 불공정계약 예방을 지속 추진하였다. 하도급 거래 시 구두계약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지식재산의 탈취·유용이 있더라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소송 제기 시 위법행위 입증 및 손해액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고 오히려 대체적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의 탈취·유용을 당하더라고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

선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사례 및 불공정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증기청 등에 접수된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과 같은 중소기업 사업자단체를 통해 불공정사례 제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부당 요구 및 유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2011년의 제조위탁 거래에 이어 2012년에는 건설위탁과 용역위탁거래까지 확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불공정계약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정부지원 R&D 성과물 임차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증가에 대비한 임차금고를 2011년의 1,114개에서 올해는 4,500 개 까지 3,000여 개를 증설하여 임차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진단·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업체에서 올해 400업체까지 확대해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촉진하였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기술협력을 유도하였다.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을 위한 기술협력을 하기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스로가 상생협력이 Win-Win 전략임을 인식하는 것이나, 이는 장기적으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장려정책 또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200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협약 체결 제도는 기업 간 자율적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이행 평가를 강화하여 협약체결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특허기술이전 등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임차, 공동특허권 취득 등 기술보호에 관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기술탈취·유용 금지 규정 등을 반영한 표준화도급 계약서를 마련하고, 개정된 표준화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법위반 벌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용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술이전 우수 대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해 대기업 미활용기술의 기부채납을 장려하고, 그 기부된 기술을 중소기업 이전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



「포스코, 1~4차 953개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협약 체결」
출처: 스포츠경향(2011.5.24.)



「현대차 따라 해외 진출한 협력사 430개 ... 매출 2배 이상 늘어」
출처: 한국경제(2011.11.30.)

넷째,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촉구하였다. 특히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정(안) 도출 및 추가분야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노력하였다.

8.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양성

(1) 추진배경 및 목적

현재 국내외에서 지식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매년 급격한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 각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곧 그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만큼 지식재산은 향후 국가들의 신성장동력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수준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불법복제, 위조제품 구매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지식재산 인력도 체계적 교육을 통한 양성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문화의 부재에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재산권으로서의 존중문화 함양과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었을 때 비로소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홍보추진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존중

의식함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전략이 미흡하며,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전 주기적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바,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기반 마련 및 창출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2)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홍보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소양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 유관기관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일례로 대상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의 실시, 찾아가는 발명·저작권 교육 확대 및 생활밀착형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합법제품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친(親) 지식재산 사회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발명교육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2011년도는 176회에 걸쳐 시행된바, 2012년도에는 185회로 증설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접근성이 어려운 발명자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저작권 교육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2011년도에 33만6,000명에 이르는 국민이 교육을 받았으며, 2012년도에는 36만9,000명으로 확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소양교육을 강화, 확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전략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에 관계부처·민간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홍보전략 T/F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저작권 분야 역시 저작권 인식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저작권 SNS기자단 운영, 저작권 CM송·창작동화 등 대중 친화적 홍보 방법을 채택하여 더욱 친근감 있게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였다. 이에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의 지식재산 존중의식 함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②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의 인력양성은 지식재산산업의 기틀이다. 인프라의 구축은 장차 미래 지식재산산업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현재 지식재산 인력

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지식재산 인력 수급현황 조사를 통해 중장기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인력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지식재산 수급현황을 조사하였다(2011년 12월~2012년 6월). 이에 각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체재산권, 저작권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현황 및 전문인력 수요 전망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특허청, 문화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마련하였다(2012년 12월).

또한 직접적인 교육인력 양성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한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의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식재산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무연수 과정을 6개로 운영하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역시 5일간 총 30시간에 걸쳐 시행하였다. 그리고 전공·수준별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의 수료 인원 역시 2011년도 290명에서 2012년도 30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창의적 발명·창작 인재의 양성 역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발명·창작인력은 생산자로서 지식재산의 확산에 1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식재산 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발명영재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예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의 경우 지원 대상을 발명영재까지 확대하여 기존 300명에 대한 교육을 5,000명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발명영재들은 다음세대 미래 지식강국의 원동력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또한 CEO포럼(공학한림원), 글로벌 인재포럼(교과부), 비즈스쿨 창업캠프(중기청)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저작권 분야 역시 저작권 체험 교실 운영 및 관련 연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대방안 도출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초·중·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내용’ 반영 추진 및 보완교재 개발·보급에 노력하였다. 현재 ‘저작권 관련 내용’의 교과서 수록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바, 학생 교육의 1차적 교재인 교과서를 통하여 저작권의 중요성을 접할 경우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문의 정점인 대학에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1차적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을 운영하였다. 이에 2012년도 4억4,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하대, 강원대, 전남대 3개 대학을 지원하고 관리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의 분야가 단일 학문이 아닌 여러 학문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바, 이러한 국제적 수준에 발맞추어 지식재산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분야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다.

9.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1) 추진배경 및 목적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때 더욱 좋은 발명을 해낼 수 있다. 보상은 단순히 물질적 의미뿐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인정 및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여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발명인력으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져 다음 세대에도 지식재산산업 육성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도입 활성화 및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종업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직무발명 보상이 확대된다면 기업의 경쟁력도 증가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의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을 통하여 특허출원이 4,0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2년 2월, 2011년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²⁷⁾, 지난해(2011년) 출원된 국내 전체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나,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하였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년대비 242%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세분화하고 보상금액을 높인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직무발명 보상 활성화와 더불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도 주요 과제이다. 산업체, 학계, 연구계는 각각 협업하여 결과를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를 통한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에 대한 의견 대립이 분분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결과물의 소

유권 배분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개방형 혁신(OI) 및 연계개발(C&D)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로 기업은 대학이 지재권 소유 시 경쟁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경영리스크가 증가함을 주장하며, 대학의 경우 발명자 귀속원칙에 따라 연구결과 소유권의 대학 귀속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소의 경우도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주요 쟁점에 대한 각각의 이견을 조정하여 각 기업, 대학,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하였다.

(2)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①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

구체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직무발명제 도입 잠재력이 높은 R&D형 중소기업과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CEO 인식제고 등을 도모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총 65회에 걸쳐 직무발명 관련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 확인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유무, 보상기준 및 보상형태, 보상액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대상으로 하여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수기업 확인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직무발명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기업 역시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제도 홍보 및 포상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알기 쉬운 직무발명 설명자료를 개발하여 제작·배포하고, 직무발명 분쟁사례 판례집, 제도 편람, 보상규정 표준모델 등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 운영 우수기업을 공모 및 포상하여 2011년 5개 기업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했으며, 2012년 10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방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여 울산시 등 7개 지자체에서 등록 및 처분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 교육,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시행하였다.

일례로 '2011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

27) 특허청, 2012년 2월 9일자 보도자료

탑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및 LED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0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내외에 총 1,400여 건의 특허출원과 25% 이상의 매출 증가 등 큰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수기업을 선정된 마이크로인스펙션(주)은 PDP 패널 전자 검사장비(AEI) 전문 벤처기업으로서 2006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이직률이 거의 없는 알짜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발굴 및 선정을 통하여 보상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②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국가 R&D 외에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학·연 간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소유권, 수익배분을 둘러싼 협력연구 협약체결상의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2012년 3월)하여 7차례에 걸친 상호 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2012년 11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R&D의 질적·양적 성장, 협약의 실효성 및 유연성의 조화, 선택의 다양성, 상호이익의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연 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 지재권 귀속의 3가지 유형 내에서 실시권 및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산·학·연이 수용 가능한 6가지 계약서 유형 및 계약서 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협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그간 산·학·연 핵심 쟁점이던 수익배분 문제는 산·학·연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 유형에 수익배분을 의무화하고, 기업 단독소유 유형에 수익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은 수익 배분 및 보상, 대학의 경우는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협력주체 간 호혜적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용성을 한층 높였다.

산·학·연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기업은 가능한 한 충분히

지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소는 실시에 따른 적절한 수익 배분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홈페이지 게재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합동설명회 개최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장기관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가칭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통해 수집된 의견 및 협력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군소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들이 보다 많은 협력연구와 개방형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국가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완결된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 등에 따른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 기본법과 기존 법령 간 정합성을 구축해 나가며 정부-민간 간에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2) 주요 추진계획

①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개정안 마련

국가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정합성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소요를 파악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정을 권고하였다.

②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지식재산 운영협의회, 지역지식재산 서포터즈 등을 구성·운영하였다. ‘지역지식재산 운영협의회’는 인천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기업·변리사회·진흥회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지식재산 현안 및 IP 경영사례를 공유·확산하였다. 또한 ‘지역지식재산 서포터즈’는 부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기업·공무원·유관기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역지식재산 현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정부-민간 네트워크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업)·시장 등 현장의 정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요 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 출발점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제1차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에 특허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변호사협회, KIST 등 71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IP-표준, IP-보호·금융, IP-인력·교육 등 3개 분야에 걸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표준특허 분야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표준특허 동향을 R&D 기관에 제공해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표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섰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 5개 기관 역시 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 협정을 통해 산업·기업별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등 5개 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금융분야에서 협정을 맺었다. 이를 시초로 각 분과별 회의의 지속적 개최를 통한 긴밀한 업무추진으로 지식재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11.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경우 지식재산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특화된 지식재산 정책이 필요하나, 현실은 창출부터 인식까지 정책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및 추진체계가 미흡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및 지역 전통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역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인적 기반의 구축,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2) 주요 추진계획

① 지역지식재산 기반 구축

다양한 지역지식재산 정책 기반을 위한 제도·조직 등을 확충하여 지역지식재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정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전남 등 4개 지자체는 지역지식재산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인증제도를 추진하여 지식재산 활성화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지식재산 조례, 전담인력, 사업추진의지 보유 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지정하여 재정적 지원 및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추진하여 지역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지난 2011년 3월에는 안동시가 최우수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다. 안동시는 전통식품, 문화유산의 지재권 발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안동의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을 브랜드화하여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12개 문중의 휘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지역 향토식품의 지식재산권화를 위해 ‘발효 산양삼차 및 이의 제조방법’, ‘산양삼을 함유하는 선식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조림닭의 제조방법’ 등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을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12년 5월에는 광주 광산구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그동안 주민·학생·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특허 권리화 사업을 지원하여 창조·사회적 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와 광산우리밀·소셜커머스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지식재산도시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지식재산 활성화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지식재산권 분야 유망지역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육성하였다. IP스타기업으로 2011년도에는 311개사가 선정되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2012년도에는 481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추진했고, 지원 종료 후에도 후속지원 실시 및 지식재산 경영기업 인증과의 연계방안 또한 검토하였다.

해외 맞춤형 브랜드 개발로 비영어권 국가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지어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 경우를 보면, (주)코스메타코리아(대표이사 : 조임래)는 2010년 충북지역 특허스타기업에 선정되어 2년 연속으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결과 2010년 중동지역에 적합한 신규 브랜드 개발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30%(313억원 → 408억원) 증가하였고 고용인원도 28%(125명→160명) 상승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기업명	국가(연도)	브랜드 및 디자인	의미 설명
(주)코스메타코리아	아랍 (2010)	A r t i o  فن التجميل [아티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o’ 숲의 여신이라는 스위스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친예술로 연상화한 브랜드 ■ 아랍어와 부정적 연상이 없으며, 아랍어 발음 시 어렵지 않은 발음으로 개발 <p>〈지원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30% 증가(313억원 → 408억원) ■ 고용인원 28% 증가(125명 → 160명) ■ 중동지역에 적합한 신규 브랜드 개발
		ELDIVA  THE KOREAN COSMETICS 艾爾黛雅 [ai er dai y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gant Diva 여성을 대표하는 'Diva'를 통해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부여 ■ 미모 예+어조사 이+눈썹 대+맑을 아 – 서양미와 동양미를 갖추어 우아한 여자처럼 아름다워지는 화장품의 뜻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역 컨설팅이 중요하다. 컨설팅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산업체재산권을 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의 IP 창출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종합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이에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은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전통산업의 지원 역시 지식재산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의 일환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및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2011년도 38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된 내용이 2012년도에 광주 무등산 수박 등 44개 품목으로 증가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지역 전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나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리화에 앞장섰다. 이 역시 2011년도 6개 품목에 대한 지원을 임실치즈 등 14개 품목으로 증가시켜 2012년도에도 지원하였다. 전통산업 종사기업 보유 공동브랜드의 개발 지원 역시 2011년도 9개 자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더하여 2012년도에도 5개 지자체의 12개 품목에 대하여 확대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시켜 농촌의 경쟁력 까지 강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지식재산 창출뿐 아니라 만들어진 지역지식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 역시 중요한 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소재 기업·연구소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을 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켰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며, 농촌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창출되었으나 잠자고 있던 지식재산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신지식재산 분야는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이라는 기본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을 2012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신지식재산 분야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인바, 기본 계획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인 2012년에는 신지식재산 관련 전략 추진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이를 전반에 걸친 제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확보·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지식재산 유형별로 적합한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활용기반을 구축하며, 미래시장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추진계획

①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 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

식물 신품종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개발하고 품종보호제도 관리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품종보호제도 실시의 국제적 확대 및 각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 개방화에 따라 외국품종에 대한 보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해 「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했다. 동 프로젝트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2012~2021년) 진행되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공동 R&D 사업으로, 프로젝트 추진의 첫 해인 2012년에 사업운영센터 구성 및 품목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품종보호제도 실시가 유예되어 왔던 해조류(수산식물)도 품종보호제도의 대상이 됨에 따라 해조류 품종의 원활한 출원, 심사, 등록 및 유통관리를 위해 수산과학원 내 '수산물 품종관리센터'를 신설하였다.

식물 신품종 분야는 신지식재산으로 논의되는 여러 영역 중에서도 별도의 보호·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운영되어 온 분야이긴 하나, 그동안 지식재산 관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연계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2012년도 과제의 추진으로 우리나라 품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종보호제도의 운영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②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관리·활용기반 구축

생물자원 분야에서는 고유생물 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분야별 유용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생물자원의 통합적 관리기반 구축을 추진했다. ABS 의정서의 채택 등으로 각국이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반한 자원주권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발생하는 생물의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 국내 고유의 유용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농림수산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인체자원 등 분야별 유용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관련 DB를 구축하여 생물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였다. 한편, 확보된 생물자원을 범부처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생물자원의 유·출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국가생물자원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생물자원 확보·관리 기반 마련으로 수익 창출 및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전통자원의 발굴·기록 및 관리체계 구축

전통자원 분야에서는 전통지식의 권리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통지식 표준화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관리기반 구축과 함께 지자체의 다양한 전통자원 확보를 추진한다. 전통지식의 경우 이미 세계 각국 및 여러 국제기구들이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전통지식의 발굴 및 전승현황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에 전승되어 오거나 고문헌에 드러난 농업·생활기술 등의 전통지식을 발굴하여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분류를 부여하고 영문화를 진행하는 등 표준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를 '한국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하여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통문화표현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3절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무형 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고유의 전통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자원 기반 산업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활동은 전통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 등 외국과의 전통자원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에 대비하며,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였다.

④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유망 신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퍼블리시티권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역 우수 특산품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역 특산품의 품질·명성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등록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부산시의 ‘동래파전’, 울산의 ‘강동 돌미역’, ‘울주 미나리’, 인천의 ‘까나리 액젓’ 등 지역의 유명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향토 및 농식품 산업 발전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기존에 통상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과 같이 특정인과의 연상작용을 매개로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스포츠 스타의 권리 보호 및 문화산업 발달을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 마련 필요성 및 그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유망 신지식재산 분야는 아직 지식재산 관점의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인바, 초기부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2년 추진과제를 통해 유망 신지식재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계획 개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자체는 2012년 중 총 1,15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285개 관리과제를 추진하는데, 이는 기관당 평균 13.6개에 이른다.

2. 목표 및 과제현황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78개 전략목표와 147개 성과목표, 그리고 285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야별 주요 과제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분야별 주요 과제〉

5대 분야	주요 과제	부처명
창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기반기술 개발 ■ 미션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특허청 교과부·지경부 문화부·방통위 국과위

5대 분야	주요 과제	부처명
보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상 불법유통 방지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지식재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역량 강화, 침해사범 합동단속 실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문화부 특허청 관세청·법무부 방통위
활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유용 및 권리 남용 예방 	지경부 중기청 문화부 공정위
기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발명인재 및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지식재산 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 남북 민간교류협력 지재권 정책 기초연구 지역지식재산 기반 구축 	교과부·특허청 외교부 통일부 특허청
신지식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인체자원의 수집 및 공급체계 개편 해양생물자원 가치발굴 및 전통자원 창작·연구개발 활성화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가 생물자원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퍼블리시티권·TV포맷 등의 활용·보호제도 구축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문화재청 환경부 문화부

총 285개 관리과제를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출 53개(18.6%), 보호 53개(18.6%), 활용 43개(15.1%), 기반 54개(18.9%), 신지식재산 82개(28.8%)로 구성되는데, 특히 신지식재산 분야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24개), 복지부(11개) 등에서 다수과제가 수립되었다. 분야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분야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

분야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합계
성과목표(개)	25	27	27	30	38	147
관리과제(개)	53	53	43	54	82	285

5대 분야별로 관리과제 수가 높게 나타난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창출 분야는 연구개발 체제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6.3%), 보호 분야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23개, 8.1%), 활용 분야는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13개, 4.6%)이며, 기반 분야는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6개, 5.6%), 신지식재산 분야는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50개, 17.5%)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제현황〉

(단위 : 개)

기관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교육과학기술부	4	8	15	21	18
외교통상부	3	4	4	6	0
통일부	1	1	1	2	0
법무부	2	4	4	10	10
국방부	1	1	0	1	0
행정안전부	1	1	1	1	0
문화체육관광부	15	30	22	51	0
농림수산식품부	4	10	52	24	0
자식경제부	4	13	12	39	46
보건복지부	7	10	21	16	21
환경부	5	6	10	11	11
국토해양부	1	3	6	8	8
방송통신위원회	4	6	10	12	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	6	6	8	7
공정거래위원회	1	2	3	4	0
금융위원회	1	1	0	1	1
관세청	1	1	0	2	1
문화재청	1	3	3	6	4
중소기업청	2	2	0	2	4
특허청	16	34	16	59	0
기상청	1	1	1	1	1
합계	78	147	187	285	14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지방자치단체 목표 및 과제현황〉

기관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서울특별시	5	15	28	42	42
부산광역시	10	27	45	77	92
대구광역시	8	19	19	61	111
인천광역시	10	19	47	32	86
광주광역시	7	10	19	35	70
대전광역시	8	13	52	52	61
울산광역시	7	13	13	49	30
경기도	7	17	17	48	48
강원도	8	23	30	68	64
충청북도	5	10	10	48	48
충청남도	7	13	13	37	37
전라북도	7	20	35	89	133
전라남도	5	13	43	41	104
경상북도	4	8	0	110	0
경상남도	7	15	26	38	47
제주특별자치도	5	14	19	42	46
합계	110	249	416	869	1,019

1. 추진계획 개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자체는 2012년 중 총 1,15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관리과제는 869개이며, 각 지자체당 평균 54.3개에 이른다. 16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2. 목표 및 과제현황

16개 지자체의 추진계획은 110개 전략목표와 249개 성과목표 그리고, 869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대 전략목표 중 지자체의 성과목표가 가장 많은 것은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41개, 16.5%)로 각 지역의 브랜드·디자인을 활용한 수익창출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로는 지역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및 행정체계 구축(전담부서 설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규정 제·개정) 등 기반 조성 과제(68개, 27.3%)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총 1,154개에 이르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과제 중 범정부적 협력이 중요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제5장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 · 지원

제1절 208

지식재산 투자전략 수립 · 추진

제2절 219

쟁점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가동

제3절 236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조정

제4절 245

지식재산 국가전략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제1절

지식재산 투자전략 수립 · 추진

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 ·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하였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순수연구개발(기초 · 응용 · 개발 연구) 활동은 지식재산 사업에 포함되나, 시설 · 장비 구축 등은 제외하였다.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규모는 9조1,000억원(국가연구개발 7조8,000억원)으로 총예산(309조1,000억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별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창출 7조4,500억원(82.0%)으로 가장 많았고, 활용 8,849억원(9.7%), 인프라 6,442억원(7.1%), 보호 1,069억원(1.2%)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 사업 수행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3조7,000억원, 40.5%), 교육과학기술부(2조2,000억원), 중소기업청(1조원)순으로 나타났다.

1.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1) 목적 및 필요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원의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지식재산이라는 국가 Capital을 축적 · 활용하여 국가의 근본체질을 전환시키는 종합적 · 미래지향적 전략이며,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사업을 기획 · 조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에도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과 시계하에 지속적 · 일관된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수립되었다.

(2) 지식재산 투자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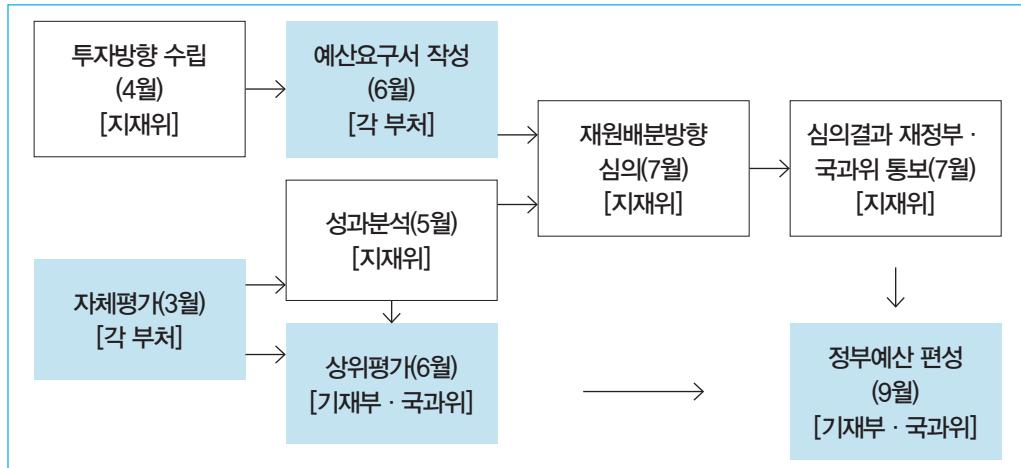
지식재산 사업이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

(3)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심의 개요

재원배분방향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민간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사업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다. 심의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10대 핵심 분야에서 1조7,964억원 규모의 75개 사업(26개 연구개발사업 1조2,832억원, 49개 일반 재정사업 5,132억원)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심의를 수행하였다.

2011년 7월 7~8일 양일간 개최한 지식재산사업 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고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최종 확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절차〉



(4)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4대 기본방향, 즉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식재산 투자의 전략적 확대 ②분야별·동태적(중장기 투자방향 포함) 투자전략 수립 ③지식재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정부·민간 간 역할분담 포함) ④국가재정운영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기반으로 하여 10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하였다.

〈2012년도 지식재산 10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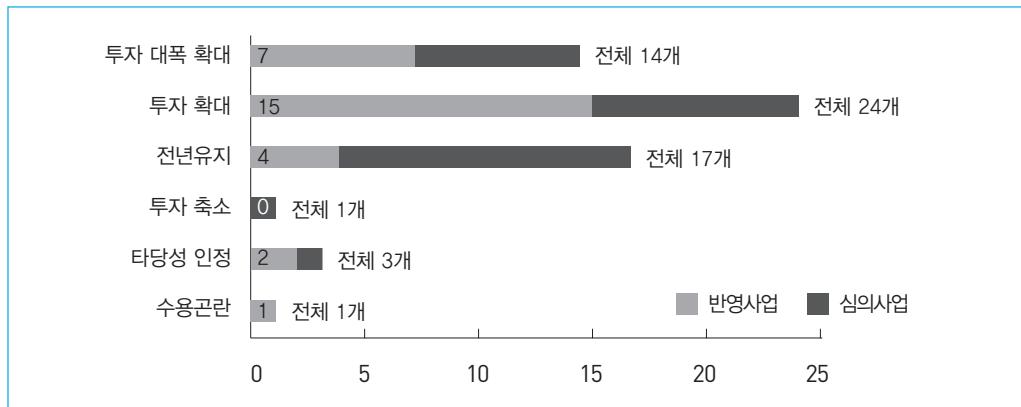
① 표준·원천특허 창출 및 지원	② 지식재산 침해예방·대응강화 및 공정한 이용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에 대한 정부지원 자속 및 확대 ▪ 연구개발 기획 시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목표 및 추진 전략을 제시 제도화, 연구노트 활용도 제고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예산 대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보호분야 전반에 투자 확대 ▪ 디지털·온라인 분야 침해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투자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자속적·안정적 지원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존중문화 조성	④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과과정 연계 체험적·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라인 교육 강화 ▪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전시회·경진대회)을 기술사업화와 연계하여 질적 효과 제고 ▪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지재권 전략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활용 창업 단계별로 자금 지원 및 성공하지 못한 경험도 존중되는 환경 조성 ▪ 저작권을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 개발 ▪ 청년층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교육부·노동부 등) 간 협조를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⑤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역량 강화	⑥ 신지식재산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료 분야 등 전 세계적 보호가 필요한 특허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핵심특허 선별·평가·지원 ▪ 산업별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미활용 특허의 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업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재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적극 추진 ▪ 사업 기획 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채널 확보
⑦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⑧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 기획·조정으로 시너지 창출 및 효율적 재정 운용 ● 지식재산 인력의 원활하고 균형적인 수급을 위해 인력 수요의 구체적 특성과 인력 풀 등에 대한 파악 및 분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기초정보 생성, 지식재산 정보관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인프라 구축 성격의 사업에 중점 투자 ● 농업분야 정보화를 통한 고품질 종자생산 지원 및 국가 유전자원 주권 선점 등의 사업 추진
⑨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⑩ 투자효율성 제고 분야(기술이전·거래 전담조직 지원·육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식재산 활동 핵심주체들의 체계적 연계·협력 및 구심조직 구축 ● 지자체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 ● 지역 대학·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 발굴 및 창업 지원 ● 지역 전통문화 발굴·보호·활용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력이 미흡한 기술 이전·거래 전담조직(TLO)의 역량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추진

(5)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반영 현황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대상사업 75개 중 사업군 10개 사업을 제외한 60개 개별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결과는 29개 사업(48.3%)에 반영되었다. 이 중 56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투자대폭확대 사업(14개)은 7개, 투자확대 사업(24개)은 15개, 전년 유지 사업(17개)은 4개, 투자축소 사업(1개)은 0개가 반영되었다. 신규사업 4개에 대하여는 3개 사업이 재원배분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원배분방향 결과 반영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의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재원배분방향에 앞서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여 각 부처 및 예산당국에게 예산편성 기준을 제공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원배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예산반영 현황〉



경우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을 수립하여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 재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 전략’ 등 4대 핵심전략에 2012년 1,097억엔(전년대비 29.3% 증액)을 반영하는 등 신개념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2011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추진계획」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운용, 보호,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지재권 창출 R&D 투자를 GDP 대비 1.7%(2009년)에서 2.5%(2020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2011년 5월)하고 유럽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투자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정부 예산은 2010년 8조3,000억원, 2011년 8조9,000억원, 2012년 9조4,000억원(2012년)으로 연평균 6.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식재산 강국 원년’을 선포한 2012년도 예산 증가율(5.1%)은 평균 정부 예산 증가율(5.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세계 주요국의 지식재산 투자 증대 추세에 대응키 위해 수립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초기에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 5대 분야별로 2012년도 정부예산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창출(7조5,872억원, 81.0%), 활용(8,173억원, 8.7%), 기반(6,809억원, 7.3%), 신지식재산(1,634억원, 1.7%), 보호(1,236억원, 1.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식재산 창출에 집중 투자해 왔으나, 아직 보호 및 신지식재산 분야 투자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그 투자가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시장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 시스템 등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초기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투자도 중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투자목표 및 3대 투자전략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효율적인 2013년도 국가재정의 투자 운용을 위해 2013년도 지식재산 투자목표와 3대 투자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2.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1)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수립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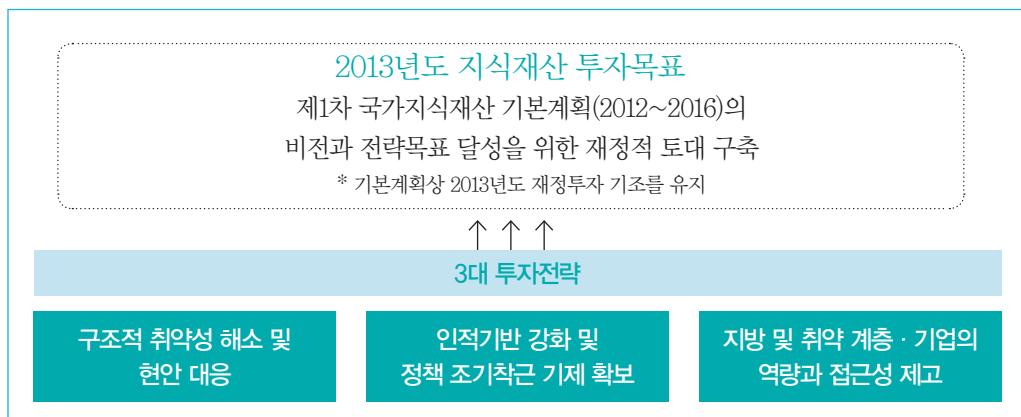
법부처 차원의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이 수립되었으나, 기본계획상의 재정투자계획과 각 부처 예산계획과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2012년 7월 27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동일한 시점에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각 부처에 함께 통보함으로써 각 부처의 2013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에 기준이 될 국가 차원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12년 4월 24일)하고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2012년 4월 말).

(2) 주요국의 지식재산 투자현황

주요국의 지식재산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3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5% 증액(158조2,222억원)한 연구개발비를 책정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공동집행전략」을 통해 보호 및 집행 예산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상표특허청(USPTO)은 2013년 특허심사 예산을 9% 증액(3조3,000억원)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2013년도 지식재산 투자목표 및 3대 투자전략〉



(5)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8대 중점투자방향

2013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방향은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안정적 조기정착, 구조적 취약성 해소, 국제교역 환경변화 대응 및 건강한 지식재산 문화정착을 위해 ①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관리 강화(R&D 성과물의 우수 지식 재산화 및 유지·관리 강화) ②지식재산 침해 단속 등 보호 강화(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③지식재산 인적기반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이라는 3가지 주요 전략적 기조를 핵심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2013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 투자방향〉

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②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핵심기술 관련 분야 집중투자 ■ R&D 성과물의 우수 지식재산화 및 유지·관리 강화 ■ 3D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해외 분쟁대응 지원활동 강화 ■ 특히, 상표, 저작권 침해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③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④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가치평가, 담보제도, 유동화 촉진 ■ 지식재산 전문관리회사 활성화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연구·창작인력 및 전문서비스인력 양성 ■ 초·중·고 및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 보호인식 교육 강화
⑤ 신지식재산의 육성 기반 구축	⑥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관점의 신지식재산 관리체계로 전환 지원 ■ 신제품, 생물자원, 전통자원의 발굴 및 활용 강화 ■ 신지식재산의 융합 촉진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간 정책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및 정책연구 강화 ■ 지식재산 국제협력사업 확대

- ⑦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식재산 관련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강화
 -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강화
 - 지역 전통산업 및 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지원

- ⑧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유출방지 지원
 -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역량 지원

3.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1) 추진경과

2012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에 이어 2013년에는 「정부 지식재산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마련하여 2013년도 각 부처 지식재산사업 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지침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동 중점투자방향을 기초로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2) 지식재산 투자 현황 및 시사점

미국·일본·중국·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자국의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주요 경쟁국 공히 지재권 보호·집행의 제도적 기반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 지식재산 정책 동향〉

- 미국** :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2013년도 연방정부 R&D 예산 5% 증액(특허심사 예산 9% 증액)
- 일본**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2」추진을 통해 최첨단 7대 산업에 대한 국제 표준화 등 4대 핵심전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종합전략 추진
- 중국** : 지식재산 질 향상 및 보호 강화,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2012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추진
- EU** : 유럽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단일시장 전략」추진

우리 정부도 최근 지식재산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2010년 7조1,000억원 → 2011년 8조2,000억원 → 2012년 8조4,000억원),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또 지식재산 창출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보호 관련 예산 투자는 극히 저조하며 지역지식재산 역량 지원 및 강화 관련 예산도 총액 대비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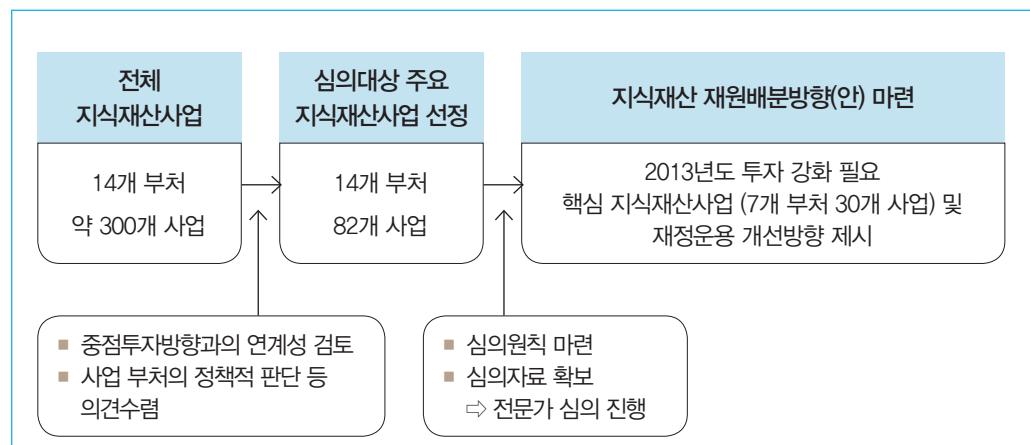
따라서 주요국과의 정책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이행의 기초가 되는 지재권 보호·집행, 지역지식재산 역량,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초기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3) 2013년도 재원배분방향 심의 개요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 초기에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및 경쟁국 정책동향과 시장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부처의 정책적 판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대적으로 중요한 14개 부처 82개 사업(2013년 예산요구액 : 2조2,452억원)을 2013년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집중 심의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의 심의과정의 일관성 확보 및 재원배분방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원칙을 마련하고 사업별 세부 심의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부처 자율성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심의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33명으로 ‘지식재산 심의반’을 구성, 심의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반의 의견서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하였다.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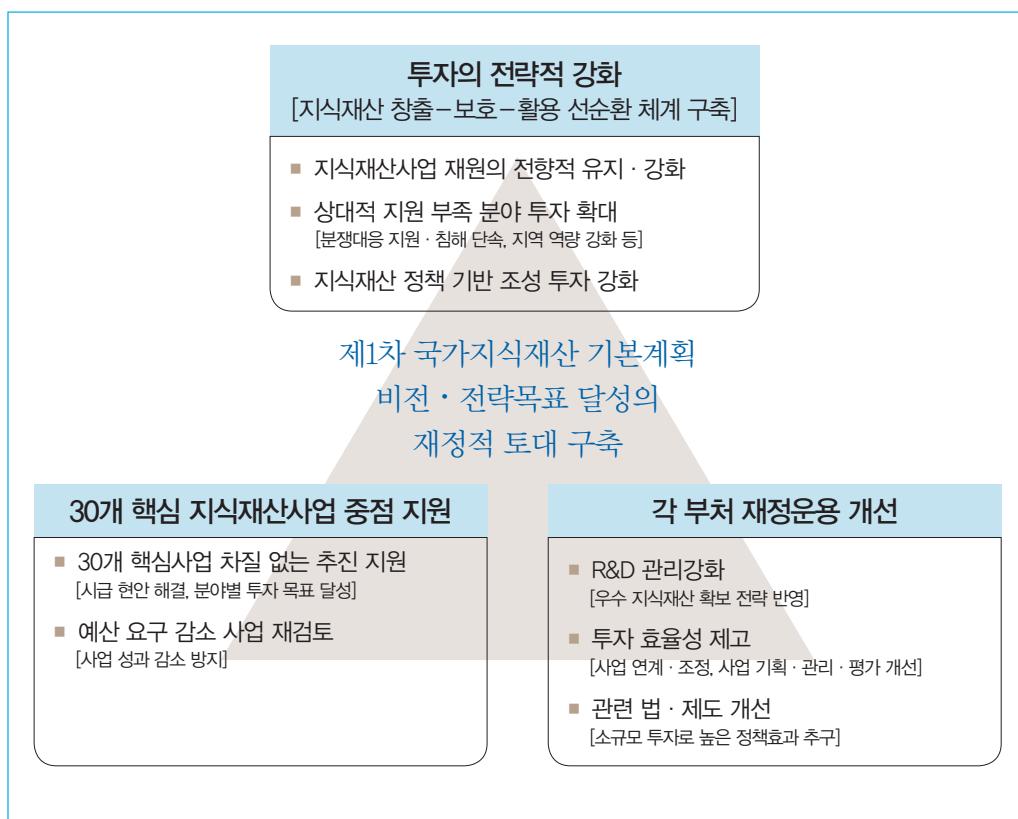
(4)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의 비전·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①지식재산 투자의 전략적 강화 ②핵심 지식재산사업(30개) 선정 및 추진 중점 지원 ③각 부처 지식재산사업 재정운용 개선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중요성·시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분야 및 지식재산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바,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 강화, 지역지식재산 역량 및 지식재산 기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지식재산사업 중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 및 분야별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 강화, 관련 사업들 간 연계·조정 강화 등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사업 재정운용 개선을 추진한다.

제2절 쟁점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가동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7월 심의 · 의결 후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되었는바, 기재부 및 국과위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심의 내용을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입 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향후 재원배분방향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속적인 재원배분방향 수립 체계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1월 31일)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이하 분쟁해결 선진화 특위) 구성 · 운영(안)'을 의결하였다.

동 안건에서는 특별전문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였다. 특별전문위원회는 특허소송 관할 제도 등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특별전문위원회는 ①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쟁점 도출 ②국내 · 외 관련 제도의 도입배경 ·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정책적 적용가능성 검토 ③이해관계자 간 협의 및 이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 ④그간 논의되어 온 사안을 포함하여 소송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를 궁극적 목표로 다각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관계자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와 관계부처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게 하였다. 위원 임기는 특별전문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하였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8개월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구성 원칙에 따라 2012년 3월 7일, 법무부·특허청·상공회의소·지식재산학회·발명가협회·변호사협회·변리사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10인의 위원으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현 직위
민간 (6인)	위원장 (과기계) 학계	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농공학과 석좌교수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전문가 발명계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홍기 지식센터 대표
	변호사 변리사	권영모 법무법인광장 IP팀 파트너 김성기 리인터넷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산업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회장
	지재위 법무부	박성준/손영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박근범/장영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특허청	이영대/이준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정부 (3인)		

특위 위원장(이광형, KAIST 석좌교수) 위촉식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식재산 정책 현안 해결에 착수한 만큼, 어렵더라도 철저히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 역시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특위는 3월 출범한 이후 매월 1회 회의 개최 및 수시 의견 교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위 구성 후 제1차 회의(3월 7일)에서는 특위의 목표와 지향원칙 및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번 특위에서는 현안과제인 ‘특허소송 관할집중’과 ‘소송대리인 전문성 제고’의 두 아젠다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기타 다양한 소송제도 개선방안은 금번 특위가 아닌 보호 전문위원회 등 상시적 논의기구를 통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특위 논의 시 우선시되어야 할 지향원칙에 합의하였는데,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특정 직역이 아닌 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논의 방법으로는 그간 제시되어 온 주요 대안의 장단점과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는 두 이슈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주요 대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그간 ‘관할집중’과 ‘공동대리’ 이슈가 함께 논의되어 어느 한 이슈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 두 이슈를 분리하여 검토하기로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

〈특별전문위원회 논의 원칙〉

〈특허소송 관할 집중〉

- ① 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의 편익 최우선
- ②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제고
- ③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 도모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 ① 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의 편익 최우선
- ②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제고
- ③ 소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기술 전문성의 균형과 조화

1차 회의 개최 시 위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장을 방문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성 높은 분쟁해결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직역 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전이 미흡하였으므로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된 특위가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로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광형 특위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2012년 국가 R&D로 16조원을 투입하지만

지재권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특위 역할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송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들 역시 특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집단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위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위 운영기간 내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제도분석·해외사례 조사·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정부 차원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에 대한 입법절차·방법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조속히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부·입법부 등과의 공감대도 확보하여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3)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2년 5월 30일에는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한 선진화 방안 도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변호사계·변리사계·정부 및 법원·국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소송 관할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발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두 명의 연사가 토론회 개최배경과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는데,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은 ‘지식재산권 생태계 현황과 문제점’ 발표에서 “지재권 침해 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의 뿌리이다”고 지적하면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분쟁해결절차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하였고, 한상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특허분쟁의 세계적 모델’ 발표에서 “투명성·신뢰성·신속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특허분쟁해결의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거시적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발표’에서는 과기계·산업계·변호사계·변리사계·사법계 등 각계 전문

가 6명이 우리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토론회 말미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그간 지식재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느낀 특허분쟁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히 제언하였다.

〈토론회 개최 계획 개요〉

시간	구분	담당
13:30~14:00(30분)	등록	
개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14:00~14:04(4분)	환영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
발표 및 토론 (좌장 : 아광형 특별전문위 위원장)		
14:04~14:05(1분)	진행순서 및 발표자 소개	사회자
14:05~14:20(15분)	주제 발표 (2)	①지재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14:20~14:35(15분)		②특허분쟁의 세계적 모델
14:35~15:30(55분)	패널 발표 (6)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과기계(손웅희 생산기술연구원 소장) 변호사계(강희철 변협 부회장) 산업계(김정중 LG이노텍 상무) 변리사계(고영희 성창 대표변리사) 산업계(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사법계(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15:30~16:00(30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좌장
폐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윤종용 위원장은 토론회 전반부의 환영사에서 “이제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기업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소송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한데 모음으로써 ‘국민의 이익’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2012.5.30)

한편, 토론회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토론회 논의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고 향후 특위 논의에의 반영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검토하였다.

(4) 특위 연장 운영 결정 및 제7차 지재위에 2012년도 운영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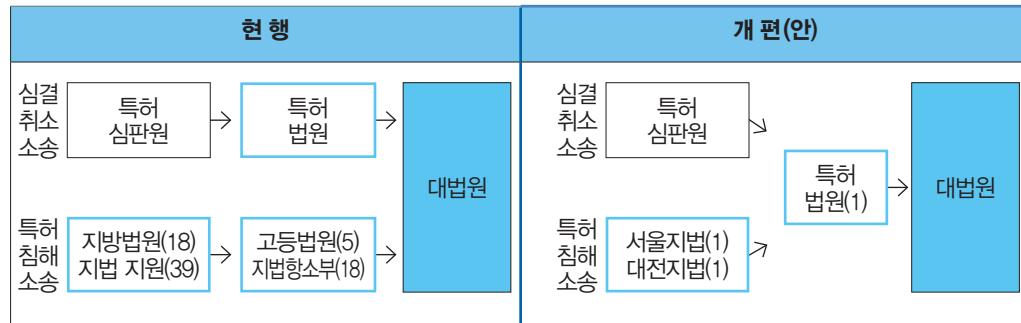
특위는 당초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논의과정 중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지재위 본 위원회의 서면의결을 받아 당초 운영 시한인 11월 6일에서 4개월 후인 이듬해 3월 6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특위 연장과는 별개로 특위 출범 이후 2012년 한 해 동안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제7차 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12월 12일). 주요 내용은 2012년도 12월 초를 기준으로 총 9차례에 걸친 특위의 회의개최 실적과 공청회 개최(5월 30일) 및 국회 토론회 개최지원(지경위·교과위·법사위 공동, 11월 7일) 등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특위 논의에 대한 사법부와의 정보공유 및 지속적 협의 추진 활동 등 운영경과에 대한 보고였다. 이어서 그동안 실제 특위에서 논의한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과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한 중간 결론인 개선방안(안)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특허소송 관할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p>(1안)</p> <p>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방법원’ 전속관할, 2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개편</p> <p>* (유사 입법례) 일본: 1심은 도쿄·오사카 2개 지방법원으로 집중(2004)하고,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관할집중(200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항소심 관할집중(198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분쟁의 신속성·전문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판결의 일관성 확보로 기업 경영 리스크 감소에 기여 다만, 침해소송 수요자의 80%가 수도권에 분포하여 특허법원 소재지인 대전으로의 항소심 집중은 접근성이 저하 저작 	<p>(2안)</p> <p>특허침해소송 1·2심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1심의 경우 ‘특허법원 서울분원(부)’를 신설하여 중복관할 허용</p> <p>* (유사 입법례) (유사 입법례) EU: 1·2심 모두 ‘유럽통합특허법원’(파리)으로 집중하되, 1심의 경우 두 분원(런던 및 뮌헨 section) 설치 합의(2012) 대만: 1·2심 모두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자재사건 관할 집중(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고법 관내 당사자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특허법원 전문성을 활용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일관성 제고 가능 반면, ‘특허법원 서울분원(부)’에 1심 사건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대전 소재 특허법원의 형해화 우려와 심급체계 개편에 따른 부담감 존재
<p>(3안)</p> <p>특허침해소송 1심은 전국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 2심은 현행대로 5개 고등법원 및 지법항소부 관할 유지</p> <p>* (유사 입법례) 독일: 특허권 침해사건은 12개 민사법원이 관할, 특허무효소송 등 심결취소소송은 연방특허법원이 관할(19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심의 경우 당사자 선택권 보장 및 전문성 보강은 일부 가능하나, 항소심 관할 이원화로 인한 소송 효율성·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는 미해결 	<p>(4안)</p> <p>특허침해소송 1심은 3안과 동일, 2심은 서울고법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집중하여 판결 전문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심결취소소송과의 관할 이원화로 인한 소송 효율성·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

결과적으로 특허침해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 전속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개편하는 데 특위 위원 간에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즉, 서울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법 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을,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법 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대전지법’을 전속 관할로 하는 것이다. 한편, 2심 사건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접근성 저하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특허법원 서울부’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추가로 있기도 하였다. 특위는 동 개선방안을 통해 1심법원의 사건 수 증가로 인한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2심사건의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 동일관할로 인한 일관성 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논의한 아젠다인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변리사 단독대리 허용,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변리사 진술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어떤 대안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연장된 운영기간 동안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추후 논의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특허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소송과 특허·기술법 전문성 모두를 갖춘 자에게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되 중·단기적으로는 특허변호사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5) 향후 계획

특위는 2013년 3월 6일까지 두 가지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으로서 이후 가장 먼저 개최되는 지재위 본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재위 본 위원회 의결을 얻고 나면 법무부 및 사법부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제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1) 추진배경

원천기술 등 강한 지재권 확보, 기술 간 융·복합 추세 등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재권 귀속,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상호 간 시각차가 협력 연구·개발(R&D) 등 개방형 혁신 활성화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여 협력연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산·학·연 협력연구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2009~2010년 동안 정부(지경부) 측 주도로 선진사례 검토 등을 통해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 선행 노력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지재권 소유의 형태 결정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도출이 무산되었다.

〈산·학·연 협력연구 관련 해외사례〉

- **미국** 정부연구개발은 연구개발기관이 지재권 귀속(Bayh-Dole Act.) 사적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없으나, 연구 기여도에 따라 공동소유
- **일본** 기업지원형 공동연구개발 시는 공동소유, 기업지원형 수탁연구개발 시는 실질적 연구수행자인 대학 소유 원칙
- **영국** 5개 Lambert 유형 구분(대학소유–유형 1/2/3, 기업소유 – 유형 4/5)

2011년 7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모두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학·연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과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년)」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부합하고 기업의 시장기회를 넓히며 학·연의 연구역량을 높여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R&D의 양적·질적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지경부의 선행 노력 추진 경과

지경부는 2009년 9월 산학 협력연구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대학(산학협력단장 협의회), 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로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 ‘산학 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산·학 협력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산·학계 면담’ 등을 통해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산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 조정(안)을 마련(2010년 7월 22일)하였다.

이후 조정(안)에 대한 산·학계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산·학 자문위원회에서의 검토·논의(2010년 10월 13일, 11월 3일)를 통해 협약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나, 최종 합의과정에서 연구결과의 성과물 귀속 방식, 지재권 소유권자 결정방식 등에 대한 신학 양측의 합의 도출이 무산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최종(안) 확정과 활용은 불가피하게 보류되었다.

(3) 산·학·연 협력연구의 주요 쟁점

지경부 등 선행 논의에서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쟁점이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는 ‘협력연구 성과물인 지재권 소유’에 관한 쟁점이다. 지재권 소유와 관련해서는 3가지 유형이 제시될 수 있는데, 연구비 부담 주체인 ‘기업 단독소유’, 발명자 귀속원칙에 따른 ‘학연 단독소유’, 기업과 학연의 ‘공동소유’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단독소유’에 대한 학연의 의견은 기업의 지재권 실시에 대한 수익 배분이 전무하므로 연구자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학연 단독소유’에 대하여는 기업 측은 연구비 부담으로 학연에게 충분한 연구수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지재권의 제3자 실시 또는 처분의 가능성으로 인한 비즈니스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공동소유’의 경우에 대하여도 학연 측은 자기실시 기회가 부재하며, 제3자가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연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반대하였다.

두 번째는 ‘지재권의 제3자 실시 및 처분’에 관한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학연은 제3자 실시 또는 처분 시 기업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되 기업이 거부할 경우 동의 없이 제3자 처분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은 제3자 처분 시 학연은 반드시 기업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세 번째는 ‘지재권의 기업 자기실시 또는 제3자 실시’에 대한 수익의 연구자 보상에 대한 쟁점이다. 이에 대해 학연은 기업의 직무발명수준 또는 매출의 일정비율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업은 원칙적으로는 실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기업은 수익의 배분이 아닌 인센티브 개념으로 보상할 수는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

단독소유 시 자기실시에 따른 수익배분과 Cross 및 Package-Licensing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도 기업 측에서 반대하고 있었다.

네 번째 쟁점은 ‘지재권의 출원·등록·유지 관련 비용 부담’ 관련이다. 이에 대해 학연은 지재권을 학연이 소유하더라도 자기실시 등에 대한 실익 창출이 어려우므로 관련 비용을 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기업은 소유권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 간 입장 차이가 컸다.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협력연구 과정에서의 ‘제3자 지재권 침해에 대한 협약, 보증 및 면책’에 대한 것이다. 학연은 제3자 지재권 침해에 대해 연구자가 고의로 침해하였는지 과실로 침해하였는지를 밝히기가 어려워 사실상 연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연구수행 주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히 침해에 따라 제3의 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화에 실패한다면 기업 존폐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4)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지식재산 관점에서 산·학·연 협력연구의 장애가 되는 쟁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2012년 3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산·학·연 특위)’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동 산·학·연 특위의 주요 역할과 목적은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 협상 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상호 준거(Mutual Reference)로 활용할 수 있는 협약 가이드라인 및 모범 협약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산·학·연 특위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민간위원 9인(산업계 2인, 학계 2인, 연구계 2인, 변호사 1인, 변리사 1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1인),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5인(지재위, 지경부, 교과부, 특허청, 국과위) 등 총 15인으로 구성하였다.

산·학·연 특위는 2013년 1월 종료 시까지 총 7회에 걸쳐 특위를 개최하였으며, 정책 연구용역,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산·학·연 개별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12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산·학·연 특위 개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특위(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위 구성 배경 및 개요 ■ 선행 추진경과 및 쟁점 검토 ■ 특위 지향 원칙 및 운영 계획
제2차 특위(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설문조사 디자인
제3차 특위(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 5대 주요 쟁점 심층 논의 ■ 설문조사 중간분석 결과
제4차 특위(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결과 ■ 가이드라인(초안)
제5차 특위(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조정(안) ■ 가이드라인 활용도 제고 방안
제6차 특위(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제시 의견 검토 ■ 가이드라인 수정방향 논의
제7차 특위(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특위 의결

(5)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협력연구 ‘협약 관련 일반 사항(현황)’, ‘협약 시 쟁점 사항’ 및 ‘협력연구 협약 개선 방안’ 등 3개 파트 26개 문항을 설계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소를 구분하여 실시(5월 8~25일)하였으며, 총 408개 기관에 배포하여 33.3%의 응답률(산 27.4%(59/215), 학 36.4%(56/154), 연 53.8%(21/39))을 보였다.

〈설문조사 세부 문항〉

파트	문항
(Part A) 협력연구 협약 관련 일반사항 - 8문항 -	① 최근 3년간 협력연구 실적
	② 협력연구 유형 구분 여부
	③ 유형 분류 현황
	④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협약서 보유 여부
	⑤ 협력연구 유형별 표준협약서 보유 여부
	⑥ 지재위의 가이드라인 및 모범 협약서 마련 시 유용성
	⑦ 협력연구 결과인 특허의 소유 현황
	⑧ 협력연구 협약상 제반문제의 협력연구 활성화 지장 초래 여부
(Part B) 협력연구 협약 시 쟁점사항 - 4문항 -	① 협력연구 협약 시 장애 요인이 되는 협약조항
	② 협약조항별 협력연구 협약 무산(분쟁) 발생 정도
	③ 협약 조항별로 잠재된 문제점
	④ 기업의 학연에 대한 지재권 보상 수준
(Part C) 협력연구 협약 개선 방안 - 14문항 -	① 특허 소유권에 대한 견해
	② 협력연구 유형별 소유권 결정
	③ 특허권 실시, 처분 및 보상에 대한 견해
	④ 특허권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
	⑤ 제3자 특허권 침해 책임(보증 및 면책)에 대한 견해
	⑥ 연구 중 학연 기보유 지재권 활용에 대한 기업 보상 필요
	⑦ 연구 종료 후 학연 기보유 지재권 활용에 대한 기업 보상 필요
	⑧ 연구 종료 후 학연의 유사연구 제한에 대한 견해
	⑨ 합리적인 유사연구 제한 기간에 대한 견해
	⑩ 연구 자체보상금에 대한 견해
	⑪ 학연의 연구결과 발표 허용에 대한 견해
	⑫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동의 기간에 대한 견해
	⑬ 협상력 우열로 인한 협약상 불이익 사례 유무
	⑭ 기타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력연구 결과물인 지재권의 소유, 지재권 실시 및 처분에 따른 수익 배분의 문제가 협력연구 활성화에 주요 장애요인이며, 협약 가이드라인 및 모범 협약서의 마련 필요성을 산·학·연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동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협약 개선 방안에 산·학·연 각계의 의견들은 산·학·연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논의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가이드라인(초안)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6)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초안) 공청회 개최

9월 19일(수)에는 산·학·연 특위에서 마련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초안)’에 대한 산·학·연 관련기관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초안) 공청회’를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특위 위원, 패널 토론 참석자, 산·학·연 관계자, 변리계 및 법률계 관계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이드라인 설명회’,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문화 정착 방안 패널 토론’ 및 청중이 참여한 ‘가이드라인(초안) 종합 토론’ 등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패널 토론은 기업 대표(2인), 학계 대표(1인), 연구계 대표(1인), 지재위 위원(1인), 정책 연구용역 수행자(1인) 및 법률 전문가(1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영일 산·학·연 특위 위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졌다. 패널 토론에서는 산과 학·연의 관계자 모두가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협력연구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실시하는 게 급선무’이며,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청중과 함께한 종합토론에서는 사적자치에 의한 민간 R&D에 관련된 영역이니 만큼 정부 관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산·학·연 협력연구 현장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날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공청회 개회를 알리는 인사에서 “국내외 기업 간의 특허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융·복합 추세 등 시장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한 지재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산·학·연 상호 간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협력연구가 진정한 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산·학·연 모두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초안) 공청회

(7)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산·학·연 특위는 총 7차례의 특위 논의, 설문조사, 산·학·연 기관 개별 간담회 및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에 밝은 기업에게는 충분한 지재권 실시의 권한을 보장하고, 좋은 지재권 창출을 위한 대학, 연구소의 노력에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된 지향점으로 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시공정하고 객관적인 상호 준거로서 활용가능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2012년 11월)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국가 R&D와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개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유형별 권리 계약서 양식, 가이드라인 해설서, FAQ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협력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소유권의 귀속, 실시권 및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산과 학·연이 상호 수용 가능한 6가지 협력연구 계약서 권장 유형을 제시하였고, 협력연구 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6가지 중 적합한 유형을 단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6가지 각 유형별 권리 계약서 양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협력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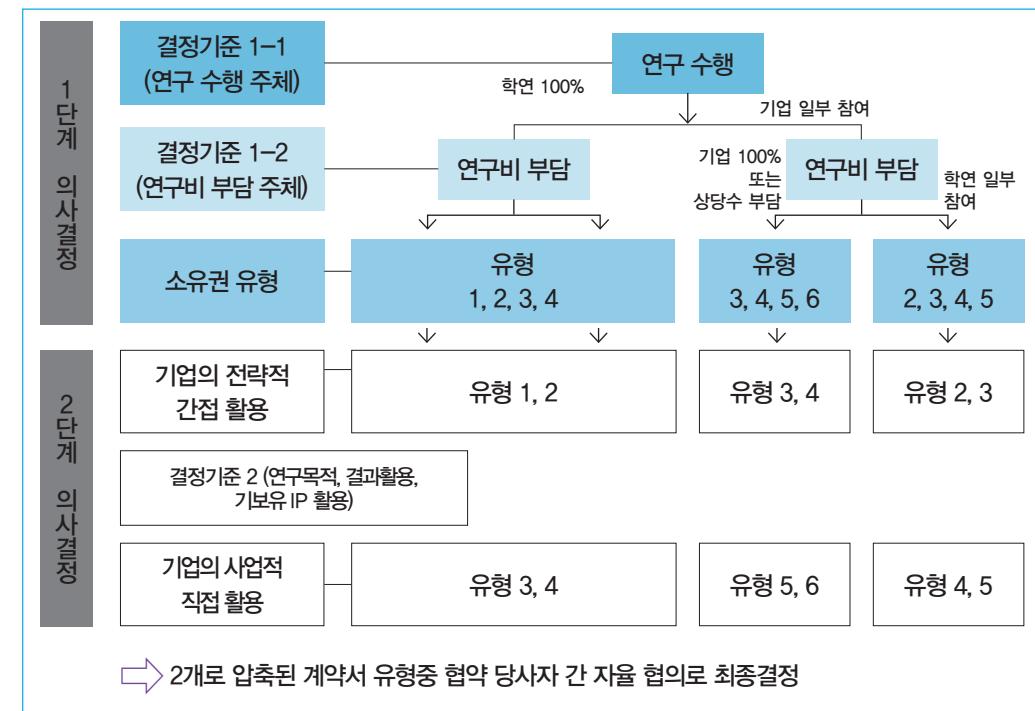
의 경험이 부족하고 법무팀 등 전문적 협상 조직을 갖추지 못해 협력연구 협약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중소기업과 군소대학이 협약을 수행할 때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대안으로서의 기능성	선후도
학·연 단독 소유	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하여	(제외) 기업 수용 곤란	학연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하여	유형 1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하여	유형 2	
	기업에 무상 전용 실시권 하여	(제외) 학·연 수용 곤란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5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6	
	수익 배분, 보상 없음	(제외) 학·연 수용 곤란	

6가지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중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모델로 2단계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수행 주체, 연구비 부담주체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를 결정(6개의 유형 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하도록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연구 목적, 결과 활용, 기보유 지식재산(IP)의 활용 등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다시 좁힌 후 협약 당사자 간에 자율협의로 계약서 유형을 최종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사적자치에 의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1단계 및 2단계 의사결정에 따른 최종 계약서 유형 선택 방법〉



(8) 향후 계획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의결(2012년 11월 28일) 및 제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2012년 12월 12일) 등을 통해 확정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은 교과부, 지경부, 국과위,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공동명의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공고(2012년 12월 21일)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정한 산·학·연 협력연구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관계부처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산 노력과 아울러 ‘산·학·연 협력 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학·연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통해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연구 협약주체 보호 및 지원활동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조정

1. 2012년 시행계획 평가

평가의 목적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평가의 법적근거로서 「지식재산 기본법」(제10조)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2012년도 시행계획은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차근이 시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로 추진하는 시행계획임을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수범사례 확산 및 애로사항 발굴 등을 통한 장애요인의 신속한 제거 등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의 중복을 예방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 차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방식 및 지표 설정 등에 반영하고, 또한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중점추진과제를 수행하는 17개 중앙행정기관 및 16

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21개의 핵심 성과목표를 정책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의 기본체계를 활용하여 「정책형성–집행–성과」 과정 전반을 포괄하되, 지식재산 정책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지식재산계획의 평가를 위한 지표 구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지표
정책형성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사전분석 · 의견수렴의 충실성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2-1. 추진체계의 충실성 2-2. 자원 배분의 적절성
정책집행	3. 추진과정의 효율성	3-1. 추진일정의 충실성 3-2. 유관기관 · 정책과의 연계성 3-3.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4. 정책확산 노력 수준	4-1. 정책소통 · 홍보 · 교육의 충실성
정책성과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5-1. 성과목표 달성을 5-2. 정책 효과성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집행에 반영하고,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는 관계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 등 정책 성과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한편,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장애요인 해소 및 보완대책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기관은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 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책지원을 실시한다.

2.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책 마련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 지역으로 확대가 전망되고 분쟁의 대상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제127차 국가정책 조정회의 안건으로서 ‘특허분쟁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상정,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재권 분쟁상황을 평시-경고-대응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분쟁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분쟁 단계별 대응 지원계획은 분쟁 징후가 아직은 없는 평시 단계에는 기업 CEO 대상 포럼 확대, 지재권 용·복합(특허+상표+디자인) 전략 등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력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분쟁 징후가 나타나는 분쟁경고단계에는 분쟁예방 컨설팅 우선실시, 소송보험 가입 유도, 기업체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경험 공유 및 공동대응 유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 동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에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한 분쟁대응단계에는 표준매뉴얼을 통해 대응요령 안내, 해외 대리인 정보 DB를 구축·제공, 미국 등 국가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책 추진 관련해서는 법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의 보호전문위원회 합동회의를 운영하고, 디자인 보호 강화 등 국내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추진하는 등 지재권 분쟁대응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이밖에 총 19개에 달하는 범부처 추진과제의 상세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소관부처
		2012	2013	2014	
1.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계별 대응 지원					
가-1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제고				특허청
가-2	우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특허청
가-3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고용부, 특허청
가-4	기업수요 맞는 분쟁대비 「기초정보」 제공				법무부, 특허청
가-5	수준별 맞춤형 분쟁인력교육 강화				문광부, 특허청
나-1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지경부, 특허청
나-2	기업 맞춤형 분쟁 정보 · 사례 전파				특허청
나-3	특허 험닥터 제도 추진				특허청
나-4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원				지경부, 특허청
나-5	지재권 풀(pool) 구축을 통한 분쟁예방				교과부, 지경부, 특허청
나-6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유도				특허청
나-7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설치 · 운영				특허청
다-1	경고장 단계 : 대응요령 안내 ·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특허청
다-2	소송 단계 : 해외 대리인 정보, 국가별 소송 정보 제공				특허청
2. 지재권 분쟁 대응기반 조성					
가-1	고급 분쟁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지경부, 특허청
가-2	관련기관 간 연계지원체계 구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나-1	지재권 제도 비교 분석 및 홍보				특허청
나-2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외교부, 특허청
나-3	국내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특허청

‘국제특허분쟁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재위에서는 2012년 4/4분기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지재권 법률자문단 구성(법무부), 고용창출지원금 대상에 지재권 담당자 추가(고용부), IP-R&D 확산지원본부 신설(특허청), 현지대리인 표준DB 구축(지경부), 주요 공관에 지재권 담당관 지정(외교부) 등 추진상황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지식기반 경제가 본격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됨에 따라, 혁신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양성·확보가 우리 시장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어 시장수요에 대한 수급전망 분석 및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는 범국가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년)'을 마련하였다.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3만명(2012년)에서 5만명(2017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육성 등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대응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30만명에 대한 교육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①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②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③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④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 ⑤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등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및 77개 관리과제로 구성하고 향후 5년간 총 3,15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5대 부문별로는 ①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 7,000명(2012년)에서 2만8,000명(2017년)으로 확충하고, 3만명(2013~20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②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3,000명(2012년)에서 2만2,000명(2017년)으로 확충하고, 2만명(2013~20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③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공계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2017년 최종 목표연도 기준 4만명의 기초교육(이공계학부생의 20% 이상으로 현재의 3배 수준)과 이공계 대학원생 3만명의 융합교육 실시 ④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지자체에 지역 발명교육센터 운영 ⑤지식재산 인력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17곳 구축 및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 인재강국

추진 목표(2013~2017년)

-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확대 : 3만명(2012) → 5만명(2017)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 2만개)
- 지식재산의 대중화 및 親지식재산 문화 구현※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인력 양성교육 : 30만명(2013~2017)
-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77개 관리과제(재정투입 : 총 3,145억원)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1)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2)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 (3)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
- (4)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
-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1)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
- (2) 서비스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3) 저작권 인력의 경쟁력 강화

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1)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 (2)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
- (3)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 (4) 신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4.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 (1)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 (2)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 (3)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 (4) 지식재산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 (1)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2)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
- (3) 교수인력 양성 및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 (4)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제 구축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계획이 시행되면 미국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4,0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실현(2012년, 미 상무성 보고서)하였듯이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경제발전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제정 논의 참여

(1)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강화 논의

법무부에서 발간한 『2010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범죄는 해마다 등락이 있지만 2005년 3만3,348건에서 2009년 6만8,893건²⁸⁾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부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특허청-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1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조사기업의 71.9%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의 강화를 들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올리기 위한 우선과제로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은 2011년 3월 『지식재산집행 입법권고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며 영업비밀,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지식재산권 범죄 연방판결지침에 대해 상향을 권고하였으며, 영국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에 영국지식재산범죄그룹(UK IP Crime Group)을 신설하였고 매년 지식재산 범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제정 논의 참여

이러한 국내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하였다.

28)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사범이 대다수를 차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패널참여²⁹⁾, 양형기준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공식 의견 전달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기준 제정으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 위원회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균 1년 내외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지식재산권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3년³⁰⁾, 국외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5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기존의 양형관행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확정하여 의결하였다. 제정된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범죄유형	구분	감경	기본	기중
	등록권리침해행위 ³¹⁾	-1년	10월~2년	1년6월~3년
저작권침해	저작재산권침해	-10월	8월~1년6월	1년~3년
	기타저작권침해 ³²⁾	-8월	6월~1년4월	10월~2년
영업비밀 침해행위	국내침해	-10월	8월~1년6월	1년~3년
	국외침해	-10월~1년6월	1년~3년	2년~5년

(3)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범죄 처벌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제정으로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대응강화 추세 및 국내의 처벌 강화요구와 개별 지식재산권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더욱 진일보한 형사 사법적 정책의 수립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하며,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5. 2013년 시행계획 수립

(1) 2013년 시행계획 개요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총 70개 전략목표, 131개 성과목표 및 256개 관

29)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6차 공청회(2012년 3월 26일)

30)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기중요소가 큰 경우의 최대 기중적 형량범위

3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침해

32) 저작인격권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제4절 지식재산 국가전략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리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은 총 109개 전략목표, 254개 성과목표 및 866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총 2조4,411억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조6,0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정부 예산제출안 기준).

(2) 8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

위원회는 2013년도에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8대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8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 · 표준 특허 창출 확대 ■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 글로벌 ·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소프트웨어 · 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소 · 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 직무발명 보상 및 산 · 학 · 연 협력연구 확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종 · 생물자원 · 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1. 2011년 정책연구용역

2011년 7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2011년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원년임을 감안하여 지식재산 정책에 기동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개발과 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특히 비중을 두어 수행하였다.

(1) 지식재산 정책 분야

①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립 · 추진 중인 지식재산 전략의 실태는 물론,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조사 ·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일관된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②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체계 구축

지식재산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제도 및 평가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다양한 정부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2) 창출 분야

① Open Sourc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조성 방안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를 통한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도모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의 법률적 문제 해결안,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

(3) 보호 분야

① 지재권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적절성 확보 방안

우리나라 현행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 산정기준·경향성과 해외 지재권 손해배상 산정 관련제도 조사분석을 통해 산정기준 보완방향과 증거조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등 관련 제도 개선안 및 대안을 제시

② 지재권 소송의 고의적 지연 및 남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악의적 소송제기 및 소송지연에 관련된 수집 가능한 국내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부당한 소송제기 및 소송지연에 대한 일반적 이슈 파악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

③ 지식재산 분쟁에 따른 우수기술의 시장 실패사례 분석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 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도 무효심판 등 지식재산 분쟁을 거치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상실한 대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정책 제언

(4) 활용 분야

① 글로벌 시장 지향적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개발 및 환경 조성 방안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지식재산 기반 주요 경제적 가치창출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의 사업화 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효과적 가치창출 모형의 탐색 및 개발을 추진

(5) 기반 분야

① 2011년 1차 지식재산 정책연구사업

- 2012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설정 : 지식재산 관계부처가 독자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중복 예산집행 및 사업공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으로 국가지식재산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 지식재산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 : 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분석 체계를 설계하고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지표 개발 및 평가 : 지식재산 경쟁력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모형 적용 등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 경쟁력의 비교·평가 및 견증을 위한 연구
- 국가지식재산 표준분류체계 방법론 연구 : 효과적인 중장기 지식재산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관련 유사 분류체계 및 지식재산 관련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 지식재산 표준분류체계 마련 방법론 연구

②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우리나라 각 부처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 및 총체적인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지식재산 인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시

〈2011년도 지식재산 정책연구용역 총괄표〉

분야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용역기간
정책	국가지식재산전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12.15~2012.6.30
창출	Open Sourc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조성 방안	한국오픈소스 유한회사	2011.12.27~2012.7.24
보호	지재권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적절성 확보 방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12.29~2012.7.25
	지재권 소송의 고의적 지연 및 남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무법인 율촌	2011.12.20~2012.6.17
	지식재산 분쟁에 따른 우수기술의 시장 실패사례 분석	지식재산전략연구원	2011.12.29~2012.6.26
정책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체계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2011.12.28~2012.7.25
활용	글로벌 시장지향적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개발 및 환경 조성 방안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12.29~2012.8.25
기반	2011년 1차 지식재산 정책 연구사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7.4~2012.4.10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12.19~2012.6.16

2. 2012년 정책연구용역

지식재산강국 원년을 선포한 2012년에는 기존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활용 분야와 새로운 미래전략 분야로 부각되는 신지식재산 분야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였다.

(1) 지식재산 정책 분야

① 지식재산 사업의 2013년도 재원배분방향 및 2014년도 중점투자방향 설정 연구

지식재산 관련 정부사업의 면밀한 투자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재정사업 재원배분 및 효과적인 재원 투자방향 설정 연구

② 지식재산 전략 추진방향 및 체계 발전 방안 연구

대내외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전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략 추진체계 발전방안 마련

(2) 활용 분야

①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 금융의 범주, 유형 및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 조사·평가 및 해외 지식재산 금융의 실태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② 기술수출제한규정의 합리적 발전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해 현행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규정을 파악하여 제약 요건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법과 제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

③ 국내 중소기업 특허의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의 합리적 지원방안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외특허출원 전용 펀드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④ 지식재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과 정책 방향 연구

지식재산 산업의 노동시장 구조, 일자리 창출 효과 및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식재산 산업의 고용창출 및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3) 신지식재산 분야

① 신지식재산 분야 국제 논의 및 협상 대응방안 연구

신지식재산 보호·활용 체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개별 국가의 보호수준, 정책방향 조사분석, 우리나라 신지식재산의 분야별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해 FTA 체결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전략방안 수립

② 유망 신지식재산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과학기술,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신지식재산 분야를 발굴하고 유망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4) 보호 분야

①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글로벌 IP 협력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합리화를 위해 균형 있는 분석을 위한 다양한 조사,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사례의 심층 분석 등을 통해 특허소송 개선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검토

② 지재권 소송에서의 증거절차 등 권리 구제 실효성 확보방안

국내 지식재산소송 관련법 및 일반소송과의 차이점 등 현황 조사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권리범위 해석, 증거절차 개선, 비밀정보 보호 강화 등 개선방안 검토

③ 해외 지식재산 침해 조사방법론 및 지표개발

해외 지식재산 침해경로, 침해유형 및 침해조사 방법 등을 조사하고 주요국의 지재권 보호시스템과 지재권 침해조사방법론 비교·분석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보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

(5) 창출 분야

① 국내 표준특허 창출기반 확대 지원방안

주요 표준화기구 및 특허 풀(Patent Pool) 표준특허 현황, 주요 선진국의 표준특허 지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효율적인 표준특허 확보 방안 및 부처별 표준특허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배제 및 연구개발-특허-표준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지원방안 수립

② 지식재산권 관점의 기술전략 로드맵 설계 및 수립 방안 연구

기술로드맵 수립현황 및 방법론, 미래유망기술 발굴 방법론, 정부 R&D 과제 기획현황 조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기술전략 로드맵 개념 정립 및 콘텐츠 설계 · 수립 방안 제안

③ 인문융합 R&D 지원 확대를 통한 저작권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인문융합 R&D에 대한 개념 정의, 트렌드 예측 및 외국 선진 사례 조사 · 분석 · 평가와 함께 인문융합 R&D 지원을 통한 저작권산업 발전 전략 제시

(6) 기반 분야

① 산 · 학 · 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정협약제도 정착방안 연구

산 · 학 · 연 협력연구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을 촉진하고, 우리 R&D의 양적 · 질적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 · 학 · 연 협력연구 협약 협상 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상호 준거(Mutual Reference)로 활용할 수 있는 협약 가이드라인 및 권고 계약서 양식을 마련

② 남북한 지식재산 법 · 제도 조화 및 협력방안 연구

남북한 법 · 제도 비교연구 및 교류현황 파악, 외국의 사례(중국, 독일) 조사 등을 통해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 협력 방안의 단계적 접근방안(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 협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012년도 지식재산 정책연구용역 총괄표〉

분야	과 제 명	용역수행기관	연구용역기간
정책	지식재산 사업의 2013년도 재원배분방향 및 2014년도 중점투자 방향 설정 연구	(재)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2.6.5~ 2013.2.20
	지식재산전략 추진방향 및 체계 발전방안 연구	(주)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12.11.6~ 2013.2.28
창출	국내 표준특허 창출기반 확대 지원방안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2012.6.8~ 12.17
	지식재산권 관점의 기술전략 로드맵 설계 및 수립 방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2.8.16~ 2013.1.13
	인문융합 R&D 지원 확대를 통한 저작권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창조산업연구소	2012.8.8~ 2013.1.5
보호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4.25~ 11.29
	지재권 소송에서의 증거절차 등 권리 구제 실효성 확보방안	사단법인 한국지식 전략연구원	2012.6.5~ 12.2
	해외 지식재산 침해 조사방법론 및 지표개발	(재)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2.5.17~ 2013.1.12
활용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주)펜타노바	2012.4.26~ 11.29
	기술수출제한규정의 합리적 발전 방안 연구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2012.6.8~ 12.4
	국내 중소기업 특허의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의 합리적 지원방안	한양특허법인	2012.5.25~ 12.11
	지식재산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과 정책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5.18~ 12.7
기반	산 · 학 · 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정협약제도 정착방안 연구	(주)날리지웍스	2012.5.9~ 2013.1.4
	남북한 지식재산 법 · 제도 조화 및 협력방안 연구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2012.10.8~ 12.31
신지식 재산	신지식재산 분야 국제 논의 및 협상 대응방안 연구	(재)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2.5.16~ 11.12
	유망 신지식재산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재)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2.5.25~ 12.21

제6장

발전방안

제1절 254

정책 추진체계

제2절 258

핵심정책의 발전방안

제1절 정책 추진체계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012년 4월 5일 제1차 국가지식재산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분야에서 정부,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민간단체, 개인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협력채널로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구축되었으며, 12월 3일 제2차 컨퍼런스에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를 초청하여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KIPnet은 지식재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협력하는 네트워크로서 향후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공동체(IP Policy Community)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발전방향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지향하고 있는 발전방향은 크게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지식재산 정보소스이자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이다. 민간의 관심 있는 기관 및 개인들이 지식재산 관련 법령, 지침, 제도, 담당기관 등 제반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소스(Clearing House for Policy Information)인 동시에 지식재산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건의 및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 채널(Channels of Communication for Policy Improvement)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산·학·연 간 지식재산 정보교환 및 지원의 창구이다.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해외시장 진출 또는 해외 지재권의 획득 및 유지, 지식재산 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Connection Port for Overseas Opportunities)이자, 연구·개발·창작 인재 및 경영·금융·법률 등 전문서비스 인력 충원을 위한 정보 교환 창구(Exchange Post for Human Resources)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이다. 지식재산 유관 기업·기관·단체 등은 기술·기술·콘텐츠 간의 융·복합과 연계개발 및 서비스 제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Open Channel for Consilience & Cooperation)를 제공받고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거래, 사업화, 경영 컨설팅 등의 애로해소 및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창구(Grievance Desk for Support & Troubleshoot)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5개 분과의 역할과 협력방향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활성화되면 업계가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간사기관을 중심으로 각 분과는 분야별 핵심이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찾아가며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참여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허브(hub)로서 원활한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참여기관이 스스로 주도하는 네트워킹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향후 확대방향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상시적인 소통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학회 및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컨퍼런스에 해외의 지식재산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세미나 또는 ‘한·중·일 지식재산 포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2. 국제교류·협력 체계(주요국, 국제기구, 북한)

국가 간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적극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1)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등)

미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우리보다 먼저 추진하였고, 세계적인 지식재산의 경향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지식재산전담 정책조정기구인 지식재산 집행조정관(IPEC: IP Enforcement Coordination)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과 세계경제 및 지식재산권관련 법과 제도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략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4월 일본 지식재산유관기관 방문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본부와 교류협력을 점차 증대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협력과제에 대한 발굴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지식재산 영역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한-중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교류의 시급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와 사회체제가 다른 만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므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중국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제기구(WIPO 등)

지식재산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WIPO의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상표법 상설위원회(SCT), 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GC) 등의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회의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3) 북한

남북한 지식재산 제도 조화 및 보호를 위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지식재산 법·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우리와 유사한 외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통합 및 협력 사례 조사를 통해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지식재산 제도의 단계적인 접근방안(로드맵)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민간 분야의 남북 간 지식재산 관련 교류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지식재산 관련 부처 간 대북 정보 공유로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당국의 예산편성 반영 정도 등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중점투자 및 재원배분방향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수 및 미흡 사례 등을 각 부처 및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지식재산 정책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국가재원방향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지식재산 기본법」 체계상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 부처 및 예산당국의 재원배분 반영 의무를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관점의 정부 재정투자가 더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1. 재원배분 중점투자방향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및 중점투자방향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원의 효과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각 정부부처와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확보가 절실하다.

2012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및 2013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원년을 계기로 지식재산 관점의 국가재원의 배분이 최초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유관 부처와의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국가 핵심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각 부처의 핵심정책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적 소통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예산당국의 예산편성에 지식재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의 체계적인 협력구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등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시기별 수행업무의 매뉴얼화를 추진하여 해당 부처에게 배포하여 지식재산 관점의 재원배분의 체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및 재워배부방향의 각 부처 예산설명서 반영 정도 예산

〈지식재산 재정의 유기적 연계체계〉



2. 특별위원회 마무리

(1)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는 당초 계획에서 4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결과, 2012년 3월 7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특허소송 관할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관련 이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위 내에서 어느 정도 초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왔던 점을 감안, 변호사·변리사·사법계·산업계·과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 도출 과정에서 특별전문위원회 내부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합리적·합목적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잘 정제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은 물론 법원 및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위 마무리와 함께 도출되는 대안은 사법부, 입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2013년 상반기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2012년 3월 이후 총 7차례의 특위 논의를 통해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의 확정 및 시행안내, 확산 및 활용, 보완 및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산·학·연 상호 수용가능한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토대가 성공적으로 마련되었다.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보급 및 확산과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선의견, 모범 및 저해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보완 및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의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위’를 보다 확대하여 중견기업 및 중급 규모의 대학, 산-연 간 R&D가 활발한 연구기관 등의 대표 인사를 아우르는 ‘산·학·연 협력 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식재산협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 산·학·연 각 부문의 대표성 있는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선의견, 모범 및 저해 사례 등을 상시 수집하고,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발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산·학·연 협력연구 문화 정착 및 우리나라 R&D의 양적 질적 도약을 뒷받침하여 기업의 시장기회 확대, 학·연의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 촉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3. 평가체계의 확립

아직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평가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일본의 경우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성에 기반한 성과 위주의 평가란 점을 들수 있을 것이다. 평가의 최종주체는 전략본부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의 실질적인 주체는 전문조사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조사회는 민간위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지식재산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등의 기본틀이 전략 목표의 상위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평가하는 효과성 지표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평가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지식재산 전문가 위주의 전문조사회를 주축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평가지표의 구성이 효과성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평가의 틀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무성 행정평가국의 일반적인 행정평가와의 연계성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무엇보다도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효과성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므로 최종적인 전략목표 또

는 상위목표의 달성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효과성 위주의 평가 및 이를 구성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평가지표들이 정성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는 평가의 실효성 자체를 높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지식재산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도 이에 대해 특별히 피드백 내지는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평가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평가결과를 실제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밀한 지표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수립된 아래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활동과 정책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예산, 인력, 정책의 지속여부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피평가기관들의 부담을 늘리고 행정의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기관의 정책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성과지향성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향후 정부업무평가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도 다른 평가업무들과 유사하게 종합적인 평가틀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일본의 사례는 효과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전문가와 전문성에 대한 존중 등은 향후 평가지표 설계 및 평가방식 설계에서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은 PRO-IP 법안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자문위원회와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제도(IPEC)를 통해 지식재산 전략 조정 및 집행에 관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 아래 일사분란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과 IPEC에 의해 수립된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이 IPEC가 주재하는 관련 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각 행정부처로 전파되는 구조이다. IPEC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업무의 종합지휘 권한 및 공동전략 기획 마련 권한을 법령상 보장받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의 계획은 매년도 공동전략계획으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 평가는 매년도 Annual Report를 통해 발표되며, 공동전략계획에 기초한 각 부처의 성과가 기술되어 있다.

성과측정은 집행기준별 집행부서의 관련성과에 대한 서술적 보고가 대부분이며, 계량적이거나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방식의 지식재산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 평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 및 평가과정에서는 직접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다만 집행조정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는 하나의 정책목표에 대한 확인과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각각의 활동과 과제들에 대하여 매우 세밀하고 계량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성과지표들이 투입지표나 산출지표보다는 가급적 효과성지표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책연구의 고도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충실히 정책적 이행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맞추어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20대 전략목표 중 재정수반 분야,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분야 및 국가적 핵심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분야의 효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그간 각 부처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그 중요성 대비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한 분야에 대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간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정책이 국가적으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자료집

지식재산
강국의
주춧돌을
놓다

발행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황식 · 윤종용

발행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발행일 2013년 2월 15일

발간등록번호 12-B552783-000002-0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홈페이지 <http://www.ipkorea.go.kr>

제작 MOON P&C

인쇄 정원문화인쇄